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이연호 홍익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이연호 홍익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

【동북아 문화공동체 특별연구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 원 장	김 광 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위 원	김 우 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준 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 영 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 진 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정 하 미	한양대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
	최 진 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흥 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본 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8개 국책연구기관과 3개 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다양한 행위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전 지구적 규모에서 상호연결성을 확장·심화시키는 현상인 세계화는 문화적 영역에서 다문화주의 혹은 문화적 세계주의를 부각시키는 한편 지역별 혹은 국가별로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공동체가 초지역적·지구적·국가내적 차원에서 문화적 변동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접속 코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공동체는 문화적으로 동질적이고 단일한 구성원들만의 집단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에 기반하며, 그 구성원들을 하나의 체제 속에 통합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평가된다.

최근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동북아는 경제적 역동성뿐만 아니라 공통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공유한 '문화적 공간'인 반면에 상이한 정치구조와 경제발전 수준을 지닌 이질성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공동체는 배타적인 것이 아닌 '다양성을 포함하는 공동체'가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바람직하며 적실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타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이중에서도 국가 간의 복합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데 기여한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과 제도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다양성을 포함하는 공동체'로서의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연구하기 위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진척으로 고유한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럽 역시 예외가 아니다. 유럽연합이 경제와 정치영역에서의 통합을 심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격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리적 위치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유럽문화의 다양성은 유럽을 특징

짓는 키워드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양성은 유럽 공동체의 국가들로 하여금 공동의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경제통합의 심화와 정치통합으로의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비로소 공동의 문화유산과 정체성에 입각한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들어와 문화정책의 목표와 영역, 방식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해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유럽통합이 심화되고 확대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개별 국가들 사이에 공존하는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인식하고 하나의 문화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은 물론 유럽연합이라는 정치·경제적 지역공동체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문화 관련 사업을 '문화 2000(Culture 2000)'과 '문화협력을 향한 통로(G2CC)', '유럽 문화수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문화적 교류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해서는 문화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연속성과 차별성, 그리고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살펴보았다. 전후에 문화권을 기본법에 명시하고 이에 근거해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서 '문화국가(Kulturstaat)'라고도 불리는 독일에 대해서는 독일 사회의 변동의 맥락에서 문화정책의 단절과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 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유럽연합이 다중심적 체제라는데 착안하여 공간적 연구대상을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두 수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는 것을 보

여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문화정책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별 국가적 차원의 문화정책들이 유럽적 차원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가, 그 결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화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프랑스는 문화정책에 대해 시장적 요소를 강조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이나 혈통을 강조했던 독일 등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 왔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정책의 주요 특성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정책의 기본틀에 있어서 프랑스는 이전까지의 제국적 문화정책에서 국제적 문화정책으로의 변환을 모색해왔다. 둘째, 민관협력모델에 기초한 문화정책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1970년대부터 사회당에 의해 표방되었고,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의 중심세력이었던 이른바 '68세대'의 문화 민주주의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셋째, 자국어의 보호와 보급을 위한 문화정책을 추진했다. 넷째,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자국의 통상이익에 철저히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적 문화정체성을 유럽적 문화정체성으로 승화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문화적 침투에 맞서서 유럽연합이라는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국제적 문화정책을 통해 이국적 문화요소들에 대해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프랑스 중심적으로 혼성해냄으로써 프랑스 문화의 내부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외적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프랑스의 문화정체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이국적 문화요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두터운 자국문화 보호정책을 실시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통합을 주도해나가는 국가인 독일은 문화정책이 민주주의에 입각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독일의 문화정책이 광의의 문화 개념에 입각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문화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독일의 문화정책이 기반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라면 '협력적 문화연방주의(kooperativer Kulturföderalismus)'는 독일의 문화정책 구조와 메커니즘을 틀 지우는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전통과 조화를 위해 연방은 명확히 정의되고 한정적인 권한만을 소지하고, 주정부 간에는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문화정책을 조정하며, 주정부는 분권화원칙에 따라 관련 업무 대부분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있다. 독일에서 국가가 자유로운 개인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되 그것이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한 것은 과거 나치독일 시절의 일원적인 문화통제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배분이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 문화정책에서 최근의 또 다른 흐름은 '경제 및 입지요소로서의 문화(Wirtschafts- und Standortsfaktor Kultur)'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이질적 문화를 지닌 지역과 국가로부터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거주하게 되면서 서로 이질적인 문화 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독일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독일의 문화정책이 직면한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적 차원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경제통합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그 결과 '시민들의 유럽(Europe des citoyens)' 개념이 채택되고 공통 문화영역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럽연합에 문화 분야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공동체 수준에서의 문화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이 조문의 내용은 유럽 문화정책이 다양성 속의 단일성과 보충성원칙(Subsidiaritätsprinzip)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정책의 제도화에 입각해 유럽연합은 '문화 2000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문화정책은 문화 영역에서 '유럽의 유럽화(Europeanisation of Europe)'를 통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유럽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상상과 사회적 구성의 필요성을 지닌 프로젝트로서의 유럽통합은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이라는 공간의 안팎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유럽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유럽연합 역시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그들이 속한 국가적 차원을 벗어나 점차 유럽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상상하며 행동하는 것을 촉진시킴으로 다문화적인 사회 구성을 지닌 일종의 '상상의 공간'으로 재발견되며 재발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사회구성이 요구되는 '상상의 공간'으로서의 유럽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은 회원국들과의 갈등을 조절하는데 있어 일정한 한계를 표출하고 있다. 애초 유럽통합은 경제통합으로 시작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어 왔다. 다른 영역에 비해 경제통합의 수준이 가장 앞선 데서 정책결정자들에게 단일시장이라는 경제논리는 다른 논리보다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는 경제정책과 다양성에 근거한 문화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해 있으며 이로 인한 정책 갈등의 소지 역시 크다. 이는 유럽연합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 문화, 정체성 등에 대한 명확한 공동의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정체성 간에는 공존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일방적인 억제가 행해지는가, 정체성은 다문화주의에 기초하는가, 아니면 민족중심주의에 기초하는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동유

럽과 지중해 지역으로의 유럽연합의 확대는 정체성의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정책을 포함해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은 횡적으로 분산되다보니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의 강도는 자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 차원과 각 국민국가 차원의 정책 수행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자 도입한 보충성 원칙 역시 모호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보충성원칙이 유럽적 수준에서 집행되는 정책이 단지 기존 국가 정책을 보충한다고 할 때 그 경계가 어딘지가 불명확하며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유럽연합이 확대되어 갈수록 더욱 중대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정책사례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첫째, 국제적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의미하는 스파게티모델과 국가 간 협력을 의미하는 샐러드모델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국가를 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합하는 것이다(Nous ne coalisons pas des Etats, nous unissons des hommes)라고 했던 장 모네(Jean Monnet, 1888~1979)의 말처럼 시민적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접촉의 증대에 따라 빈발하는 갈등과 증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국제적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는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를 구별하고 이러한 개념적 차이에 기초한 섬세한 전략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전자가 유산의 총량, 과거의 경험 등에 주목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유산의 활용, 미래의 약속에 주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산을 존중하되 제국적 질서에 함몰되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동북아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목 차

Ⅰ. 서 론 ····· 1

Ⅱ. 주요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문화정책: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 9

1. 프랑스의 문화정책 ····· 13
2. 독일의 문화정책 ····· 64

Ⅲ. 개별국가들과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 다양성과 보충성 ····· 83

1. 프랑스와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 ····· 87
2. 독일과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 ····· 89

Ⅳ. 유럽 문화정책의 형성과 발전 ····· 99

1. 마스트리히트조약 이전의 유럽문화정책 ····· 102
2.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의 유럽문화정책 ····· 107

Ⅴ. 최근 유럽문화정책의 주요 사례 ····· 111

1. '문화 2000(Culture 2000)' 프로젝트 ····· 114
2. '문화협력을 향한 통로(G2CC)' 프로젝트 ····· 116
3.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 ····· 117
4. 뉴미디어 분야에서의 문화정책 ····· 119

Ⅵ. 결 론 ····· 123

참고문헌 ····· 131

부 록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 151
2. 유럽연합(EU)의 부문별 예산 내역 ····· 175

표 목 차

〈표 II-1〉 독일 문화정책의 구조 ····· 69

I

서 론

문화란 일정 단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가치와 전제, 그리고 관습을 의미한다. 일정 단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보편성과 결부되는 문명과는 달리 특수성과 결부되는 개념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는 시장에서 상품처럼 매매될 수 있는 생산물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1] 국가들 간의 문화적 경쟁은 삶의 질을 겨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적 경쟁의 최종국면이자 다른 층위에서의 국제적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 문화경쟁과 관련된 개별국가들의 개입과 지원이 더욱 증폭되고 정교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연성권력(soft power)'으로서의 문화를 새로운 지배적 설명변수(new master explanatory variable)로 보는 학자들의 급증을 가져왔다.[2]

다양한 행위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전 지구적 규모에서 상호연결성을 확장·심화시키는 현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과 시정학(Tempopolitics)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지정학과 시정학을 사고하는 주체는 결국 '나(self)'로 표현되는 개인이다. 1차 대전 이후의 자결(self-determination)이 민족(nation)을 단위로 했다면 세계화는 '나(Na)'의 분출이라는 현상을 동반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1] Philip Schlesinger, "From Cultural Defence to Political Culture: Media, Politics and Collective Identity in the European Union," *Media, Culture & Society* 19. (July 1997) pp. 371-372; Kevin V. Mulcahy,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Sovereignty: U.S.-Canadian Cultural Relations,"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No. 31 (Winter 2002), p. 269.

[2] Joseph S. Nye Jr., "Soft Power," *Foreign Policy* No.80 (1990) pp. 153-171; A. Mazrui, *Cultural Forces in World Politics* (London: James Currey, 1990); Morris Dickstein, "After the Cold War: Culture as Politics, Politics as Culture," *Social Research*, No.60 (1993); Lawrence Harrison and Samuel Huntington,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ed. 2000); 21세기 평화재단.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통권 제2호 (평화포럼21, 2005); 김명섭, "프랑스의 문화외교: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1981-1995)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집 2호 (2003 여름), pp. 343-344.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나'는 각각의 문화적 구속력 아래서 생활하고 있다.

문화는 특정한 시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피레네산맥의 한편에서 문명인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야만이다."[3] 이런 의미에서 월러스타인(I. Wallerstein)이 말하는 지문화(Geoculture)란 동어반복(tautology)일 수도 있다. 문화는 공간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동리(洞里), 지방(地方), 국가(國家), 국제적 지역(國際的 地域) 등의 다층적 동심원적 구조(多層的 同心圓的 構造)와 결부된다. 시간적으로 문화는 개인의 수명(壽命), 세대(世代), 기억(記憶), 역사(歷史), 교육(敎育)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모든 문화는 변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와 시간의 관계이다. 한 개인의 수명과 비교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할 때, 그것은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른바 문화복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며, 문화적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

물리적 공간의 인위적 압축을 동반한 세계화는 이러한 문화적 차원의 문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나'의 연장으로서 세계화를 주도하는 민족국가들 보다 세계화에 적응해서 부단히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민족국가들 안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4] 문화상품 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계 및 습속의 다변화된 흐름은 다문화주의 혹은 문화적 세계주의를 부각시키는 한편 지역별 혹은 국가별로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5]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공동체(cultural community)가 초지역

---

[3] Blaise Pascal, *Pensée*, (1670).

[4] 김명섭, 『대서양문명사: 팽창, 침탈, 헤게모니』 (서울: 한길사, 2001), pp. 685-692 참조.

[5] 세계화와 문화에 대해서는 Jonna Breidenbach & Ina Zukrigl, 인성기 역, 『춤추는 문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다원화』 (서울: 영림카디널, 1998); Jan Nederveen Pieterse, *Globalization and Culture* (Oxford: Rowman & Littlefield, 2004); Elmar Rieger, *Kultur versus Globalisierung* (Frankfurt/M: Suhrkamp, 2004); John Tomlinson, 김승현·정영희 역, 『세계화와 문화』 (서울: 나남출판, 2004).

적·지구적·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변동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접속 코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공동체는 문화적으로 동질적이고 단일한 구성원들만의 집단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에 기반하며, 그 구성원들을 하나의 체제 속에 통합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유기체로 인식된다.

국가 간의 문화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데 기여한 유럽연합(EU)의 정책과 제도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다양성을 포함하는 공동체'로서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바람직하고 적실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논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 후인 1994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목표와 영역,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유럽연합은 이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유럽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유럽 지역의 개별 국가들 사이에 공존하는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이해하고 하나의 문화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은 물론, 유럽연합이라는 정치·경제적 지역공동체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적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문화적 교류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해서는 문화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연속성과 차별성, 그리고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독일에 관해서는 전후에 문화권을 기본법에 명시하고 이에 근거해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국가(Kulturstaat)'로서의 양상과 특성을 독일 사회의 변동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사회변동과 연관된 문화정책의 단절과 연속성 역시 새롭게 규명될 것이다.

둘째, 개별회원국 차원의 문화정책과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이 가지는 상관성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과 독일이 집중적인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셋째,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제도와 정책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유럽문화정책의 의미와 역사를 살펴보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의 유럽 문화정책을 되돌아볼 것이다. 이를 기초로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 관련 사업을 다양성과 공동의 유산으로 특징되는 유럽문화공간의 발현을 목표로 하는 '문화 2000(Culture 2000),' 유럽의 횡국경적이고 초국가적인 문화협력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분석하고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럽연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협력을 향한 통로(G2CC),' 등의 사례들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유럽연합이 다중심적 체제라는데 착안하여 공간적 연구대상을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두 수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시간적으로는 공시적 접근방법과 통시적 접근방법을 병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변수화'라는 비교사회학(comparative sociology)의 주요한 분석틀을 차용할 것이다. 특정한 문화를 그것이 속한 사회의 맥락, 특히 개별적 구성원들의 집합적 관계와 구조적 속성 속에서 분석하고 다른 문화와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도출하려는 시도 역시 복수·국가적 비교연구에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연구가 수행된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담당자들에게도 지역권의 문화적 갈등 해소 및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유용한 유럽연합의 경험적 자료 및 사례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또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과 모델 유형을 제시해 주는 데서도 그 기대효과를 찾을 수 있

다. 하나의 선행사례로서 유럽연합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은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6]

[6] 동북아에 있어서 문화공동체는 동북아문화에 기초한 공동체라는 의미와 동북아라는 지역에 기반한 문화공동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 아울러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유산으로서의 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후자는 전자를 새롭게 인식하고 상호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통성과 보편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구상이다. 김명섭·이연호·이동윤,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서울: 통일연구원, 2004).

II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문화정책: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문화적 경쟁의 차원에서 국가의 개입은 크게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 외래문화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대내적 가치관의 혼돈이 때로는 대외적 개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상쇄할만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매체의 발달에 따라 일상적인 문화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시대에 문화적 방벽을 설치함으로써 대내적 문화통합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더 이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외적 문화개방을 통한 문화적 협력과 경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 문화적 협력과 경쟁을 통해 검증된 문화적 자산이 대내적 문화통합에도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 더욱이 대내적 문화통합력과는 무관하게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시니피앙(signifiant)의 문제가 시니피앙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실체로서의 시니피에(signifié) 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기도 한다.[8]

국제적 수준에서 맺어지는 문화관계, 즉 국제문화관계(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는 쌍방성과 다층성을 특징으로 하며 "제 4차원적 국제관계"[9] 라고도 불려져 왔다. 이 연구에서 국제적 문화관계는 '두 개 국가 이상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이에 비해 문화정책이란 국제적 문화관계의 하위개념으로서 일방성과 대표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문화정책은 '특정국가의 정부기구 또는 그 정부기구의 지원을 받는 특정단체가 자국의 문화적 국가이익을 대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일련의 활동'이라는 의미

---

[7] 이상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 김명섭, "프랑스 제 5 공화국의 문화정책," 『문화정책논총』, 제11집 (1999), p. 220.

[8]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86), pp. 97-103.

[9] J. M. Mitchell,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London: Allen & Unwin, 1986), pp. 12-21.

로 사용될 것이다.

한 국가의 대외적 문화정책은 좁은 의미의 대외적 문화정책과 넓은 의미의 대외적 문화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대외적 문화정책이란 문화적 주제와 관련된 외교적 협약과 협상에 국한된다. 냉전시기였던 1975년 유럽국가들 간에 체결된 바 있던 헬싱키협약의 세 번째 바스켓(Basket)은 이와 같은 문화정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헬싱키협약의 세 번째 바스켓은 (1) 각국의 문화적 성취에 대한 정보교류의 촉진, (2) 문화적 자산의 교류와 확산을 위한 기구의 증설, (3) 각국의 문화적 성취물에 대한 접근통로의 확대, (4) 문화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 간의 접촉과 협력의 증진, (5) 문화협력의 새로운 형태와 영역의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10]

이에 비해 넓은 의미에서의 대외적 문화정책은 정부기구 대 정부기구 간의 협상이나 협약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기구 혹은 정부기구로부터 위임받은 특정기구가 다른 나라의 정부기구 혹은 다른 나라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외적 문화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활동이다. 정부기구가 자국 국민이 벌이는 대외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거나, 다른 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자국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일련의 홍보활동 등은 모두 넓은 의미의 대외적 문화정책 활동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기구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비정부민간기구에게 상당부분의 활동을 위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련의 대외적 문화정책적 노력이 단순한 국가홍보활동(propaganda)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비정부민간단체(NGO)가 사실상 정부적 차원의 민간단체(GNGO)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들의 활동은 문화정책의 영역 안에 포함된다.[11]

---

[10] Arie Bloed, (ed.) *From Helsinki to Vienna : Basic Documents of the Helsinki Process* (Utrecht : Norwell, 1990).

[11] 이상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 김명섭, "프랑스의 문화외교: 미테랑대통령 집권기(1981-1995)를 중심으로," pp. 344-345.

1. 프랑스의 문화정책

가. 제국적 문화정책의 탄생

문화란 인류 공동의 재산이고 국적에 우선한다. 문화는 그 기원이나 출처를 막론하고 그 힘을 필요로 하고 그 가치를 이해할 줄 아는 자들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개방된 보고였다. 프랑스의 역사는 "프랑스적인 것(francité)"의 규정을 통해 프랑스국가의 경계가 비로소 명료해지고, 다시 프랑스의 국가기구들을 통해 "프랑스적인 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었다. 근대국가는 교육과 대중매체를 주요한 문화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이를 통해 자기정체성에 대한 '최소한의 문화적 합의(consensus)'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 있어서 문화란 일정 단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가치와 전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볼 때, 프랑스의 문화정책이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기존의 가치체계를 보존, 심화시키고 세대적 재생산과 공간적 확산을 지향하는 일련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적인 것"을 뒷받침했던 두 개의 기둥은 왕실과 교회였다. 샤를르마뉴 제국의 분열 이후 프랑스왕실이 세속적 문화에 대한 후원을 중심으로 국가적 결속을 꽤했다면, 카톨릭 교회는 종교적 가치체계에 부합되는 문화의 후원에 골몰하였고, 이를 통해 세속적 문화를 제압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교회가 바티칸적 가치체계에 비추어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성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흔히 권력기반의 공고화를 위해 문화를 이용했던 왕실은 지리적 제약을 쉽게 뛰어넘지 못했다. 프랑스의 교회와 국가는 자신의 위엄을 드높이기 위해 문화를 후원했고, 프랑스 중앙집권화의 진전과 더불어 이러한 역할은 절대왕정으로 수렴되었다.

부르봉 왕가의 루이 13세는 카톨릭교의 추기경이었던 리슐리외를

중용하였고, 리슐리외는 18년 동안이나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의 기틀을 잡아나갔다. 리슐리외는 이른바 국가이성(raison d'Etat)을 주장하면서, 국왕의 절대적 권위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신조에 입각한 문화적 후원자(mecenat)였다. 1635년 리슐리외가 루이 13세의 이름으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프랑스어 문화권 관련기구인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창립을 주도했던 것은 이와 같은 신조에 입각한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도 리슐리외는 프랑스의 문화적 중심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리슐리외는 1627년 『신프랑스회사(la Compagnie de la Nouvelle-France)』 혹은 『백자(百者)연합』을 설립하여 프랑스문화의 대외적 팽창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왕의 총신들 및 파리와 루앙의 상인들, 그리고 교회의 사제들이 리슐리외의 지휘 하에 이 조직체로 편성되어 프랑스의 문화적 팽창을 선도하였다. 이 회사는 정치적 목적과 종교적 목적, 그리고 상업적 목적을 국가의 주도 하에 총합시킨 조직체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 회사는 프랑스인들의 신세계 정착을 지원함과 아울러 원주민들의 개종을 위해 노력하고, 개종을 한 원주민들은 프랑스인으로 인정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적 문화의 확산을 추진했던 이 조직체는 그러나 위그노들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위그노들을 프랑스적 문화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고 이들을 프랑스문화확산의 첨병으로 삼았던 앙리 4세시대보다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는 문화정책을 건국정책에 활용했던 대표적인 통치자였다. 루이 14세가 귀족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중심으로 국가의 기틀을 다진 방법은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그는 귀족들을 축제, 연회, 연극, 무도회 등에 수없이 초대하였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복장이나 예절, 형식 등 새로운 프로토콜을 부과하였다. 찬란하고 화려한 귀족의 에티켓 등이 끝없이 제정되었고, 왕실은 바로 그와 같은 프랑스고급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귀족들은 새로이 제정되는 프로토콜을 연마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즐거운 궁정연회에서 연마한 에티켓 등을 뽐내며 가난해져 갔고, 그럴수록 국왕의 총애를 얻고자 비굴해졌다. 국왕이 베푸는 연회를 거부하고 자신의 영지관리에 힘쓸 만큼 영리한 귀족들의 수는 많지 않았다. 프랑스왕실은 프랑스전체의 예절과 질서의 기준으로 발전하였고, 루이 14세는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짐이 곧 국가(L'Etat, C'est moi)"라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왕실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고급문화의 동심원적 구조는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프랑스어가 라틴어를 대신해서 공식적인 외교언어로 자리잡았고, 심지어는 외국의 왕실과 귀족층의 공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1600년대 초반에 있었던 30년 전쟁 당시 스웨덴 왕비 크리스티나의 경우가 대표적). 일찍이 프랑스왕실이 이탈리아풍의 문화를 도입하는데 앞장섰듯이, 전 유럽의 왕실들이 루이풍의 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프랑스대혁명을 고비로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교회와 왕실이 담당하고 있던 역할이 국가로 크게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혁명기의 프랑스는 주변제국들의 복고주의적 열망과 맞서서 국가적 중심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필요성은 국가중심적 문화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나폴레옹은 문화에 대한 국가적 후원을 통해 프랑스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다. 대혁명 이후 루브르궁전이 박물관으로서 문을 열었고, 국립미술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리슐리외에 의해 창립된 프랑스학술원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문화유산의 관리를 담당하는 제도적 주체로서 교육부(Ministère de l'Education) 산하에 문예작품의 보호와 보존을 담당하는 『문예국(局; Direction des Beaux-Arts)』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문예작업에 대한 재정적 보조는 코메디 프랑세즈(Comédie française)나 오페라극장(l'Opéra)과 같은 주요 시설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시(市)당국(autorité municipale)이 담당하였다. 프랑스에 있어서 문화정책이 지니는 중요성은 프랑스 고유

의 민족국가(Nation) 개념에 기초한다.

제3공화국 시기인 1882년 소르본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에르네스트 르낭은 문화적 민족국가(Nation)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르낭은 "민족국가의 경계가 언어나 지리, 인종, 종교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민족국가들이란 인간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르낭은 특히 인종과 국가를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한 언어를 말하거나 한 겨레라고 해서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은 과거에 있어서 위대한 일들을 함께 이루었고 미래에 있어서 또 다른 위업을 함께 이루고자 원하는 데 있다"고 설파하였다.[12] 르낭은 망각과 역사적 실수마저도 민족국가 창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라고 보았다. 르낭의 민족국가개념에 따르자면, 한 국가가 상정할 수 있는 경계선은 인간의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복의지로 표현될 수도 있고 실제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국가 간의 영토적 경계선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 더 이상 영토적 야심을 위해 평화를 희생하고 싶은 인간의지가 발휘되기 어려운 국제관계가 형성되면서부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혹은 소속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는가"가 국가적 경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국적 문화정책의 모습은 대규모 건축사업에 잘 반영되어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 건축이 차지하는 위치는 독특하다. 그것은 모든 예술을 포용하는 종합예술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적 장르로 간주된다. 건축은 다른 어떤 예술적 장르 이상으로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프랑스인들은 특정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그 정신이 영속되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시대정신과 프랑스의 위신을 결합시켰던 만국박람회가 대형건축물로 육화되곤 했던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

[12] Ernest Renan, "Qu'est-ce qu'une nation?" in *Oeuvres complètes*, vol. 1 (Paris: Calman-Lévy, 1947), pp. 903-904.

프랑스를 상징하는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만국박람회의 산물이었고, 프랑스의 첫번째 지하철노선이 1900년에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겨냥해서 개통된 바 있었다. 1925년에 개최된 장식예술과 근대산업을 주제로 한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고, 1931년에는 국제식민지박람회를 통해 제국주의열강이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전시하는 행사를 가졌다(영국은 이 행사에 불참했지만, 미국은 참가했다). 1931년 만국박람회를 위해 벵센느 숲 변경에 세워졌던 『식민지영구박물관(Musée Permanent des Colonies)』은 프랑스식민제국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당시의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오늘날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예술박물관(Musée des Arts Africains et Océaniens)』으로 용도가 변경되기는 했지만, 이른바 "근대적 고전주의"풍의 건축양식을 유행시킨 이 건물은 "국제적 건축의 선도국"이자 세계강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절대왕정 이후 역대 프랑스의 정치지도자들은 "시대정신의 공간적 번역물"이라는 건축의 의미를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정치지도자들 이상으로 잘 인식하고 있었다. 5공화국에 들어서 드골의 뒤를 이은 죠르쥬 퐁피두는 센느 강변 고속도로, 레 알지구의 재건축, 그리고 퐁피두센터 등을 통해 드골주의가 반영된 기념비적 유적을 남겨 놓았다. 그러나 미테랑 임기 중에 착공되거나 완공된 사업들은 퐁피두시대의 그것을 무색케 만들기에 충분했다. 미테랑은 그 누구보다도 건축의 정치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미테랑 자신의 말에 따르자면 건축이란 "다른 모든 예술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며, 더우기 유용한 예술"이다.

오르세이 박물관(Musée d'Orsay), 과학-기술 박물관과 대규모 콘서트홀 등으로 이루어진 『라 빌레트(La Villlette) 문화센터』, 루브르증축공사, 재무부건물의 이전신축, 제 3세계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

심을 표현한 『아랍연구소(Institut du Monde Arabe)』, 바스티유오페라(L'Opéra de la Bastille), 개선문의 모형을 본 딴 『라 데팡스 통신센터(le Carrefour de la Communication à la Défense)』 그리고 미테랑사후에 그가 원했던 대로 미테랑 도서관이라고 명명된 『테제베(TGB: Trés Grand Bibilothèque)』 등에 투여된 총액수는 170억 프랑에 달했다. 특히, 바스티유오페라건설과 루브르증축공사는 미테랑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던 사업이었고, 사회주의적 의미가 강한 것이었다. 바스티유광장은 프랑스대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유서깊은 장소였다. 전통적으로 귀족적 색채가 짙은 문화양식인 오페라를 위한 전용극장을 이곳에 세우기로 한 결정은 다분히 오페라의 대중화를 겨냥한 것이었다. 미테랑정부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닌 재무부건물을 리볼리거리에 연한 루브르궁전의 좌익채(Left Wing Building)로부터 파리시내 동쪽의 베르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권력의 주요한 핵심이 고풍창연한 중심가(beaux quartiers)로부터 동편의 대중적 거리로 다가간다는 상징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 계획은 1986년 좌우동거내각의 등장으로 일단 중단되기도 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1986년 일단 중지되는 경험을 겪었던 라 데팡스의 대형아치건물은 처음 미국 다국적기업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 프랑스국내의 대중매체활동을 촉진하고 대응력을 키워내기 위한 활동중심으로서 기획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미테랑의 대규모 건축사업들(grands travaux)과 관련해서 쟉크 시락, 레이몽 바르,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등 우파진영의 정적들은 미테랑이 자신의 다른 정치적 과오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념비적 유적을 남기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다른 한편, 『문예원(Académie des Beaux-Arts)』이나 『국가문화재위원회(Comité nationale pour les monuments historiques)』는 미테랑이 파리의 경관을 해치고 프랑스의 문화재들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자들에 의해 "센느강변의 스캔달"이라고까지 명명된 테제

베(TGB)계획은 “책에 대한 도전이며, 인민에 대한 도전이고, 파리시에 대한 도전”라는 공격에 직면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페이(I. M. Pei)에 의해 설계된 루브르박물관 앞의 유리피라미드는 미셸 기(Michel Guy)와 같은 문화계 인사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비판자들은 페이와 같은 중국계 미국인이 루브르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건축설계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루브르관람객들을 유리피라미드를 통해 일단 지하로 내려보낸다는 발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피라미드가 지니는 근대성과 루브르의 역사성이 조화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거론하였다.

미테랑이 추진했던 대규모 건축사업들이 격렬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단지 파리시장이었던 쟈크 시락으로 대표되는 정적들과의 정치적 분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련된 토론이기도 했다.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프랑스식민제국은 해체를 경험했고 — 그것도 아주 초라한 방식으로 —, “19세기의 수도, 파리”라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표현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는 퇴색된 문구가 되고 말았다. 프랑스는 일종의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미테랑은 대규모 건축사업을 통해 새로운 프랑스성(francité)를 추구했다.

미테랑이 대규모 건축사업을 통해 추구했던 것은 일찍이 앙드레 말로가 문화부를 설립할 당시의 목표와 유사한 것이었다. 미테랑은 “모든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의 지식과 예술에 접근가능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대규모 건축사업이 지닌 첫 번째 목표”라고 보았다. 이것은 무엇보다 사회당이 표방하고 있던 문화적 이념과 부합되는 것이었다. 미테랑은 보다 열려있는 프랑스를 지향했다. 미테랑은 문화가 억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설득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권위의 수립, 나아가서 국가의 수립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고 본 안토니오 그람시와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미테랑 자신은 건축을 통해 “새로운 도시적 문명의 기초를 닦는다”고 보았다. 60대 중반의 미테랑

은 프랑스가 과거 식민제국의 영광이 퇴색되는 것을 직접 체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로서의 미테랑은 프랑스성(francité)의 복고주의적 회복을 지향할 수는 없었다. 미테랑은 근대를 넘어 탈근대로 나아가는 세기말(fin de siécle)의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프랑스성을 지향하고자 했다. 미테랑은 대규모 문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문명적 전환기에 걸맞는 프랑스성을 재창조하고자 했다. 미테랑은 그의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건축물들을 통해 인간과 도시를 새롭게 매개하고자 했고, 인간과 도시 간의 새로운 관계에 기초한 신문명의 모형을 보여주고자 했다.

미테랑이 추진했던 대형 건축물들은 다른 한편으로 랑그독이나 브르타뉴지방에서 복원되고 있던 지방문화재, 특히 프랑스 내에 솟아 있던 모스크(회교사원)의 첨탑들과 명백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프랑스 내 아랍인들의 문제는 제 5공화국의 기원자체가 알제리전쟁에 있었던 것에서도 보여 지듯이 결코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미테랑 정부는 과거 우파정부에 비해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년 이내에 프랑스는 이슬람제국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국민전선의 비판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1980년대 프랑스에서 실업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은 문화적 통합체로서의 프랑스를 위협하는 이민자들의 문제였다. 이민자문제 해결을 주요한 당 강령으로 삼고 탄생한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의 당수 르펭(Le Pen)은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민자문제와 관련해서 시락은 "관용의 한계(seuil de tolérance)"라는 표현을 썼고, 지스카르 데스탱은 "침략(invasion)"이라는 용어를 서슴치 않았다. 공산당과 사회당이 외국인들에게조차 선거권을 주려고 했을 정도로 이민자문제에 대해 포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들 좌파조차도 이민자들이 프랑스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게토"화되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프랑스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죠르쥬 마스세(George Marchais)가 파리 13구(arrondissement)

지역에 형성된 프랑스 최초의 차이나타운을 일컬어 “센느 강변의 홍콩”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미테랑의 대형건축물은 이질적 문화를 반영하는 건축물들을 위압하고, 프랑스의 문화적 동질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테랑에 의해 기획된 대규모 건축사업들이 넓은 문화적 공간을 지녔던 만큼이나, 그 문화적 공간에 참여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주변화 시키는 효과도 컸다.

나. 제국적 문화정책에서 국제적 문화정책으로

1981년 미테랑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 프랑스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은 상당부분 과거의 제국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정책에 내재된 제국적 전통은 공간의 확장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형성되었다. 앎의 정복과 힘의 정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13] 프랑스문화정책에서 보여지는 제국적 전통은 1600년대 루이 14세가 펼쳤던 문화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복장이나 예절, 화법 등을 포괄하는 에티켓(etiquette)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표준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영주들의 입장권(entrance ticket)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타자와 구별된 자기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표준의 동심원적 구조를 전 유럽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1694년 루이 14세의 후원으로 아카데미에서 간행된 두 권의 프랑스어사전을 기초로 프랑스어가 라틴어를 대신해서 공식적인 외교언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외국왕실의 공용어가 되기도 하였다.[14] 프랑수와 1세 때의 프랑스왕실이 이탈리아풍의 문화를 도입하는데 앞장섰듯이, 많은 유럽의 왕실들이 루이풍의 문화를 보급하는 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15]

---

[13] Tzvetan Todorov, *La Conquête de l'amérique : la question de l'autre* (Paris : Seuil, 1982), p. 258.

[14] 김형길, “프랑스 플레이야드 학파의 국어운동,” 『불어학연구』 (11월 1997), p. 70.

[15] Norbert Elias, 박미애 역, 『문명화과정 I』 (서울: 한길사, 1997).

1700년대 말 나폴레옹의 이집트원정 역시 프랑스 문화정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당시 나폴레옹은 영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세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예술 및 과학 위원회'(Commission des Sciences et Arts)라는 이름으로 상당수의 '지역학자들'을 원정군의 병적에 편입시켰다. 나폴레옹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집트연구소(Institut d'Egypte)를 창립하여, 원정군을 따라 움직이는 씽크탱크처럼 활용하였다[16]. 이집트연구소는 현재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면서 아랍세계에 대한 프랑스 문화정책의 전방초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간 중에 세워진 아랍연구소(Institut du monde arabe)의 모태가 되었다.[17]

프랑스 문화정책의 제국적 전통은 공간적 확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다시 공간적 확장이 좌절되는 국면에서는 우회적 대체의 통로로 발전하였다. 작크 리고(Jacques Rigaud)는 프랑스 문화정책의 시원을 1535년 프랑수와 1세와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쉴레이만 1세 사이에서 맺어진 협정에서 찾고 있다. 당시 오스만 투르크는 프랑스제국의 팽창을 막고 있던 거인과도 같았는데, 이 협정에 따라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의 전진기지가 이슬람세계 안에 세워질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문화정책망의 한 구성요소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18]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제국의 공간적 팽창이 좌절되었을 때, 그 우회적 통로의 성격을 지니며 발전했다는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한 프랑스제국의 공간적 수축과정과 프랑스문화정책의 발전과정이 지니는 상관성에서 잘 나타난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

---

[16] *Grand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Larousse*, 6 (Paris: Larousse), p. 6126.

[17] Edward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1991), pp. 142-144.

[18] Jacques Rigaud, *L'Exception culturelle: Culture et pouvoirs sous la Ve Republque* (Paris: Grasset, 1995), p. 147.

는 시점에서 앙드레 오노라(André Honnorat)는 프랑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인구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앙드레 오노라는 프랑스가 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은 그 문화적 광휘(le rayonnement de culture)를 통해서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 위에서 오늘날 청년문화교류의 명소로 발전한 파리국제대학도시(La 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의 설립을 주도하였다.[19] 제국적 위상의 저하가 그것을 만회하려는 프랑스의 대외적 문화의지(volonté de Culture)를 낳았던 것이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제국적 영토의 축소가 프랑스 문화정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948년 프랑스외교부는 '문화총국'(DGRC: la 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을 설치함으로써 최초로 문화(culturel)라는 수식어가 붙은 정부부처를 만들었다.[20] 알제리식민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959년 7월 24일의 법령으로 이루어진 프랑스 문화부의 창설은 공간적 확장을 담당했던 식민부(Ministère des Colonies)의 해체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해외영토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식민부 소속 관료들 중의 상당수가 문화부로 충원되었다.[21] 이러한 인적 충원의 방식은 과거의 제국적 전통이 문화정책으로 계승되는 인적 통로가 되었다. 이러한 인적 통로를 통해 식민전선(front colonial)에서 문화전선(front culturel)으로 전이된 정복의 열망이 드골대통령시대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로 대표되는 제 5공화국의 문화정책에 내재하고 있었다.

---

[19] Frank Sereni, "La 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1925-1950," *Relations Internationales* (hiver 1992), p. 401.

[20] David L. Looseley, *The Politics of Fun: Cultural Policy and Debate in Contemporary France* (Oxford: Berg Publishers, 1995), p. 24; Jacques et de Guy Saez Perret, *Institutions et vie culturelle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6), p. 13.

[21] Marc Fumaroli, *L'Etat culturel: Essai sur une religion moderne* (Paris: Fallois, 1992), pp. 392-394.

미테랑 시대 프랑스문화정책의 기본틀은 이러한 제국적 전통과의 단절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일차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제국적 전통에서 벗어난 국제적 문화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사람은 자크 리고였다.[22] 리고는 시대착오적인 제국적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인해 문화정책이 부수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프랑스 문화정책의 목표는 결코 "과거의 영광에 고착된 프랑스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문화가 스스로의 자폐성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문화적 교차로의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1979년 작크 리고는 이러한 논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문화정책을 주창하는 정책보고서를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쟝 프랑수와-퐁세(Jean François-Poncet)에게 제출하였다[23]. 작크 리고의 정책보고서는 "문화정책을 외교정책의 주요부분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프랑스가 세계의 변화를 직시하고 이제 다극적 문화가 존재하는 세계 속의 중진국(puissance moyenne)이라는 점을 자각"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대화와 교류의 문화정책, 파트너국가들과의 호혜에 중점을 둔 문화정책"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리고 보고서는 또한 "인간이 정치적, 전략적, 상업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취급될 수 있는 전지구적 차원의 국제관계프로젝트 안에서 문화, 정치, 그리고 경제의 화해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24]

리고 보고서의 기본방침은 미테랑이 이끌었던 사회당이 1968년 학생운동의 영향을 흡수하면서 발전시켰던 '문화적 행동'(action

---

[22] 작크 리고는 작크 뒤아멜(Jacques Duhamel)이 이끌던 퐁피두시대의 문화부에서 차관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뤽셈부르그의 합작방송회사인 RTL방송국총재, 그리고 오르세이 미술관 건설공사사장 등을 거친 프랑스문화계의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23] Jacques Rigaud, "Les Relations culturelles extérieures," *rapport a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79).

[24] *Ibid.*, p. 76.

culturelle)의 개념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미테랑이 장 조레스와 인민전선으로 이어지는 사회당 내 구주류의 계승자였다고 한다면, 미테랑의 측근들은 1968년의 학생운동을 통해 직접적인 정신적 세례를 받았다. 3M(Marx, Mao, Marcuse)의 초상을 내걸고 가두시위를 벌였던 당시의 젊은이들은 중국의 문화혁명에도 공감하고 있었고, 문화가 결코 사회혁명의 부수적 차원이 아니라 중심적 위치에 놓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테랑에 의해 문화부장관에 임명된 쟉크 랑(Jack Lang)은 바로 68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또한 미테랑이 전통적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필가였다면, 40대의 쟉크 랑은 보다 현대적인 프랑스를 상징했다.[25] 문화적 행동에 대한 사회당의 공식적 정의는 "문화를 통한 의식화를 지향하는 행동이며, 자존의 근원이며 묵종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었다.[26] 이것은 또한 대중문화(popular culture)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문화의 대중화(popularizing culture)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작크 리고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던 것은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의 집권기간 중이었으나 이 보고서의 기본방침을 채택하여, 새로운 문화정책의 전통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은 1981년 대통령에 취임한 프랑수와 미테랑이었다.[27]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프랑스 문화정책의 핵심적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는 1984년 출간된 프랑스외교부의 책자에서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문제는 최우선적인 정치적 목표들 중의 하나"라는 언급으로 표현되었다. 이 책자는 또

---

[25] John Ardagh, *France Today* (London: Penguin Books, 1995), p. 507; 이상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 김명섭, "프랑스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 『문화정책논총』, 제11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p. 224.

[26] Paul Puaux, *Les Etablissements Culturel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82), p. 12.

[2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정책』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p. 238; Panivong Norindr, "Popularizing French Culture: The Bibliothèque de France," *Journal of the Twentieth-Century/Contemporary French Studies*, No.1 (Spring 2001), p. 94.

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전체주의적 정치의 프로젝트와 결합하는 위험에 대해 경계”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완성형으로 보지 말고 대내외적 참여를 향해 열려져 있는 진행형으로 볼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이 책자에서는 “문화정책이 문명적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자유무역의 위협과 보호주의적 유혹을 동시에 경계하고, 균일화의 위협과 대외적 개방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식하면서, 모든 문화의 원천인 다양성과 국가들 간의 평화와 공동의 진보를 표방하는 보편적 소통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28]

이처럼 미테랑 시대 프랑스문화정책의 기본틀은 제국적 전통과의 단절을 추구하고 국제적 문화정책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에서 시도되었던 대전환은 미테랑의 사회당이 미국을 문화 제국주의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문화적 국제주의를 통해 이룩하고자 했던 목표는 앵글로색슨권의 문화, 특히 미국문화의 패권적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프랑스문화 및 언어의 진작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강대국정치의 연장선 위에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경제적 지배를 위해 국제적 다양성을 균일화시키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던 것이다[29]. 그러나 프랑스의 이러한 시도가 제국적 전통으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본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후술하게 될 여러 영역들에서 제국적 전통은 계속 온존하면서 국제적 문화정책을 위한 노력과 일정한 길항관계를 형성하였고, 양자가 혼재된 독특한 문화정책의 양식을 낳았다.[30]

---

[28] DGRCST (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Ministère des relations extérieures, *Le Projet culturel extérieur de la Franc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84), pp. 16–17.

[29] *Ibid.*, p. 11.

[30] 이장의 내용은 주로 다음에 의존하였다. 김명섭, “프랑스의 문화외교: 미테랑대통령집권기(1981–1995)를 중심으로,” pp. 346–349.

다. 문화적 민주화 개념에 기초한 문화정책

문화에 대한 불평등의 해소라는 미테랑 대통령의 표현에서 보여지듯이, 미테랑집권기 문화정책의 주된 기조 중의 하나는 대중적 문화참여에 대한 강조였다. 미테랑 집권 당시의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소득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의 하나였다. 그랑제콜 출신의 엘리트계층과 일반대중 간에는 커다란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피에르 부르디외와 같은 사회학자는 문화적 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른 엘리트계급의 인습적 세속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비투스(habitus) 혹은 구별짓기(distinction) 등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31] 문화적 계급의 재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정책의 주요 관건은 문화에 대한 접근조건을 변형시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에 대한 접근통로를 증대시키고 문화의 전수와 실행의 공간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와 문화를 연결시키려는 미테랑 시기 문화정책의 핵심적 개념은 문화적 행동(action culturelle)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당시 프랑스문화부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를 통한 의식화를 지향하는 문화적 행동이란, 자존의 근원이며 묵종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었다.[32] 일찍부터 프랑수와 미테랑은 사회질서의 변화와 문화적 행동이란 결코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문화적 행동이란 결코 현존하는 차별과 불의를 참고 넘기게 해주는 정신적 위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던 것이다.[33]

---

[31] Pierre Bourdieu, *La Noblesse d'Etat: Grandes écoles et esprit de corps* (Paris: FNSP, 1991); Pierre Bourdieu, *La 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최종철 역,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서울: 새물결, 1995).

[32] Puaux, *Les Etablissements culturels*, p. 12.

[33] François Mitterand, "Un choix culturel," *L'Unité*, Mai 10-16, 1974; David Wachtel, *Cultural Policy and Socialist France* (New York: Greenwood Press, 1987), p. 10에서 재인용.

문화적 행동이 사회질서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의 연원은 프랑스사회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쟝 조레스(Jean Jaurès)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쟝 조레스는 프랑스 제 3공화국의 사회적 진보를 가져온 결정적 요인이 18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행해진 공공교육체제의 정비에 있었다고 보고, "교육과 사회적 진보는 불가분의 등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34] 장 조레스의 사상을 계승했던 것은 1936년 파시즘의 발흥에 대항하여 탄생한 인민전선(le front populaire)정부였다. 1937년 레옹 블럼은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의 개정판 서문에서, "프롤레타리아에게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할 권리와 더불어 모든 문화적 즐거움과 모든 예술적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5] 인민전선정부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문화가 엘리트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휴식과 레저활동의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었다.

1930년대 인민전선의 문화정책과 아이디어를 1980년대 미테랑 정부로 전달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드골주의의 수호자였던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였다.[36] 1959년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다기한 문화정책기구들을 집대성한 공룡적 기구로서 문화부가 창설될 당시 그 임무를 규정하였던 7월 24일의 법령은, 드골적 관점과 앙드레 말로적 관점의 융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37]

---

[34] Jean Jaurès, "Pour la Laïque," in Jean-Louis Ferrier (ed.), *L'Esprit du Socialisme* (Paris: Gauthier, 1964), p. 174.

[35] Léon Blum, *Du Mariage* (2d ed., 1937); James Joll, *Three Intellectuals in Politics* (New York: Harper Row, 1960), pp. 23-24에서 재인용.

[36] 말로의 생애에 관해서는 Jacques Julliard et Michel Winock, *Dictionnaire des intellectuels français* (Paris: Seuil, 1996), pp. 737-738과 Jean Lacouture, *André Malraux: Une vie dans le siècle* (Paris: Seuil, 1973)을 참고함.

[37] 엘리제궁의 수장으로서의 프랑스 대통령은 상징적 통합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면서 행정부의 문화정책을 지휘하고 있다. 문화부장관은 대통령과 일종의 특수관계(special relationship)를 형성하면서 프랑스문화정책의 양축을 형성한다. 프랑스 5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현대 프랑스의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되는 샤를르 드골(Charles De Gaulle)과 초대 문

이 법령에서는 문화부(le ministre chargé des affaires culturelles)의 임무를 "가능한 한 많은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주요한 인류유산-우선적으로 프랑스의 유산-을 접할 수 있게(rendre accessibles)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프랑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관중을 확보하며, 문예작품의 창조와 그것을 가능케하는 창조정신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38]

말로의 문화부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비용, 시간, 그리고 공간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앙드레 말로는 프랑스 95개 데파르트망(département)마다 중앙정부가 50%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적어도 하나의 『문화의 집』을 건설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66년 국회에서 앙드레 말로는, 프랑스의 모든 어린이들이 문자를 깨우칠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연극을 보고, 영화를 관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9] 역설적으로 인민전선이 꿈꾸었던 문화적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던 것은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을 프랑스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우파를 설득했던 앙드레 말로였던 것이다.[40]

화부장관 앙드레 말로 간의 관계, 죠르쥬 퐁피두(George Pompidou)와 당시 문화부장관 쟉크 뒤아멜(Jacques Duhamel) 간의 관계, 귀족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왕이 되고자 한 대통령"이라고 좌파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Le Nouvel Observateur)』에 의해 비난받기도 했던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ing) 대통령과 당시 쟝 필립 르카(Jean-Philippe Lecat) 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 팜플렛이라는 문학 장르를 열었다고까지 평가되는 프랑수와 미테랑과 1993년 3월 사회당의 참패로 내각에서 물러날 때까지 무려 11년간 문화부장관을 역임하고 말기에는 교육부장관을 겸임하기까지 했던 쟉크 랑(Jacque Lang)과의 관계 등이 모두 당대의 문화정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8] *Journal Officiel*, Julliet 26, 1959 in Perret et Saez, *Institutions et vie culturelles*, p. 13에서 재인용.

[39] Pierre Cabanne, *Le pouvoir culturel sous la Ve République* (Paris: Olivier Orban, 1981), p. 142.

[40] 이것은 앙드레 말로 스스로의 고백이다. André Malraux s'explique···, *Le Nouvel Observateur*, 14 Oct 1968.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Augustin Girard et Genevive Gentil (eds.), *Les*

1968년 5월 사태는 10년간에 걸친 드골정부의 문화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수와 미테랑이 장 조레스와 인민전선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관점의 계승자였다고 한다면, 미테랑의 측근들은 1968년 혁명에 의해 직접적인 정신적 세례를 받았다. 3M(Marx, Mao, Marcuse)의 초상을 내걸고 가두시위를 벌였던 당시의 젊은이들은 중국의 문화혁명에도 공감하고 있었고, 문화가 결코 사회혁명의 부수적 차원이 아니라 중심적 위치에 놓여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프랑수와 미테랑에 의해 문화부 장관에 임명된 쟉크 랑(Jack Lang)은 바로 68혁명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미테랑이 전통적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필가였다면, 40대의 쟉크 랑은 보다 현대적인 프랑스를 상징했다.[41]

쟉크 랑은 그의 취임연설에서 이제 국가 자신이 보도블럭(pavé) 밑의 해변(plage)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결합을 선포하였다.[42] 1981년 9월 25일 소르본 대학에서 개최된 제 45회 국제펜클럽대회의 폐막연설에서 쟉크 랑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 우리가 서있는 이 곳[소르본]은 현 정부에 있는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 속에 새겨 넣어야 할 변화를 선포하고, 변화의 모습을 그려주었던 곳입니다. ···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신속하게 건설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운집하였습니다."[43]

---

affaires culturelles au temps d'André Malraux, 1959–1969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6)을 참고함.

[41] Ardagh, *France Today*, p. 507. 프랑스의 전통적 표기인 Jacque가 아니라 영-미식의 Jack로 쓰여진 그의 이름은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히틀러의 독일과 전쟁을 벌이던 당시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친영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42] 이 말은 "보도 블럭 아래 해변이 있다"는 68혁명 당시의 구호를 변용한 것이었다.

[43] 제45회 국제펜클럽대회에서 행한 쟉크 랑의 개막연설. Jill Forbes, "Cultural Policy: The Soul of Man under Socialism," in Sonia Mazey and Michael Newman (eds.), *Mitterrand's France* (London: Croom Helm, 1987), pp. 136–137에서 재인용.

1970년대를 거치면서 68혁명의 유토피아적 경향은 완화되었지만, 68혁명의 사상적 유산은 분명히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44] 가능한 것을 꿈꾸는 유토피안(Un utopiste du possible)[45]이라는 쟉크 랑에 대한 예찬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68혁명 세대가 꿈꾸었던 문화적 민주화는 드골주의나 소비에트식 공산주의에서 표방했던 문화적 민주화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1972년 '공동강령'(Programme Commun)의 선포를 거치면서, 사회주의적 지식인들이 68혁명의 정신적 자산을 어떻게 사회당정부의 문화정책에 통합시켜낼 것인가를 고민했던 결과였다.[46] 68세대(soixante-huitards)의 성장과 함께 사회당 내에서는 문화를 이념투쟁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기 보다는 각 개인이 각자의 삶을 운영하는 양식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75년 1월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문화에 관한 국제적 회합'(Rencontres Internationales de la Culture)에서 문화는 이념에 의해 정당화되고 일상적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집단적 표상의 총체라고 정의되었다.[47]

문화적 민주화를 위한 미테랑 시대의 문화정책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도서관정책이었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중앙도서관에 대한 원조는 140% 증가하였고, 특히 시립도서관에 대한 보조는 무려 887%의 증가를 보였다.[48] 문화적 민주화를 위한 도서문화정책은

---

[44] 문화적 측면에서 1981년 사회당정권의 출범과 68혁명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서로서는 Pascal Ory, *L'entre-deux mai* (Paris: Seuil, 1983)를 참고. 68혁명 이후 행해진 문화정책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서는 Pol Bury, *L'Art à bicyclette et la révolution à cheval* (Paris: Gallimard, 1972). 폴 베리는 쟉크 뒤아멜(Jacques Duhamel)의 문화정책에 대해 68혁명의 관점에서 예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45] Guy Dumur, "Un utopiste du possible," *Le Nouvel Observateur*, 4 (Mar 1978), p. 79.

[46] Catherine Clément, *Rêver Chacun pour l'Autre* (Paris: Fayard, 1982), pp. 63-92.

[47] Jacques Rigaud, *La culture pour vivre* (Paris: Gallimard, 1975), p. 189.

[48] Andrault, M. and Dressayre, P., "Government and the arts in

후일 미테랑 도서관이라고 명명된 테제베(TGB; Très Grand Bibliothèque)건설계획의 주요한 정책적 지주였다. 이 계획은 대영도서관이나 뉴욕공립도서관, 그리고 미의회도서관 등과 비교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이 노정하고 있던 상대적 후진성을 종합적으로 역전시킴으로써 프랑스대중의 책에 대한 접근통로를 확대시킨다는 웅대한 계획이었다. 세계 최고속 전철 테제베(TGV)와 이름이 비슷한 이 사업은 철도교통에 혁명을 일으킨 테제베에 버금가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보문화사업을 국가기간사업으로 인식한 사회당정책의 백미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도서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대중의 문화적 통로를 확대시켜주었다면, 도서정가제는 소형전문서점들이 대형서점들과 병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문화적 소수를 보호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랑 법(Loi Lang)에 포함되어 있던 도서정가제는, 대형서점들에 의한 책의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중이 할인된 가격으로 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민주화라는 기조와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졌다.

도서정가제는 문화종합매장의 대명사였던 '프낙'(FNAC: Fédération Nationale d'Achat de Cadres)과의 대결로 상징되었다. FNAC은 1950년대 두 명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소비조합운동의 일환으로 설립했던 것으로서, 사회당정권이 출범한 1981년 당시 전체 레코드유통의 9%, 사진유통의 10%, 그리고 전체 서적유통의 14%를 차지하고 있던 문화관련 대형종합매장으로 발돋움해 있었다.[49] 그러나 도서정가제의 실현으로 회원들에 대한 최대의 할인을 특징으로 했던 FNAC도 출판사가 책정한 금액의 5% 이내에서만 할인판매

France," in Cummings et al.(ed.), *The Patron State: Government and the Arts in Europe, North America and Jap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249.

[49] Jacques Guyaz, "Innovations dans le secteur des services: du militant à l'entrepreneur," in *Français, Qui êtes-vou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81), pp. 195-196.

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정가제를 통해서만이 소규모전문서점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들 소규모전문서점들이 슈퍼마켓 같은 대형서점의 독주와 독점을 견제함으로써만이 민주적 도서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정책기조가 관철된 것이었다.

쟉크 랑이 문화적 민주화를 위해 즐겨 사용했던 것은 바로 구획철폐 (décloisonnement)라는 개념이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엘리트적 예술과 대중문화 간의 구획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에 대한 비전(秘傳)주의적이거나 전문주의적인 태도가 배격되고 보다 개방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쟉크 랑의 이와같은 정책기조로 인해 만화, 패션, 대중음악, 비디오, 서커스, 심지어 요리 등이 오페라, 문학, 그리고 고전음악 등과 같은 반열에서 문화부의 갖가지 지원을 향유할 수 있었다. 앙굴렘(Angoûlem)에 건립된 만화박물관(Museé de la bande dessine)과 촬롱(Chalons)에 설치된 서커스학교 등은 문화정책의 전통적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82년 쟉크 랑의 측근들은 '음악축제'(Fête de la musique)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것은 연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일을 택해서 아마추어와 프로를 막론하고 약 5백만에 달하는 음악인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자발적이고 대중적 방식을 추구한 음악축제는 68혁명 당시의 가두집회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50] 음악축제의 대대적인 성공에 이어, 유사한 형태의 문화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영화축제'(Fête du Cinéma), '사적(史蹟)개방일'(Journée de portes ouvertes dans les monuments historiques), '독서축제'(Fureur de lire), 그리고 '사진축제'(photofolies) 등이 그것이었다.[51] 한편으로 쟉크 랑의 이와 같은 활동은 우파진영의 쟉크 보멜

[50] 이 음악축제는 1992년 6월 영국 '국민음악일(National Music Day)'의 모델이 되었다.

[51] M. Hunter, *Les jours les plus Lang* (Paris: Odile Jacob, 1990), pp. 143-151.

(Jacques Baumel)과 같은 인사로부터, "퇴폐적 미학가들과 생각 없는 젊은이들로부터 갈채 받는 전대미문의 문화파괴자"라는 비난을 자아내기도 했다.[52] 아울러 지나치게 현시적인 문화행정에 치중한 나머지,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적 관심을 베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53]

쟉크 랑이 추구했던 구획철폐정책이 특히 두드러졌던 분야는 대중매체에 관한 정책에서였다. '무와노(Moinot)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 고등방송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쟉크 랑은 대중매체에 대해 일대쇄신을 도모했다.[54] 1968년 이래 방송은 통신부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따라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등의 대중매체와 순수문예 간에는 행정적 장벽이 가로놓여있었다. 이것은 순수문예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한편, 방송매체가 보다 큰 국제적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 순수문예적 창조성을 수혈받는데 장애가 되었다. 대중매체가 지니는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미테랑 정부의 관심은 캬날 플뤼스(Canal Plus)라고 하는 케이블TV방송사의 설치로 표현되었다. 아울러 영화와 드라마를 전문으로 하는 5번 채널과 팝 뮤직을 전문으로 하는 6번 채널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대중매체사업에 대한 투자는 인공위성방송시대에 들어서 국가적 방송체계에 기반한 기존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대중매체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대중적 확대가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이 추구됨으로써 외국방송사들을 위한 시장확대만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문화적 민주화는 특히 각각의 지방문화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

---

[52] *Le Monde*, Juillet 16-17, 1989.

[53] 1986년에서 1988년 사이 프랑스에서는 일시적으로 우파가 다수당이 됨으로써 좌우동거내각을 경험하게 된다. 당시 문화부장관직을 맡았던 프랑수와 레오타르(Franois Lotard)는 쟉크 랑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4] P. Moinot, (ed.), *Pour une réforme de l'Audiovisuel*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81).

는 문화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프랑스는 모든 길은 파리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파리중심의 환형적 문화구조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파리, 디종, 리용, 마르세이유 등의 대도시가 위치한 동쪽지역과 서쪽지역 간의 문화적 편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55] 1982년 11월 국회에서 행한 쟉크 랑 장관의 다음과 같은 연설내용은 지방문화의 육성에 대한 미테랑 정부의 새로운 의지를 잘 대변해주는 것이었다.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한 1983년도 예산안 중, 파리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예산은 3억 프랑인데 반해, 파리 이외의 지역에 근거한 사업예산은 15억 프랑에 달합니다. 과거에 비해 이것은 사실상의 역전입니다."[56]

미테랑 집권기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문화적 민주화를 이룩해 내는데 공헌했던 사람은 역시 68세대 중의 한명이었던 도미니크 왈론(Dominique Wallon)이었다. 왈론을 수장으로 한 '문화발전국'(Direction du Développement Culturel)은 1979년에 설립된 '문화발전특별위원회'(Mission du Développement Culturel)를 계승한 조직이었다. 1982년 11월 도미니크 왈론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계획의 골자는 분산과 다원주의였다. '문화발전국'은 '문화발전협약'(Convention de Développement Culturel)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냈다. 지방의 대소자치단체의 계획을 문화부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협약은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을 촉진시켰다.

1982년 앙리 지오르당(Henri Giordan)은 문화부의 후원 하에 『문화적 민주주의와 차이를 위한 권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57] 이 보고서는 '지방언어와 지방문화에 관한 국가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Langues et Cultures régionales)라는 기구가 설립되

---

[55] *La France,* Mai 3, 1981, p. 321.

[56] Orientations budgétaires du Ministres de la Culture pour 1982, *Supplément* à *la lettre mensuelle d'information* (Paris: Ministre de la Culture, 1982).

[57] Henri Giordan, *Démocratie culturelle et Droit* à *la Différence* (Paris: La Documentation franaise, 1982).

는 계기였다. 수세대 간에 걸친 중앙집권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틀에 비추어 지역운동과 소수언어수호운동이 극단주의적이고 반국가적이라는 반론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위원회는 지방문화창달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언어와 지방문화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지방문화의 독특성을 허용, 장려함으로써 세계화에 대처하는 세방화(世邦化: glocalization)전략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요리문화정책을 예로 들자면, 수도권에 비해 골(Gaulle)족(族) 음식문화의 순수성과 다양성이 뛰어나게 나타나는 지방의 음식문화를 개발하여 파리를 대신하여 프랑스의 음식문화를 대표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는 점이다.

클로드 몰라르(Claude Mollard)의 주도로 이루어진 DRAC(Directeur régional d'action culturelle: 문화적 행동의 지역책임자)제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예술가들을 잇는 연결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생산과 분배를 위한 지역적 이니시어티브를 촉진시켰다.[58] DRAC을 통해 추진된 대표적 프로그램으로서 FIACRE(Fonds d'Incitation à la Création: 창작촉진기금)이 있는데, 이는 전국에 걸쳐서 문화적 프로젝트 혹은 개별 예술가들에게 소액의 지원금을 줌으로써 대중적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의 지역적 균등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FRAC(Fonds régionaux d'Art Contemporain: 현대미술진흥재단)이었다. 프랑스의 유명전시회에 출품된 예술품들에 붙어있는 소장인 란에서 흔히 그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FRAC의 설립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대 50의 비율로 미술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전시하는데 있었다. FRAC을 통한 예술품의 구매액수는 퐁피두센터의 예술품 구매예산의 3배에 달했으며, 1986년 FRAC에 의해 수집된 예술품의 총수는 약 3분지 1을 차지한 회

[58] Wachtel, *Cultural Policy and Socialist France*, p. 49.

화를 포함하여 사진, 조각, 판화 등 총 6,000편에 달했다.[59] FRAC이 지방문화의 균등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의 설립초기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던 것은 지방소재 미술관들이었다. 기존 미술관들의 개, 보수와 이미 수집되어 있는 미술품에 대한 보존과 복원에 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FRAC에 대한 이들의 반박논리였다. FRAC의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FRAC의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예술적 안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FRAC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FRAC이 인위적 예술시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오로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예술세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관한 것이었다.[60] 특히, 예술시장이 미발달되어 있던 지방의 경우 FRAC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한 것이어서, 예술시장의 향배가 FRAC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지방문화의 복권을 통해 프랑스문화의 심도를 높인다는 정책논리는, 세계적 수준에서 미국식 획일화에 반대한다는 프랑스문화의 국제화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와 지방간의 문화적 격차는 결코 해소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위용의 정치'(politique de grandeur)의 일환으로 추구된 거대문화사업들이 파리에 집중됨으로써 그와 같은 문화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적 문화라는 대의와 대내적 통합을 위한 문화라는 대의 간의 충돌이었다. 민주적 문화라는 대의에 대한 미테랑 정부의 헌신은 프랑스 내 소수민족문화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적 자결권에 대한 미테랑 정부의 강조는 프랑스가 추구해왔던 이민자들에 대한 통합(intégration) 정책과 마찰을 빚지 않을 수 없었다. 전통적으로 프랑

---

[59] *Ibid.*

[60] FRAC에 의한 예술품구매가 전체 예술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정도였다. L'Etat et les Galeries d'Art, *Canal* (Summer 1984), p. 11.

스는 혈통주의적 성향을 지닌 독일과는 달리 문화주의적 정책기조를 취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문화적 통합을 강조해왔었다.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을 위한 최고위원회'(Haut Conseil à l'intégration)는 각 개인이 그 규칙을 준수하고 구성요소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회 안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1] 그러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이란 명제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프랑스문화에 통합되기를 거부하고 프랑스영토 안에서 게토(ghetto)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이질적 문화요소들이 통합을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적 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프랑스 자신의 문화적 통일성이 잠식되고, 프랑스 내부에서 모자이크 같은 게토의 난립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익진영으로부터는 미테랑 정부가 프랑스내의 이질적 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공격이 가해졌고, 우파의 비판에 대한 미테랑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다시 좌파진영으로부터 사회당이 표방하고 있는 문화적 민주주의가 선정적 수사학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역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문화적 민주화'를 통해 문화가 계급적 세습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중의 문화적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대중의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통로를 확대한 것은 비단 대중에게 보다 많은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문화발달에 대중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것은 일부 엘리트층에 한정된 문화수혜의 폭을 대중의 문화적 잠재력과 접맥시킴으로써, 전 국민의 문화적 재능을 동원하여 문화적 경쟁력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프랑스를 상징하는 고급문화가 보다 견실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

[61]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Lien culturels et intégration, rapport au Premier minist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5), p. 13.

는 터전을 넓혀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미테랑 시대 사회당정부는 민주적 문화의 추구를 통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간의 장벽을 허물고 양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전자의 문화적 화석화를 막고 후자의 천박화를 견제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라. 민관협력모델에 기초한 문화정책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이전까지 존재하던 문화정책체제를 계승하는 한편으로 기본틀의 변화에 맞게 그 체제를 발전시켰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대표하는 3대 축은 엘리제궁과 외교부, 그리고 문화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3대 축 아래 방대한 해외 문화 정책망이 결합되어 있다. 2000년 기준으로 132개에 달하는 문화원 및 어학원, 25개에 달하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연구소, 11개에 달하는 대학정보센타, 300개에 달하는 해외중고교, 200개에 달하는 고고학탐사본부, 그리고 여기에 전 세계 138개국에 약 1100개에 달하는 지부들을 거느리고 있는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덧붙여져 있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들이 여러 법령과 계약을 통해 외교부와 문화부,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 지휘되는 문화 정책망을 구성하였다.[62] 미테랑 시대에서 주목되는 문화정책체제의 변화는 민간참여의 확대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정책의 큰 틀 안으로 민간단체 혹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1970년대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회당에 의해 표방되었던 '문화적 행동'이라는 개념을 대외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외교부의 경우,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작크 리

---

[62] Laurent Deveze, "Alliance française," Emmanuel de Waresquiel ed. *Dictionna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de la France depuis 1959* (Paris: CNRS/ Larousse, 2001), pp. 14-15; 양미을, 『프랑스의 대외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주한 프랑스문화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 11-17.

고의 정책보고서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작크 리고는 외교부 산하 '문화과학기술총국'(DGRCST: la 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의 대대적인 개편을 촉구하였다. 문화과학기술총국은 전세계에 산재해 있던 '문화연구소'(les instituts culturels)와 '프랑스문화원'(les centres culturels français) 등을 총괄하면서 문화와 교육,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기구였다. 문화과학기술총국의 지휘를 받는 문화연구소(les instituts culturels)는 20세기 초반 대학의 주도로 설립된 데 비해, 프랑스문화원(les centres culturels français)은 2차대전 이후 프랑스정부의 문화 및 언어 보급정책의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1981년 프랑스외교부는 '알리앙스 프랑세즈'(les Alliances françaises)와 계약을 체결하여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문화과학기술총국이 추진하는 문화정책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 원래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19세기 말의 프랑스지식인들, 특히 지리학자들의 주도로 '프랑스의 친구들'(les amis de la France)을 집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1883년에 창립된 민간조직이었다.[63]

아울러 외교관들과 예술인들이 국제예술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1922년에 창설했던 프랑스예술행동협회(AFAA: Association française d'action artistique)를 통한 민간의 참여가 강화되었다. 미테랑 집권기에 나타났던 AFAA 조직 상의 중요한 변화는 'AFAA-지방자치단체클럽'의 설립이었다. 198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독자적인 문화 정책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이를 조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낭뜨는 과거 노예무역시대에 아프리카와 맺었던 문화적 전통을 새로운 의미로 회복하고자 했고, 마르세이유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릴은 북유럽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했고, 리용은 싱가폴, 쌩 페테르스부르

63 Jacques Rigaud, *Politique Culturelle Extérieure*, in Waresquiel (2001), p. 503.

그, 요코하마 등과 더불어 새로운 도시문화의 정체성을 모색하였다.[64] 'AFAA-지방자치단체클럽'은 재정적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양한 지자체들의 문화정책적 노력이 분산, 중복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최대한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65]

알리앙스 프랑세즈 및 AFAA와의 제휴가 외교부 차원에서 추진된 대표적 민관협력의 사례였다고 한다면, 문화부 쪽에서는 각종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역량을 문화정책담당주체로 끌어들였다. 문화부장관이었던 작크 랑은 법학교수시절 낭시(Nancy)에서 열리고 있던 대학생연극제를 국제적 문화행사로 발전시킴으로써 문화계의 각광을 받은 바 있었다. 미테랑에 의해 문화부장관에 임명된 직후 작크 랑과 그의 측근들은 '하지음악제'(Fête de la musique)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약 수백만의 음악애호인들을 거리로 불러 모으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자발적이고 대중적 방식을 추구한 '하지음악제'는 68혁명 당시의 가두집회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사회당이 내세운 '문화적 행동'이라는 개념을 잘 표방하고 있었다. 이 음악축제는 1992년 6월 영국에서 시작된 '국민음악일'(National Music Day)의 모델이 되었다.[66]

프랑스문화부의 국제적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국내적 축제행사의 성공을 대외적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고, 세계의 문화인들을 프랑스로 끌어들여 프랑스 속의 세계문화(Cultures du monde en France)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이것은 우파정당들에 비해 개방적이었던 사회당의 이민자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국제적 축제에 대한 작크 랑의 적극적 지원은 도빌(Deauville)미국 영화 페스티발에 대해 보여주었던 그의 태도와는

---

[64] Jean Digne, *Présence Artistique de la France à l'étranger,* in Waresquiel (2001), p. 532.

[65] Deveze, "Alliance française," p. 54; AFAA, *Mode d'emploi,* (Paris: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2001).

[66] 김명섭, "프랑스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 p. 226.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다. 미테랑시대 프랑스 문화부의 크고 작은 후원 속에 시작되거나 국제적 행사로 변모한 주요 문화행사들은 매우 많다. 미테랑 집권기에 시작되어 2002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주요 국제문화행사들을 최초개최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중해영화페스티발(1982), 빌뢰르반느라틴아메리카영화페스티발(1984), 도리락거리연극국제페스티발(1986), 앙제아프리카 영화페스티발(1987), 아프리카 및 인도양 음악을 주제로 한 페스티발 아프리꼴로르(1989), 구동유럽공산권국가들의 예술인들 초청하여 개최되는 디(Die)동서페스티발(1989), 뚤루즈라틴아메리카영화페스티발(1989), 페르피냥사진페스티발(1989), 국제기록영화페스티발(1989), 국제그래픽예술가교류모임(1990), 아프리카예술을 주제로 한 페스티발 오 쉬드 뒤 쉬드(1990), 지중해연극페스티발(1991), 유럽과 아시아 예술인들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쌩 플로랑 르 베이유 페스티발(1993).[67]

그런데 문화부가 주관하는 이러한 국제문화교류활동은 외교부와의 갈등을 빚어낼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작크 랑은 문화정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외교부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부 내에 국제협력처(Service des affaires internationales; 나중에 국제부[Le Département des affaires internationales]로 발전)를 신설하였다.[68]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기업메세나촉진협회'(ADMICAL: Associ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u Mécénat Industriel et Commercial)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민간적 후원방식 보다는 국가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정책을 펼쳤고, 프랑스의 경제계는 물론 프랑스의 문화계도 기업과 문화의 협력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작크 리고는 ADMICAL을 통해 메세나(Mécénat)라는 개념을 정착시켰다.[69]

---

[67] Jean-Luc Toula-Breysse, *Culture du monde en France* (Paris: Plume, 1999).

[68] Digne, *Présence artistique de la France à l'étranger*, p. 532.

작크 리고는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문화적 후원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경제계 내의 여론을 선도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금공제혜택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후원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연주회나 연극의 초대권을 보내고, 고궁이나 박물관 등을 세미나나 연회의 장소로 대여해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70]

ADMICAL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4년부터 실시된 프랑스정부의 예산긴축정책 때문이었다. 국가후원이 줄어든 만큼 민간후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던 것이다. 국가후원이 줄어들면서 1985년 작크 랑은 기업이 지출하는 문화후원비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의 확대를 통해 '메세나기업'의 증대를 도모하게 된다. 공산당과 연계된 노동조합(CGT)을 제외한 다른 노동조합들(CFDT, FO)도 기업의 메세나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1986년 프랑스문화부의 위탁을 받은 메세나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기 드 브레비송은 1985년 약 400개의 기업이 3억 5천만 프랑의 문화후원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1985년 ADMICAL이 발표한 후원대상별 분포를 보면 조형예술분야가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음악분야 24%, 문화유산분야 8%, 페스티발분야 7%, 연극분야 4% 순이었다.[71]

기업메세나 제도가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기업메세나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국경을 넘는 기업 메세나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주도했던 기업 메세나 제도는 유럽연합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표명된 메네나 활동에 대한 관심은 유럽의회가 발표한 '민간 메세나 활동과 문화에 관한 권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유럽각료

---

[69] 김문환, 『문화경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p. 143-160, pp. 197-203.

[70] Wachtel, *Cultural Policy and Socialist France*, pp. 57-59.

[71] Guy Brebisson, *Données sur le Mécénat d'Entreprise en France en 1985*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Service des Etudes et Recherches, 1986).

위원회 역시 문화를 지원하는 수단은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할 경우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72] 초국경적 기업 메세나 활동의 대표주자는 프랑스에 진출한 초국적기업들이었다. IBM, Kodak, Apple 등과 같은 미국기업의 프랑스현지법인들이 프랑스기업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94년에 들어서 18개 금융기관의 출연금, 개인 및 기업체의 지원금 등 총 2천 5백만 프랑으로 출범한 '프랑스재단'(Fondation de France) 역시 기업체들의 문화적 후원을 촉진시켰다.[73] ADMICAL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AFAA는 'AFAA-지방자치단체클럽'과 유사한 'AFAA-기업 클럽'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15개 주요 국제적 기업들이 가입하였고, 이와 같은 제도적 발전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와 국제경제교류의 접합이 광범위하게 모색되었다.[74]

마. 자기정체성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문화정책

프랑스에 있어서의 문화정책은 프랑스 고유의 민족국가(Nation) 개념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해왔다.[75] 전술한 바와 같이 1882년 소르본에서 행한 연설에서 에르네스트 르낭은 프랑스인들이 가져야 할 민족국가(Nation)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르낭은 민족국가의 경계가 언어나 지리, 인종, 종교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민족국가들이란 인간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

[72] 김문환, 『문화경제론』 p. 124

[73] Wachtel, *Cultural Policy and Socialist France*, pp. 57-59; 허권, "예술진흥을 위한 기업의 협력: 세계적 동향," 예술행정연구회, 『예술과 행정』 제1호 (서울: 평민사, 1988), p. 174.

[74] Deveze, "Alliance française," p. 54; 이 장의 내용은 주로 다음을 참조. 김명섭, "프랑스의 문화외교: 미테랑대통령집권기(1981-1995)를 중심으로," pp. 349-51.

[75] 이 연구에서 문화정책이란 "문화적이라 일컬어지는 자산, 활동, 직업, 조직 등에 대한 국가의 개입 혹은 불개입을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와 그러한 조치의 체계"라고 정의한다.

고 보았다. 르낭은 특히 인종과 국가를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한 언어를 말하거나 한 겨레라고 해서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은 과거에 있어서 위대한 일들을 함께 이루었고 미래에 있어서 또 다른 위업을 함께 이루고자 원하는 데 있다"고 설파하였다.[7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프랑스의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직결된다. 자기정체성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대표적 프랑스문화정책은 자국어의 보호와 보급이다. 프랑스의 문화정책망은 사실상 프랑스어의 보급망을 기초로 한다[77]. 미테랑 대통령 시기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켰다. 미테랑 대통령은 임기 중인 1986년에 발간한 저서를 통해 "나는 외국의 교육기관들에서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교육시간, 교사 및 학생의 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기구들에서 프랑스어가 공식어로 채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그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의 말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78]

이처럼 자국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문화정책을 진두에서 지휘했던 것은 미테랑 대통령 자신이었다. 장기적인 문화정책은 한 국가의 핵심적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마련되고 계승된다는 점에서 국가수반은 대외적으로 한 국가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정책의 담당주체이다. 특히,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입헌군주제 국가들의 국가수반은 문화정책의 상징이자 중요한 주체로서 기능한다. 프랑스에서 대통령

---

[76] Renan, "Qu'est-ce qu'une nation?" pp. 903-904.

[77] François et Bernard Pigniau Roche, *Histoire de diplomatie culturelle des origines à 1995*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5), pp. 103, 197; DGRCST(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Une politique pour le françai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6).

[78] François Mitterand, *Réflexions sur la politique extérieure de la France* (Paris: Fayard, 1986), pp. 17-18.

을 중심으로 한 엘리제궁은 외교부와 문화부와 더불어 문화정책의 3대축을 형성하고 있다. 국왕을 단두대로 보낸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에서 대통령은 과거의 군주가 맡았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문화공동체로서의 프랑스를 상징하며, 그것을 보위할 임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79]

이러한 위치에서 미테랑 대통령은 1984년 '프랑스어권 최고평의회'(Haut Conseil de la Francophonie)를 설립하여 자국어의 보호와 보급을 위한 문화정책을 주도하였다. '프랑스어권 최고평의회'는 프랑스의 국가원수가 다른 프랑스어 문화권 국가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기구가 아니라 프랑스 대통령에 의해 평의원들이 임명되는 프랑스의 국내기구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문화권의 여러 정부들과 협의하여 후보자들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이 평의회는 프랑스어권 내의 여러 나라 인사들에 의해 구성되는 국제기구로 발전하였다. 극소수의 프랑스어 사용자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국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었는데, 이집트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이집트 외무장관을 지냈고 후일 프랑스어권의 후원에 힘입어 유엔 사무총장에 임명될 수 있었던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 Ghali)는 미테랑이 임명한 '프랑스어권 최고평의회'의 일원이었다.[80]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어권을 결집시켜보려는 최초의 시도는 1966년 대학들 간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던 '전체 혹은 일부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대학협의회'(AUPELF: Association des Universités partiellement ou entièrement de la langue française)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서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협회를 조직하였는데, 그것은

---

[79] Jean Massot, *Chef de l'Etat et chef du Gouvernement*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3), pp. 19-30, pp. 169-170.

[80] Allain Decaux, 원윤수 편, "프랑스어 문화권의 쟁점들," 『프랑스어 문화권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p. 159-162; Haut Conseil de la Francophonie, *Etat de la Francophonie dans le mond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7), p. 22.

'국제프랑스어권 의원협의회'(AIPLE: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parlementaires de langue française)였다. 이러한 노력을 계승하여 1986년 2월 프랑수와 미테랑은 베르사이유 궁전으로 41개국의 프랑스어 문화권 국가원수들을 불러 모으는데 성공했다. 이 모임에는 베트남, 라오스 등도 참석했지만, 보다 널리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는 알제리나 스위스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 회합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국가원수들 간의 정기적인 회합을 갖자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를 주주로 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설립이 결정되었다.[81]

1988년 제2차 프랑스어권회의는 케나다 퀘벡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각국의 국가원수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연대공동체가 창설되었음을 선언하였으며, 프랑스어권 국가들 간의 미니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어권경기대회'(Les jeux de la Francophonie)[82]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989년 4월 아프리카의 다카르에서 44개국이 제3차 프랑스어권회의를 개최하였고, 제4차 회의는 개최예정지였던 자이레에서 내전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47개국 참가). 이어서 제5차 프랑스어권회의는 모리스섬(L'île de Maurice, 1993)에서, 그리고 제 6 차 프랑스어권회의는 베트남에서 개최되었다.[83]

프랑스정부장학생제도와 더불어 자국어의 보호와 보급을 위한 미테랑 집권기 프랑스의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었던 것은 프랑스어로 된 서적의 제작, 출판, 판매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약 40여 가지의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1987년 한 해에만도 약 1억

---

[81] Decaux, 원윤수 편, "프랑스어 문화권의 쟁점들," p. 164, pp. 168-169.

[82] 프랑스어권경기대회는 프랑스혁명 200주년이기도 했던 1989년 마로크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1994년 프랑스와 1997년 마다가스카르에서 각각 2차 대회와 3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83] Haut Conseil de la Francophonie, *Etat de la Francophonie dans le monde*, p. 31.

4천만 프랑의 예산이 투여되었다. 도서출판과 관련해서는 각종 비인기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이 행해졌고, 특히 잡지의 경우 1987년 한 해 동안 271종이 정부의 지원으로 출간되었다. 번역출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눈에 띄는 대목으로서 1987년의 경우 외국서적의 번역에 35만 프랑, 프랑스서적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60만 프랑, 407편의 프랑스어서적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에 7백 33만 프랑이 지출되었다.[84]

도서정책과 관련한 문화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은 국제적으로 프랑스어로 쓰여진 도서를 공급하는 문제였다. 1987년 통계를 보면, 외국시장에 프랑스어서적을 공급하는 출판사들이 약 4백만 프랑의 정부지원을 받았고, 프랑스어서적의 해외수송과 관련해서 '프랑스출판조합'(SNE: Syndicat National de l'Edition)이 4백만 프랑의 국고지원을 받은 것 등을 포함하여 총 12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어로 쓰여진 서적의 국제적 보급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85] 이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외국의 프랑스어 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프랑스어서적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국내의 제한된 출판시장을 해외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출판문화의 심층적 발전을 꾀한다는 문화뉴딜적 발상의 구현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테랑 집권기를 통해 추진된 테제베(TGB: Très Grande Bibliothèque) 건립계획이 가지는 의미는 컸다. 오늘날의 프랑스도서관(Bibliothèque de France)을 낳은 이 계획은 세계 모든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과 프랑스어권 지식구조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영어권 지식구조에 맞서고자 했던 국가전략의 일환이었다.[86]

---

[84] François et Xavier Dupin Rouet, *Le Soutien aux Industries culturelles en Europe et au Canada*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1), pp. 79-80.

[85] *Ibid.*, pp. 81-82.

[86] Norindr, "Popularizing French Culture: The Bibliothèque de France," p. 95; 이상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 김명섭, "프랑스의 문화외교: 미테랑대통령집권기(1981-1995)를 중심으로," pp. 351-353.

바. 국가적 경제정책과 결합된 문화정책

(1) 국내경제적 차원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에 프랑스는 종합적 문화발전계획을 추진했는데, 제4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이 수행되고 있던 1962년부터 1965년까지의 1차 년도에는 문화계획이란 개념이 가설적으로 구체화되었다가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1966~70년) 단계에 들어서는 문화 및 문화시설의 확장에 대한 국가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스카르 데스탱 정부에서 레이몽 바르가 재무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문화부예산은 전체국가예산의 0.61%에서 0.47%로 감축되고 말았다.

1981년 프랑스 제5공화국의 4대 대통령으로서 사회당의 프랑수와 미테랑이 선출되자, 프랑스 문화계는 쟉크 랑의 표현대로 "어둠과 광명의 경계선"을 넘는 듯 했다. 지스카르 데스탱에 비해 프랑수와 미테랑은 스스로가 문필가였던 동시에, 사회주의란 '문화적 프로젝트'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던 인물이었다. 과거 문화정책에 대한 사회당의 평가는 1958년에 설치된 문화부의 활동이 과거 예술부(Secretariat d'Etat aux Beaux-Arts)의 활동과 대동소이하다는 표현으로 압축되었다. 사회당과 공산당 간의 "공동강령(Programme commun)"과 "110가지 제안(110 Propositions)"에서 이미 미테랑의 사회당은 "문화적 르네상스는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제 1의 목표들 중의 하나" 라고 규정한 바 있었다. 집권에 앞서 미테랑은 문화예산을 두 배로 증액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고, 집권과 더불어 그의 공약을 천천히 실천에 옮겼다. 사회당 집권 첫 해에 전체 국가예산 중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45%에서 0.75%로 신장되었고, 1986년에는 다시 0.92%(약 100억프랑)로까지 신장되었다. 그 결과 문화부의 예산은 1981년 약 30억 프랑에서, 1982년에 약 60억 프랑, 1983년에 약 70억 프랑, 그리고 1984년에는 약 80억 프랑으로 현격

한 신장세를 보였다. 1979년을 100으로 할 때, 미테랑정부 초기였던 1983년 프랑스국가의 문화지출은 207.3으로 증대되었는바, 이는 같은 시기 영국과 독일이 109.1과 95.1의 지수를 보였던 것과는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는 대규모문화건설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대조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문화예산을 삭감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더욱 확연하게 미테랑의 문화에 대한 헌신성을 드러내주는 대목이었다.

사실 각국의 문화예산에 대한 통계수치는 매우 부정확하다. 그것은 각국의 산정기준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문화 관련 지출은 문화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 계산하기 어렵다. 1978년 미국의 국립문예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의 문화 관련 지출은 전체 국가예산의 0.667%로서 1인당 11.88달러를 차지했고, 영국은 0.173%에 일인당 3.6달러, 미국은 0.068%에 일인당 1.61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국가는 직접적 지출을 회피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문화 인프라 육성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방대한 예산지출을 통해 국가가 직접 문화에 개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민간적 후원방식 보다는 국가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을 펼쳤고, 이 점에 있어서는 미테랑 시대 사회당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프랑스의 경제계는 물론 프랑스의 문화계도 기업체에 의한 문화후원에 대해서는 생소한 실정이었다. 비록 쟉크 랑 문화부장관이 예술분야에 대한 개인적 후원에 대해 구두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는 못했다. 미테랑 시대 프랑스에서 경제계와 문화계의 협력모델을 만들어낸 공로자는 1979년 외무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프랑스문화외

교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던 쟉크 리고(Rigaud)였다. 그는 1979년에 창설된『기업메세나촉진협회(ADMICAL: Association pour le Developpement du Mecenat Industriel et Commercial)』라는 민간기구의 의장으로서 프랑스문화계와 경제계 간의 협력모델을 만드는데 공헌하게 된다. 리고(Rigaud)는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문화적 후원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경제계 내의 여론을 선도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금공제혜택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후원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연주회나 연극의 초대권을 보내고, 고궁이나 박물관 등을 세미나나 연회의 장소로 대여해주는 등의 반대급부가 모색되었다.

『기업메세나촉진협회』의 제안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사회당정부의 예산긴축정책으로 인해 문화예산조달이 어려워진 1984년이 계기가 되었다. 문화부의 입장에서는 재무부의 긴축조치로 인해 부족해진 재원을 개발해낼 필요성이 급박해진 때문이었다. 1985년 쟉크 랑은 기업이 지출하는 문화후원비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의 확대를 통해『메세나 기업』의 증대를 도모하게 된다. 공산당과 연계된 CGT를 제외한 CFDT, FO 등과 같은 노동조합들도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 동의하였다. 1986년 프랑스문화부의 위탁을 받은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기 드 브레비송(Guy de Brebisson)은 1985년 약 400개의 기업이 3억 5천만 프랑의 문화후원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1985년『기업메세나촉진협회』가 발표한 후원대상별 분포를 보면 조형예술분야가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음악 분야 24%, 문화유산 분야 8%, 페스티발 분야 7%, 연극 분야 4% 순이었다.

기업메세나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국경을 넘는 기업메세나 활동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요구는 무엇보다 먼저 유럽연합적 수준에서 수용되었다. 유럽연합체적 수준에서의 관심은 유럽의회가 발표한『민간 메세나 활동과 문화에 관한 권고 1018』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다. 아울러 유럽각료위원회 역시 “의회와 같은 의견이다”라고 동조하면서, “문화를 지원하는 수단은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할 경우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경을 뛰어넘는 기업메세나활동의 대표주자는 역시 초국적기업들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IBM, Kodak, Apple 등과 같은 미국기업의 프랑스현지법인들이 프랑스기업들보다 훨씬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문화후원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대신 기업체의 문화후원이 활발한 미국적 방식이 프랑스 내에서 반영된 현상이었다. 프랑스 기업메세나 제도에서 나타났던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기업이 메세나활동에 참여하기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총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는 점이었다. 1994년에 들어서 18개 금융기관의 출연금, 개인 및 기업체의 지원금 등 총 2천 5백만 프랑으로 출범한 『프랑스재단(Fondation de France)』 역시 기업체들의 문화적 후원을 촉진시켰다.

기업의 문화후원을 촉진시키는 정책과 더불어 기업 내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병행되었다. 이미 1945년부터 프랑스에서는 기업체 내의 문화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노동문화위원회』가 대규모회사들에서 발족된 바 있었다. 『노동문화위원회』에서는 노조의 동의 하에 노동자 임금의 일정비율을 문화예술비로 책정한 후, 노동자들의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했다. 미테랑 집권기에 들어서 문화부와 기업위원회(comité d'entreprises) 간의 문화발전협약의 체결은 기업 내의 문화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도미니크 왈론이 지휘하던 문화개발국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사이에서 체결했던 문화발전협약의 개념이 원용되었다. 피에르 벨빌(Pierre Belleville)의 『기업 내의 문화를 위하여(Pour la Culture dans l'entreprise)』라는 보고서가 발표되고 오루법(Lois Auroux)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발전을 위한 경영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1985년까지 문화부도 이 프로그램을 위해 약 6백만 프랑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발전은 문화와 경제에 대한 미테랑 시대 사회당정부의 전향적 사고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었다. 미테랑 정부의 문화정책은 과거 문화정책의 수립과 그 수행에 있어서 잦은 논란과 마찰의 주제가 되었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 간의 관계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즉, "문화는 발전과 진보의 원천"으로서 "경제적 발전은 문화적 발전에 종속되어야 함"을 확인함과 아울러 문화는 사회적 삶의 총체, 특히 노동생활로부터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즉, "문화 사명은 한 사회의 모든 풍습의 발현, 즉 일상생활의 소품과 생산물, 도시의 건축, 모든 시청각프로그램과 교육제도, 그리고 사회제도 속에 현재하며 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제적 위기의 시대에 문화예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것은 1981년 11월 쟉크 랑이 국회에서 행한 연설의 주요한 화두였다. 쟉크 랑은 이 연설에서 경제부흥과 문예부흥은 동반자적 관계에 있으며, 생활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문화수준의 제고에 관심을 쏟지 않는 국가의 운명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 침체기가 경제적 호황기를 대체하고 있었고, 쟉크 랑은 이것이 더욱 활발한 문화적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쟉크 랑은 "선임자들의 경제적 실패는 무엇보다 문화적 실패"라고 규정하였다. 1983년 쟉크 랑은 주로 좌파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여 졌던 수백 명의 지식인들을 소르본으로 초청하여 "경제적 위기에 대한 문화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74년 대통령선거기간 중 미테랑도, "문화적 행동"이란 심오한 경제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미테랑 또한 다음과 같이 프랑스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조와 반복의 시대를 보내고, 발명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 문화산업은 미래의 산업이며, 문화에 대한 투자는 경제에 대한 투자입니다." 맥브라이드(Sean MacBride)가 지적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경제위기의 시대에 있어

서 세계 3대무기수출국 중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도덕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활용하였다.

경제성 있는 문화정책의 추구는 문화산업 및 문화제작소에 대한 활발한 지원으로 표현되었다. 1982년 이후 뚜렷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문화부의 문화산업 및 문화제작소에 대한 지원정책은 1989년에 이르러서 약 2천 4백만 프랑의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 예산은 문화부 산하 문화경제국(BEC: Bureau de l'Economie culturelle)에 의해 직접지원 혹은 『영화 및 문화산업진흥원(IFCIC: 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및 『국립연구결과활용센타(ANVAR: Agence nationale pour la valorisation de la recherche)』와 같은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집행되었다. 『영화 및 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산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소기업은행 및 여러 은행들과 문화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일종의 공사조직이었다. 한편, 『국립연구결과활용센타』는 투자가치가 높은 문화기획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체의 연구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정부의 영화지원은 자동지원과 선별지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의 지원방식은 영화관입장료의 약 11%정도를 『영화발전기금(TSA)』으로 징수하여 영화제작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자의 지원방식은 흔히 『수익금선불제 (avance sur recettes)』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창조성이 인정되는 영화제작계획"에 문화부가 직접 참여하는 형식의 영화진흥책이다. 정부지원의 결과, 프랑스영화계는 142편을 제작했던 1957년에 비해 관람객의 수가 3분지 1로 줄어든 1987년에도 133편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 사회당정부에 들어서 취해진 두드러진 영화진흥책의 변화는 영화발전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영화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역누진율제를 폐지했다는 점이었다. 이것의 의미는 정부의 영화지원이 예술성보다는 대중성을 지향하는 쪽으로, 그리고 영화시장에 보다

많은 시장적 요소를 도입했다는 데 있다.

대중성을 지닌 문화산업에 대한 사회당정부의 관심은 1992년 반미적 성향을 숨기지 않던 쟉크 랑이 파리근교에 자리 잡은 유로디즈니랜드의 개막식에 참석하는 모습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비(非)"아메리카적인 것"을 추구했던 미테랑정부의 자가당착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테랑과 쟉크 랑이 추구했던 현시적이고 대중적인 문화정책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프랑스 고급문화의 대중화와 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미테랑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이미 1983년 7월과 8월 『르 몽드』지는 두 달 간에 걸쳐서 "좌파지식인들의 침묵"이라는 제하의 기획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 기획물은 좌파지식인들과 미테랑 정부 간의 분리, 다시 말해서 미테랑 정부에 의해 정책화될 수 있는 68의 이념과 그렇지 못한 68의 이념 사이의 경계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프랑스는 영상문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출판문화에 대한 지원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영상문화의 발전이 출판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프랑스의 문화정책 전문가 오귀스탱 지라르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상문화가 출판문화를 "문화저장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문화의 발전이 없이는 영상문화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 국제경제적 차원

1993년 12월 15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우루과이 라운드의 막바지 협상은 국제통상 분야에서 '프랑스적 예외'(French exception)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적 전통에 일대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87] 이 우루

과이라운드협상 중에 프랑스는 유럽연합을 통해 유럽의 집단적 정체성(European Collective Identity)을 내세우며 '문화적 예외'라는 개념을 삽입시켰다. 프랑스는 유럽화(Europeanization)의 논리로 미국화(Americanization)에 맞서는 구도를 만들어냈다.[88] 프랑스가 내세운 문화적 예외의 개념은 사회당의 '문화적 민주화'라는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다. 문화적 민주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며, 문화적 다양성은 단순히 생산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배급의 다양성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89]

그러나 미국은 앞서 언급한 TSF제도와 더불어 영화관입장료의 약 13%를 『영화발전기금(TSA)』으로 징수하여 영화제작을 지원하는 제도 등에 관해 가트(GATT)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자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오히려 '문화적 예외'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자 했다.[90] 미국은 '문화적 예외'라는 개념이 내국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는 가트(GATT)의 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 측은 오디오비주얼 문화상품이 이미 1947년 가트(GATT) 제4조에서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어오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91]

---

[87] Messerlin, "France and trade policy: is the 'French exception' passé?," *International Affairs*, No.72 (1996), p. 297.

[88] Schlesinger, "From Cultural Defence to Political Culture: Media, Politics and Collective Identity in the European Union," p. 371, pp. 373-374.

[89] Martine Danan, "French Cinema in the Era of Media Capitalism," *Media, Culture & Society*, (May 2000), p. 359.

[90] Mel. van Elteren, "GATT and Beyond: World Trade, the Arts and American Popular Culture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American Culture*, No. 19 (Fall 1996), p. 59.

[91] 김완순, "2000년라운드(밀레니엄라운드) 서비스협상과 스크린쿼터제," 원용진·유지나·심광현 편저,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서울: 문화과학사, 1999), p. 182.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 속에서 '문화적 예외'에 관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자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불공정무역시비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오디오비주얼분야 시장에 대해 가트(GATT)가 규정한 호혜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미국 문화산업의 논리는 관철되지 못했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FTA협상과정과도 유사했다.[92] 유럽연합 측이 주장한 '문화적 예외 '조항이 관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오디오비주얼 문화분야에서 미국이 유럽연합에 대해 거둔 무역흑자는 63억 달러에 달했다.[93]

이후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기본정책은 '문화적 예외에 대한 추구'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라는 보다 적극적 표현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94]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스크린쿼터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국제적 지원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99년 7월 미테랑 집권기의 문화부장관이었던 작크 랑은 프랑스국회 외교위원회위원장의 자격으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스크린쿼터의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 작크 랑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미국 영상산업이 끈질기게 한국의 문화주권과 가트협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화적 예외 원칙을 위협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국영화계의 싸움은 곧 우리의 싸움이며, 유럽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95]

'문화적 예외'논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자국의 통상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미테랑 집권기를 통해 "문화는 발전과 진보의 원천으로서 경제적 발전은 문화적 발전에 종속

---

[92] Mulcahy,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Sovereignty: U.S.–Canadian Cultural Relations," p. 269.

[93] Schlesinger, "From Cultural Defence to Political Culture: Media, Politics and Collective Identity in the European Union," p. 374.

[94] Serge Kancel, *De l'exception à la diversité culturelle, La Politique culturelle française* (Paris: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2001).

[95] 『한겨레신문』 1999년 7월 8일.

되어야 함을 확인함과 아울러 문화는 사회적 삶의 총체, 특히 노동생활로부터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981년 11월 작크 랑은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경제부흥과 문예부흥은 동반자적 관계에 있으며, 생활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문화수준의 제고에 관심을 쏟지 않는 국가의 운명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96] 1983년에도 작크 랑은 수백 명의 지식인들을 소르본으로 초청하여 "경제적 위기에 대한 문화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문화와 경제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하였다.[97] 이미 1974년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미테랑은, "'문화적 행동'이란 심오한 경제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98] 대통령 취임이후 미테랑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문화와 경제 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을 잘 드러내주었다: "교조와 반복의 시대를 보내고, 발명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중략) 문화산업은 미래의 산업이며, 문화에 대한 투자는 경제에 대한 투자입니다."[99] 미테랑 집권기의 프랑스에서는 문화부 산하 문화경제국에 의한 지원이 강화되었고, '국립연구결과활용센터'와 같은 조직을 통해 문화의 산업화가 추동되었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세계 3 대 무기수출국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통상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던 프랑스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다.[100] 프랑스가 자국의 통상이익과 문화정책을 결합하려고 했던 흔적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아랍연구소' (Institut du Monde Arabe)의 건립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는 "각국의 문화적 자결권이 지닌 양도불가능성과 양도불가능한 문화들 간의 교류", 즉 제국주의적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국제주의적 문화정책을 강

[96] Forbes, "Cultural Policy: The Soul of Man under Socialism," p. 138.
[97] *Ibid.*, p. 143.
[98] Wachtel, *Cultural Policy and Socialist France*, p. 10.
[99] *Le Monde*, Feb. 15, 1983.
[100] *Ibid.*, Dec. 1, 1982.

조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집'(La Maison de l'Amérique latine)에 대한 지원확대, '다문화 간 대화모임'(Association Dialogue entre les Cultures)의 창설 등과 더불어 아랍연구소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아랍연구소의 출범에 즈음하여 프랑스는 "아랍세계와 그 언어 및 문명에 대한 프랑스의 지식수준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프랑스와 아랍세계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의사소통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프랑스와 아랍세계 간의 보다 나은 관계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유럽지역과의 관계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라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101] 그러나 아랍연구소 창립의 배후에는 아랍세계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었다. 프랑스는 앵글로-색슨적 헤게모니가 아랍지역에서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에 대해 항상 견제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프랑스로서는 아랍세계로부터 안정된 가격에 원유를 공급받을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울러 아랍세계는 프랑스가 위용의 정치(politique de grandeur)라는 차원에서 육성했던 국가기간산업분야, 즉 핵발전, 항공, 무기 등의 분야와 관련된 거대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다른 한편 미테랑 집권기의 프랑스는 "문화적 체르노빌"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유로디즈니를 파리근교 마른느-라-발레에 유치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적 원칙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굴절된 또 하나의 사례였다.[102]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은 외규장각도서반환문제는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자국의 통상이익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1993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테랑 대통령은 이 문서를 "거의 군사적 방법에 의해 가져갔지만, 본인은 이를 다시 문화장관으로부터 거의 무력적인 방법으로 재차 탈취하여 갖다드리는 것"[103]이라고 표현하면서 도

---

[101] Sabine Fachard and Catherine Board, Brigitte Lebbar, Beatrice Le Guay, *Architectures capitales: Paris 1979-1989* (Paris: Moniteur, 1992), p. 78.

[102] Norindr, "Popularizing French Culture: The Bibliothèque de France," p. 94.

[103] 한불 정상회담시 양국정상간 대화록 93/09/14; 한상진, "외규장각 도서

서 한 권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도서들에 대해 장기대여형식의 반환을 약속하였다.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에 대한 한국 측의 요구는 1991년 규장각관계자들에 의해 먼저 제기되기는 했으나, 1866년 이후 프랑스군이 약탈하여 소장하고 있던 도서의 반환뿐만 아니라 약탈 당시 프랑스군이 5,800여권의 도서들을 불태우고, 문화재급의 건물들을 파괴한 것에 대한 국제적 규탄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당시로서 프랑스측이 해당도서의 반환을 완강히 거부한다 하더라도 한국 측으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재반환문제는 교환이나 상호기증의 형식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이미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테랑 대통령 스스로가 표현한 대로 "거의 무력적인 방법으로" 외규장각도서 1권을 한국에 반환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것은 물론 과거 제국주의적 탈취행위를 우파적 전통으로 규정하고 사회당정권의 차별성을 주장하고자 했던 미테랑 시대 문화정책의 주된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경부고속전철사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프랑스의 통상정책과 문화정책이 빚어낸 합작품이었다.[105]

최근 문화적 예외에 관한 프랑스의 주장은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장으로 발전하였으며, 이것은 유네스코를 통한 문화다양성협약의 구현이라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9월 현재 프랑스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초안은 부록에 수록된 바와 같다.

사. 요약과 소결

문제와 한불협상 보고." (외규장각 도서문제 공개토론회, 2000년 11월 20일)에서 재인용.

104 김형만,『문화재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p. 204-205.

105 이 장의 내용은 주로 다음을 참조. 김명섭, "프랑스의 문화외교: 미테랑 대통령집권기(1981-1995)를 중심으로," pp. 354-357.

프랑스에 있어서 문화정책은 "문화적이라 일컬어지는 자산, 활동, 직업, 조직 등에 대한 국가의 개입 혹은 불개입을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와 그러한 조치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106] 전통적으로 문화와 국가를 일체화시키고 문화정책을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로 보았던 프랑스적 관점은 시장적 요소를 강조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이나 혈통을 강조했던 독일 등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 왔다.[107] 이러한 프랑스 문화정책의 주요 특성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정책의 기본틀에 있어서 프랑스는 이전까지의 제국적 문화정책에서 국제적 문화정책으로의 변환을 모색해왔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에는 제국적 전통이 강하게 온존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던 프랑스적 특수성과도 결부되는 것이었다. 현대에 들어서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과 분리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수축하는 제국의 문화적 돌파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작크 리고는 과거 우파대통령 치하에서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담당했던 인물로서 제국적 문화정책에서 국제적 문화정책으로의 중심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프랑스가 이러한 기본틀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은 사회주의적 이념에 기초한 문화민주주의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대중문화지향과는 다른 차원에서 문화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기본틀의 변화는 미국의 문화적 팽창에 맞서서 스스로 과거의 제국적 전통과 단절하고 앵글로 색슨적 의미의 '문화제국주의'와 명확히 구별되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둘째, 민관협력모델에 기초한 문화정책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부터 사회당에 의해 표방되었고, 미테랑의 측근을 형

---

[106] Philippe Urfalino, "Quelles missions pour le ministère de la Culture?," *Esprit* (Janvier 1997). pp. 39-40.

[107] Rigaud, *L'Exception culturelle: Culture et pouvoirs sous la Ve Republque*, p. 503; Mulcahy,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Sovereignty: U.S.-Canadian Cultural Relations," p. 266.

성했던 68세대의 문화민주주의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1981년 프랑스 외교부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라는 민간조직을 문화정책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작크 랑이 이끌었던 프랑스 문화부는 국제문화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문화정책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기업메세나촉진협회'(ADMICAL)를 적극 육성하여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였다.

셋째, 프랑스는 자국어의 보호와 보급을 위한 문화정책을 추진했다. 자국어에 대한 프랑스정부의 보호정책은 미테랑 대통령집권 이전의 시기부터 꾸준히 실시되어 왔던 것이었으나, 미테랑 대통령시기에는 이러한 노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설립된 '프랑스어권 최고평의회'를 통해 제도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공격적 방어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프랑스출판조합'과 더불어 프랑스어로 된 서적의 해외보급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고, 대내적으로는 프랑스어권 지식공동체의 상징으로서 거대도서관(TGB)의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드러나는 프랑스 문화정책의 양상은 미테랑 시대 문화정책의 기본틀이었던 국제적 문화정책이 내용적으로는 프랑스의 문화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기조는 유럽적 차원에서 잦은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했으나, 소국들의 언어를 함께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원칙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자국의 통상이익을 위한 문화정책이 확대, 강화되었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자국의 통상이익에 철저히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국내문화산업 분야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프랑스의 무기, 핵발전, 항공 분야의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은 외규장각도서반환문제 역시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자국의 통상이익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음을 보

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결론적으로 프랑스는 프랑스적 문화정체성을 유럽적 문화정체성으로 승화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문화적 침투에 맞서서 유럽연합이라는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993년 12월 15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우루과이 라운드의 막바지 협상에서 프랑스가 유럽연합과 더불어 '문화적 예외'(exception culturelle)라는 개념을 지켜낸 것은 유럽적 연대를 통한 프랑스문화정책의 대표적 성공사례였다. 이후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의 인정'이라는 소극적 개념을 '문화다양성의 확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세계문화의 창출시대에 있어서 그보다 낮은 수준의 유럽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문화적 차원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층화관리(layered governance)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국제적 문화정책을 통해 이국적 문화요소들에 대해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프랑스 중심적으로 혼성해냄으로써 프랑스문화의 내부구성을 다양화하고 대외적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프랑스의 문화정체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이국적 문화요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두터운 자국문화보호정책을 실시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해오고 있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제국적 문화정책에서 국제적 문화정책으로의 중심이동을 추구했던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였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추구가 곧바로 '수축하는 제국의 문화적 돌파구'라는 개량된 형태의 제국적 문화정책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어권의 문화정책이나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에서 보여 지듯이 프랑스가 표방했던 국제적 문화정책은 사실상 프랑스의 문화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아울러 프랑스의 통상이익을 위해서 문화정책이 활용되었음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앵글로색슨 중심의 '제국적 문화'에 맞서 '국제적 문화'를 표방했던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문화적 예외,' '문화적 다양성'

등의 중요한 대안적 가치를 발전시키기도 하였지만, 자국중심의 문화 민족주의적 외교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지향했던 국제적 문화정책의 목표가 진정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다문화 간의 수평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국제문화레짐을 수립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108]

2. 독일의 문화정책

가. 개 관

유럽연합 회원국 중 통합을 주도해나가는 국가(Integrationslokomotive)인 독일은 국내외적으로 비교적 성공적인 문화정책을 실시했으며, 이에 입각해 동서독 통합을 달성하고 유럽통합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정책적으로도 비중 있게 다룰 가치가 있다. 나아가 독일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은 남북한 통합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그리고 주정부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 문화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후 동서독에서 문화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내용을 달리하며 전개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셋째, 통독 이후 통일정부가 동서독통합을 위해 실시한 문화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사이다. 넷째,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독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

[108]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에 기여한 프랑스의 노력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999년부터 프랑스 문화부 내의 국제부가 주관해오고 있는 Courants du Monde 역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의 일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는 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문화정책이 갖는 특수성과 일반성에 대한 고찰 위에서 남북한 통합과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독일의 사례가 비교·연구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경험론적 관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적 지구화의 전개와 다문화주의의 등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 맥락에서 독일의 문화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시적 접근방법에 더해 각 시기별로 지역, 국가, 초국가적 수준에서 행해진 다양한 문화정책과 비교하는 공시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시간과 공간의 변수화'라는 비교사회학의 주요한 분석틀을 차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한 문화를 그것이 속한 사회의 맥락, 특히 개별적 구성원들의 집합적 관계와 구조적 속성 속에서 분석하고 다른 문화와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도출하려는 시도 역시 복수·국가적 비교연구에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비교의 틀로는 협의적 개념의 문화에 입각해 소수의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문화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와 광의의 문화개념에 기초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자 한다.

나. 협력적 문화연방주의와 독일의 문화정책

독일은 독특한 문화개념을 가진 국가로서 문화정책의 체계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역사적으로 교양시민계층(Bildungsbürgertum)의 제한된 활동 범위에서 유래된 고유한 문화개념은 1차 세계대전과 바이마르 민주주의, 제3제국 등으로 이어지는 격변을 거치면서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지닌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정책도 변화하였다. 이중에서도 극단적인 중앙통제체제 하에서 문화가 대중조작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다원주의와 자유로운 문화활동이 부정되었던 제3제국 시기의 경험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전후에 독일이 문화권을 기본법에 명시

하고 교육과 학문 등을 포함한 광의의 문화 분야에서 문화수행 주체의 자유보장과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화정책을 실시하게 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독일의 문화정책이 갖는 구조적 특징은 문화정책이 민주주의에 입각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종과 훈육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치규범인 프로이센기질을 체계적인 정치교육 등을 통해 민주적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민주적 문화로 변화시킨 데서 '학습민주주의(gelernte Demokratie)'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민주주의[109]는 문화정책의 내용을 틀 지우는 주요한 개념으로 지적된다. 즉 전후 독일의 문화정책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입안되고 집행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독일의 문화정책이 광의의 문화 개념에 입각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문화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 민주주의(kulturelle Demokratie)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10]

물론 문화에 대한 독일의 특수한 전통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문화정책이 원래부터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에서 문화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정치참여와 경제실천에서 소외되어 사적영역이나 반공적 영역(halböffentliche Sphäre)에서 아름다운 활동에만 전념한 교양시민계층의 제한된 개념 및 활동 범위에서 유래한 것이었고 이는 문화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111] 이에 따라 문화에 대한 협의적인 개념에 입각해 다수가 아닌 소수의 계층, 관객보다는 전문예술가에 초점이 맞추되 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

[109] Max Kaase & Günther Schmid (Hg.), *Eine lernende Demokratie – 50 Jahr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Edition Sigma, 1999).

[110]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개념에 대해서는 Hans Peter Thurn, *Kultur im Widerspruch: Analysen und Perspektiven*, (Opladen: Leske+Budrich, 2001) 참조.

[111] Harald Müller,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 Ein Gegenentwurf zu Huntington* (München: Fischer, 1998), pp. 31–32.

보급하자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급문화는 취향형성(taste formation)이 쉽지 않아 대중적 보급이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문화욕구를 고급문화 중심의 정책으로만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데서 1970년대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즐기고 있는 문화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확장된 개념인 문화 민주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독일 문화정책의 기조가 변한 것은 196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 규모에서 발생한 이른바 '68혁명'이 계기로 작용하였다. 68혁명의 참가자들은 서구의 지배질서가 정치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상당 수준의 물질적 복지도 제공하였으나 오랜 뿌리를 갖는 역사적,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인민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인민의 통제권 증대', 탈중앙집중화, 풀뿌리운동 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하려 하는 가운데 반문화 역시 형성되고 확산되었으며 이것이 각 국의 문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112] 독일 문화정책의 기조 역시 이 시기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Kultur für Alle)'라는 구호에서 보여지듯이 시민권의 하나로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기조가 변화되었다.[113]

민주주의가 독일의 문화정책이 기반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라면 '협력적 문화연방주의(kooperativer Kulturföderalismus)'는 독일의 문화정책 구조와 메커니즘을 틀 지우는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의 문화정책은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수립과 집행에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114] 주정부는 주

---

[112] Ingrid Gilcher-Holtey, *Die 68er Bewegung. Deutschland·Westeuropa·USA* (München: Verlag C. H. Beck.Gilcher-Holtey 2001), pp. 177-178.

[113] Rob Burns et.al., *German Cultural Stud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335-339.

[114] 이는 주정부(Landesregierung) 아래의 주 행정구역(Regierungsbezirke)인 군 규모의 자치단체(Kreis)와 독립시(kreisfreie Stadt) 및 기초자치

차원에서 문화기관과 프로젝트의 진흥을 관장하는데 비해 연방정부는 문화적 대외정책과 문화관련 입법업무를 관장하며, 각 수준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을 지향한다. 즉 문화적 전통과 조화를 위해 연방은 명확히 정의되고 한정적인 권한만을 소지하고, 주정부 간에는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문화정책을 조정하며, 주정부는 분권화원칙에 따라 관련 업무 대부분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되어 있다.[115]

독일에서 국가가 자유로운 개인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되 그것이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한 것은 과거 나치독일 시절의 일원적인 문화통제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 평가된다. 독일은 중앙 집중화되거나 평준화되지 않는 특별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국가이다. 오래 전부터 독일에서는 고유한 문화정책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연방국들과 자치도시들이 존재하였다. 오랜 기간 존속되어 오던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나치독일과 동독 시기에 강요된 중앙집중화로 대치되기도 하였으나 패전과 체제전환을 거치면서 다시 복원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재의 독일 문화정책은 연방적으로 조직되고 지역적으로 분권화된 모습을 띄고 있다. 협력적 문화연방주의에 기초한 독일 문화정책의 구조를 표로 살펴보면 〈표 Ⅱ-1〉과 같다.

단체(Gemeinde)를 일컫는다.

115 Norbert Sievers & Bernd Wagner, "Deutschland"f, Council of Europe/ERICarts, *Cultural Policies in Europe: A Compendium of Basic Facts and Trends* (2002), p. 4.

<표 II- 1> 독일 문화정책의 구조

출처: Norbert Sievers & Bernd Wagner, "Deutschland", *Council of Europe/ERICarts, Cultural Policies in Europe: A Compendium of Basic Facts and Trends* (2002), p. 4.

116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주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들은 기본법 28조에 의거해 모든 지방 업무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즉, 지방 공동체의 문화 업무에 관한 결정을 갖는다.

117 공공 문화 기관들을 후원하는 민법 체제의 스펙트럼이 문화 프로그램을 이행시키거나 기금을 분배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개"의 개념은 매우 넓게 해석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배분이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질적인 문화정책을 지녔던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문화 관련 업무가 증가한데서 기인한다. 연방정부의 개입은 1991년에 체결된 통일조약 제35조에 따라 동독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신연방주에 있어서의 문화 프로그램(Programm Kultur in den neuen Ländern)'을 추진하고, 새로 연방수도가 된 베를린의 문화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박물관 섬(Museuminsel)'을 복원하고 '유대박물관 재단(Stiftung Jüdisches Museum)'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베를린 마틴 그로피우스 건축 페스티벌(Berliner Festspiele mit Martin Gropius Bau)'과 '베를린 국제영화제(Internationale Filmfestspiele Berlin)'등을 지원하는데서 두드러졌다.

구동독 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은 과거 서독과는 다른 정치체제와 사회구조에서 사회화 과정을 밟은 구동독주민들이 독일통일 후에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감안해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이들을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독일시민으로 만들려는 제도적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통일되는 과정과 이후의 서독식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대다수의 구동독주민들은 구서독주민들과의 이질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차별을 경험했으며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향유함에 있어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이후 독일이 내적인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개의 분열된 정체성이 주민들 사이에 놓여 있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분열된 정체성은 독일이 내적통일을 완성하고 유럽통합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약요소로서 작용한다는 데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수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문화정책에 더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동독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화사업이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의 증가는 1998년에 연방수상 직속으로 문화매체국을 설치하고 2002년에 할레에 문화미디어, 베를린과 본에 문화진흥, 재단법과 저작권법, 문화재 반환 업무 등을 관장하는 연방문화재단을 창설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연방하원에도 문화매체 위원회가 설립되었다.[118]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주문화재단과 연방정부 간의 합병과 더불어 기금조성체계의 합리화와 활용을 둘러싸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문화정책의 강한 결합, 간소화, 체계화에 관한 다양한 입장의 제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쟁은 2003년 12월 연방정부가 연방문화재단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문화정책에 대한 개입을 줄이면서 해소되었다.

다. 독일 문화정책에서의 시민참여(bürgerliches Engagement) 전통

독일 문화정책은 역사적으로 그 내용을 달리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는 독일의 문화정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면 연속과 단절의 특징이 중첩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문화정책을 독일이 최초로 통일을 달성하고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었던 때로 문화가 상업화되면서 대중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던 제2제정 시기부터 통일 이후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는 최근까지를 이전 시기와 차별성이 두드러졌던 시기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이 통일을 달성하고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었던 1870년대는 문화가 상업화되면서 대중문화가 확산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부르주아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중산층 문화가 형성되는 한편 노동계급에게는 오락과 긴장해소를 위해 새로운 문화적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생산된 대중문화는 기술혁신에 힘입어 상품과 마찬가지로

[118] Sievers & Wagner, “Deutschland,” F, pp. 17-18.

사회적으로 유통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대중문화는 그 대상을 넓힌 데서는 긍정적이지만 주로 '저속한 매개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모든 가치를 평준화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강요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도 지닌 것이었다.[119]

이 시기에 형성된 독일의 문화는 도시에 기반한 산업자본주의의 논리를 구성하는 근대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도로 분화된 구조들은 점점 더 자신들을 중앙 집중화된 제도로부터 분리시키는 경향을 지닌다.[120] 독일의 문화제도와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근대교육제도의 확산되면서 교양시민계급은 독일적인 문화와 교양을 자신들과 동일시하였으며 관료화와 전문화에 부응하여 대중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제도들을 발전하고 조직하였다. 이는 근대국가, 지방정부, 분야별 이해집단 들이 각각 담당하였다.[121] 물론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과 카톨릭 보수주의자등의 사회세력 간에 이른바 문화투쟁(Kulturkampf)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근대성이 문화에 주는 영향에 더해 이미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수세기 동안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다수의 문화시설을 설립한 자치봉건국가와 도시공화국이 존재한 국가였다. 이 전통은 1871년 통일 후에도 제국정부가 문화적 대외정책 권한을 지니고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문화정책 책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예술과 문화에 대한 시민적 참여가 두드러진 코뮨의 자율적인 문화정책이 발전하였는데 이는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는 지역정부와 도시 및 게마인데의회로 분산되었다.

---

[119] 김문환 외, 『19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물신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p. 21-24.

[120] Alan Swingewood, 박형신·김민규 역, 『문화사회학이론을 향하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pp. 226-227.; 근대성이 문화사회학에 대해 갖는 적실성에 대해서는 Swingewood, 박형신·김민규 역, 『문화사회학이론을 향하여』 pp. 230-231.

[121] Burns, *German Cultural Studies*, pp. 22-24.

라. 문화산업: 문화의 중앙집중화와 도구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이른바 '쓰레기'와 '오물' 논쟁[122]에서 보여 지듯이 문화의 상업화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고 이에 반응해 보수세력들은 독일의 민족성과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독일문화투쟁연맹을 결성하고 그 목표로 진정한 게르만 문화를 외부의 파괴세력으로부터 구출하여 회복시키는 것을 내걸었다. 지나치게 관료적인 조직을 갖추었던 이 연맹은 1933년 이후 제국문화협회의 전신이 되었다. 제3제국 시기(1933~1945) 독일의 문화정책은 극단적인 중앙 집중화로 특징 지워지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하나의 근대국가와 그 국가의 대부분의 제도들과 지적 유산들은 문화의 최고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국가의 요구와 더불어 야만성을 조장하는 도구가 되었다. 정치는 이데올로기적 구도와 문화적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었다.[123] 극도의 경제적 침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교묘한 대중조작과 선전선동을 통해 집권한 나치주의자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교훈삼아 개인을 강력한 조직체의 일원으로 통합시키는 정치공동체를 내세우고 민족공동체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킴으로써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시키고자 하였다. 문화 분야 역시 획일적 통합이 뒤따랐다. '유해하고 불건전'하다고 지적된 저자들의 책이 불태워진데 이어 산하에 6개의 기관을 갖는 제국문화협회가 선전부 산하의 조직으로 1933년 9월에 설립되었고 기존의 독일문화투쟁연맹과 독일연극회를 통합하여 나치문화공동체라는 정당기구가 조직되었다. 제국문화협회를 통해 모든 문화매체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행해졌고 '나치 양식' 혹은

---

[122] '쓰레기'와 '오물' 논쟁은 1926년 제국의회에서 독일국가인민당이 이른바 '쓰레기'와 '오물'이 출판, 공연, 영사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된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말한다. 가톨릭계의 중앙당 당원들을 비롯한 우파 세력들은 경제개인주의와 '황금의 신'을 지향하는 문화가 독일 문화의 고전적, 종교적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하였다.

[123] Burn, *German Cultural Studies*, p. 118.

‘20세기 독일양식’이라 불리는 게르만 민족성에 뿌리내린 통일된 양식이 강요되었다. 오페라와 연극, 영화는 이를 위해 동원된 주요 매체였다. 이 시기 문화는 대중조작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다원주의와 자유로운 문화활동은 부정되었다.

괴벨스가 주도한 문화의 중앙집중화와 도구화(Zentralisierung und Instrumentalisierung der Kultur)는 계몽의 이름으로 포장되었는데 이는 정부, 총통, 국가, 그리고 단결된 민족의 힘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게 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계몽은 18세기와는 달리 국가가 퍼뜨리는 거짓말과 신비적이며 마술적인 요소를 지닌 중앙 통제 이데올로기로 대중을 노예화하는 것을 가르키는 것이었다.[124] 이를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는 『계몽의 변증법(Dialektik der Aufklärung)』에서 문화산업(Kulturindustrie)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다름 아닌 문화보급 방식의 표준화와 합리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125] 독특한 영역과 작동체계를 갖는 문화라는 아도르노의 독특한 해석은 근본적으로 공리주의적인 근대 대중문화의 목적의식적 성격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문화산업이 자유와 자율성, 한 사회와 다른 사회의 연속성, 전통, 집합적 기억을 파괴하는 조직화된 지배체계라는[126] 이들의 주장은 맑시즘적 문화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대의 문화를 분석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에 대해 중앙집중식 통제를 행했던 동독 역시 문화산업의 맥락 속에서 고찰될 수 있는 주요한 사례에 해당된다.

---

[124] *Ibid.*, p. 167.

[125] Theordor Adorno, 김유동 역, 『미니마 모랄리아.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 (서울: 도서출판 길, 2005), pp. 264-265; Theordor Adorno & Max Horkheimer,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철학적 단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126] Swingewood, 박형신·김민규 역, 『문화사회학이론을 향하여』, pp. 92-93.

마. 문화정책 경쟁(kulturpolitischen Konkurrenzkampf)과 새로운 문화정책

냉전 시기에 양 독일은 체제경쟁의 차원에서 '문화정책 경쟁'을 전개하였다.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서독은 지역주의와 세계주의를 결합하는 문화를 내세운 반면 동독은 중앙에서 모든 문화활동에 대해 엄격한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가했고 집단주의와 공동체를 강조하였다. 대외적으로도 동서독은 대상 지역과 국가에서 "상황에 영향을 행사(Stand der Dinge zu beeinflussen)"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 다양한 기구와 통로를 동원해 경쟁적으로 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물론 동서독 간에는 문화정책 경쟁과 더불어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전개되었다. 이러한 교류는 특히 1950년대 동독의 문화부가 주축이 되어 라이프치히 박람회(Leipziger Messe), 드레스덴 독일문화제(Deutsche Kulturtage) 등의 전체 독일 문화행사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축조된 이후에는 동서독 관계가 경직되게 되면서 소원하게 되었다. 동독의 경우에도 사회주의적 국가문화를 전체 독일 지역에 적용하는데 대서독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였다.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한 동독은 집권 사회주의통일당(SED)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활동을 통제하였다. 종전 직후 짧은 기간 동안의 문화 복구기를 지나 냉전이 본격화하면서 독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은 소련식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대체되었고 모든 예술가들에게는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할 것이 강요되었다.[127] 체제에의 순응은

---

[127] 1950년까지 소련 점령지역에서 예술과 문화는 강한 시민참여 요소와 함께 반파시스트-민주질서를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1951년부터는 문화정책의 중앙집중화와 더불어 '사회주의 문화혁명'이 추진되었다. 이는 1954년에 창설된 문화부(Ministerium für Kultur)가 주도하였다. Wolfgang R. Langenbucher, Ralf Rytlewski & Bernd Weyergraf (Hg.), *Kulturpolitisches Wörterbuch: Bundesrepublik*

중앙집중적 관료제도에 기반하여 모든 작가들과 예술가들에게 정치적으로 부과되었고 반대자에게는 직위 박탈, 당에서의 축출, 동독에서의 추방 등과 같은 각종 처벌이 뒤따랐다. 이러한 경계확정(Abgrenzung)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베만(Robert Havemann), 하임(Stefan Heym), 비어만(Wolf Biermann) 등의 반체제 인사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당의 방침에 따르도록 하려는 시도[128]는 결국 서독으로의 대규모 탈출을 초래하면서 동독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데 기여했다.

1970년대에 문화정책은 사회적 민주화의 일환으로 그 대상이 일상활동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르면 문화는 동시대의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예술활동과 문화행사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변화는 1960년대에 서독에서 전개된 반전·인권운동이 그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전쟁과 알제리전쟁에 대한 반대운동에 동참한 문화계인사들은 서독사회의 민주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해 주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위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포괄적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조치법(Notstandsgesetz)이었다. 많은 예술가, 학자, 언론인들이 느슨한 형태의 연대조직을 결성해 이 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전후 서독의 문화정책이 전통적인 시민문화의 보호·육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등 보수성과 엘리트성으로 특징된다고 지적하고 문화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즐기고 있는 문화를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정책도 단지 전통적인 시민문화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접근을 확대하려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

Deutschland/ DDR im Vergleich (Stuttgart: J.B.Metzler, 1983), p. 359.

128 비어만에 대한 국적박탈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Manfred Jäger, *Kultur und Politik in der DDR. 1945-1990* (Köln: Edition Deutschland Archiv, 1994), pp. 163-186.

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에 대두한 반자본주의적 추세 역시 다양한 형태의 하위문화(Subkultur)와 대항문화(Gegenkultur)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문화정책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반대로 특징 지워지는 이른바 '68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은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주류문화와는 차별적인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가 생성되었다.[129] 코뮨운동과 무단거주자운동, 민주언론운동, 반핵운동은 기존의 사회규범과 가치에 저항하면서 이들이 시도한 대표적인 반문화운동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시도는 기존의 문화로부터 단절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집권한 사민당(SPD) 정권이 이들 주장의 일부를 제도화된 정책에 반영시키면서 새로운 연속성을 이어가게 되었다. 1970년대에 출범한 사민당 연립정권은 이전의 기민련(CSU) 정권과는 달리 산업사회의 여러 부작용을 극복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문화를 인식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Kultur für Alle)"와 "문화 시민권(Bürgerrecht Kultur)"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문화의 실천분야에서 문화활동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현재까지 독일 문화정책의 목표이자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바. 새로운 지향성: '경제 및 입지요소로서의 문화'와 문화 다양성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개혁지향적인 문화정책이라는 목표설정과 더불어 경제 및 입지요소로서의 문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문화정책이 생산입지와 경쟁력에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특히 오락, 영화, 서적, 오페라와 교향악,

---

[129] Gilcher-Holtey, *Die 68er Bewegung - Deutschland·Westeuropa·USA*, pp. 49-56.

예술교육 분야)의 육성과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십(Public-Privat-Partnership)이 강조되었다. 문화산업은 경제와 고용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데서 중요하다. 1991년과 2002년 사이에 문화산업 분야의 경제적 가치는 29조 유로에서 32.7조 유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식품산업과 비슷한 수준이고 화학산업에도 4/5에 달하는 것이었다. 2000년 현재 문화 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은 약 642,000명으로 집계되었다.[130] 문화부문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효과는 정책결정가들로 하여금 '경제 및 입지요소로서의 문화(Wirtschafts- und Standortsfaktor Kultur)'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131]

그러나 시장주의자들은 문화 분야에서도 자유시장과 효율성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들은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그 주요 회원국들이 특정한 문화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특정 부문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독일 내에서도 세금과 정부보조금과 같이 기업의 비용계산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경성 입지요소(harte Standortsfaktor)'가 단지 간접적인 고려 대상인 문화와 같은 '연성 입지요소(weicher Standortsfaktor)'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재정적자를 겪는 연방 및 지방정부가 공적인 문화정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문화정책은 우선적으로 긴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32] 이러한 주장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나 '시민권으로서의 문화(Bürgerrecht

---

[130] Sievers & Wagner "Deutschland," pp. 14-15.

[131] 이러한 주장은 예를 들어 Eckhardt Barthel, "Europäische Kulturpolitik ist Integrationspolitik: Europa auf dem Weg vom Wirtschaftsraum zum Kulturraum", *Berliner Stimme, Ausgabe* No. 11, 22. (Mai 2004).

[132] 비슷한 주장은 Wirtschaftsforum der Senatsverwaltung für Wirtschaft, Arbeit und Frauen und der Investitionsbank Berlin (2002)에서 발표된 글들을 참조.

Kultur)'에 기반한 공적인 문화정책의 추진을 강조하는 주장과 대립하고 있다.

문화정책에서 경제적 입지 요인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부각되는 또 하나의 쟁점은 문화 다양성 문제이다. 독일에서 다양성 문제는 이질적인 문화를 지녔던 동서독 통일과 이질적인 문화권 출신인 이주자들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1990년 동서독 간의 통일 협상 시 문화 분야는 구동독의 문화활동을 서독의 문화적 가치에 적응시키도록 결정하였는데 이는 양 독일 간에 존재했던 문화적 이질성을 감안할 때 일부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주장했던 문화적 통일 혹은 "두 독일국가가 하나의 독일 문화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러한 괴리를 고려해 통일 후 연방정부가 동서독 사회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 동질성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연방정부는 문화국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세계의 눈에 비치는 통일 독일의 지위와 명성은 정치적 비중과 경제적 업적뿐만 아니라 문화국가로서의 중요성에도 좌우 된다") 동서독 간에 존재했던 문화적 차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과거와의 긴밀한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들이 영토적 지리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는 탈영토화는 지역간, 국가간 인구의 이동을 촉진시킨다.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이주노동자, 난민, 가족결합 등의 형태로 이주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 역시 1960년대에 남부유럽에서 대규모의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인 이래 이질적 문화를 지닌 지역과 국가로부터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일부 도시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30%를 넘으면서 다양한 민족집단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주정부에서도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금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나 연방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133] 이런 점에서

독.일은 공동의 후손, 언어, 문화에 기반하는 민족성을 중시하며, 시민권과 국민 공동체로부터 소수집단을 배제하는데서 민족적 모델(folk or ethnic model)을 채택한 국가라고도 평가된다.[134] 특히 일부 보수적인 정치세력들은 일정한 가치를 공유한 상상의 공동체라는 공간에서 타자를 분리시키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한다. 이들은 타자에 대항하는 독일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하고 있다. 서로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독일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세계화 시대 독일이 직면한 최대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 요약과 소결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문화정책을 유럽연합 수준과 유럽연합 회원국 수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문화정책들과 비교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상이한 정신사를 지닌 국가로서 문화개념과 체계 역시 특수성을 띄고 있다고 평가된다. 18세기말과 19세기 초 교양시민계층의 제한된 활동 범위에서 유래된 고유한 문화개념은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바이마르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지닌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정책도 변화하였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독일의 문화정책이 갖는 구조적 특징은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문화정

---

[133] 독일 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문화적 관심과 참여, 자치조직을 지원할 충분한 공공기금이 투입된 문화정책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유럽이사회 협약을 비준하고 이에 따라 독일 내에 거주하는 소수 원주민과 소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제공해주고 있을 뿐이다. 이에 의해 혜택을 받는 소수민족은 덴마크인(Dänen), 프리즐란트인(Friesen), 소르비아인(Sorben), 독일계 집시(Sinti)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소르비아인들의 문화적 전통과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가 1998년 8월 28일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Sievers & Wagner, "Deutschland," p. 13.

[134] 홍익표, "배제로의 수렴? 유럽의 인권정책과 이주민문제," 『국제지역연구』, 제9권 2호, (2005), pp. 318-320.

책이 입안되고 집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라는 구호에서 보여 지듯이 시민권의 하나로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을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문화연방주의'는 독일 문화정책의 구조를 특징짓는 키워드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화정책이 실시되었던 역사적 전통에서 유래하는 협력적 문화연방주의는 다른 한편 문화정책이 극도로 중앙에 집중되고 도구화되었던 나치독일 시기에 대한 반성으로서 전후에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문화정책은 연방적으로 조직되고 지역적으로 분권화된 모습을 띄게 되었다. 연방제 국가로서 다양한 수준에서 문화정책이 행해지는 데서 협력적 문화연방주의는 이들 간의 조정과 협력의 구조와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의 문화정책이 항상 민주주의에 입각해 추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제3제국 시기 독일의 문화정책은 극단적인 중앙집중화로 특징 지워지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정치는 이데올로기적 구도와 문화적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문화보급 방식의 표준화와 합리화를 의미하는 '문화산업'은 중앙집중식 통제를 행했던 동독의 문화정책을 고찰하는데도 사용 가능하다.

서독의 문화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와 사회적 민주화의 일환으로 그 대상이 일상 활동까지 확대되었다. 이른바 '68운동'을 이끌었던 세력들의 요구 중 일부가 반영되어 집권세력 역시 산업사회의 여러 부작용을 극복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문화를 인식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Kultur für Alle)"와 "문화 시민권(Bürgerrecht Kultur)"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의 문화정책이 역사적으로 그 내용을 달리하면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독일의 문화정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면 연속과 단절의 특징이 중첩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개혁지향적인 문화정책이라는 목표설정

과 더불어 경제 및 입지요소로서의 문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문화정책이 생산입지와 경쟁력에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주자들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서로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독일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세계화 시대 독일이 직면한 문화정책과 관련된 최대 과제 중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한편 독일은 유럽통합을 주도해나가는 국가인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공동의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이 문화국가를 표방하면서 상이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국제사회에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서의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공동의 문화정체성에 기반해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문화산업의 육성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도 독일이 대외적인 문화정책을 중시하는 또 다른 배경요인으로 지적된다.

III

개별국가들과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 다양성과 보충성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세계화의 진척은 기존의 공동체와 문화 간의 상호 접촉을 확대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주의를 부각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 지역과 국가에서는 문화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고유한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135] 유럽 역시 경제와 정치영역에서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격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리적 위치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유럽문화의 다양성은 유럽을 특징짓는 키워드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양성은 유럽공동체의 국가들로 하여금 공동의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경제통합의 심화와 정치통합으로의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비로소 공동의 문화유산과 정체성에 입각한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유럽단일의정서(SEA)의 채택과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에 의한 유럽연합의 출범은 유럽통합을 위한 법제도적인 토대를 제공해주었지만 반면 기존의 국민국가와는 달리 유럽인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된 문화와 의식은 결여되어 있었다. 유로크래트들(Eurocrats)이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주도하는 협력이 다른 분야로 파급되어간다는 신기능주의에 기초한 유럽통합안 역시 대다수의 유럽인들을 통합과정에 끌어들이지 못하는데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경제통합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그 결과 '시민들의 유럽(Citizen's Europe)' 개념이 채택되고 공통 문화영역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었다.[136] 이러한 변화는 1992년 2월 마스트리

[135] 이에 대해서는 Breidenbach & Zukrigl, 인성기 역, 『춤추는 문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다원화』; Pieterse, *Globalization and Culture*; Rieger, *Kultur versus Globalisierung*; Tomlinson, 김승현·정영희 역, 『세계화와 문화』; Warnier Jean-Pierre, *La Mondialisation de la Culture, 3e* (France : La Découverte, 2004).

히트에서 체결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에서 공동체에 문화 분야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조약 제128조에서 "공동체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동의 문화유산을 강조함으로써 회원국의 문화를 꽃피우는데 기여"하며, "회원국 간의 협력을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유럽 민족들의 문화와 역사의 보급, 중요한 문화유산의 보존, 비상업적 문화교류, 예술과 문학 창작과 같은 분야에서 회원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완"하고, "공동체와 회원국은 제3국과 문화 분야 국제기구 그리고 특히 유럽이사회와의 협력을 권장한다"고 명시하였다.[137]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틀이 형성되면서 이에 입각해 본격적으로 문화정책이 추진되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공동체 수준에서의 문화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이 조문은 다양성(diversity)과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이 중앙에서 새로운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기존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완한다. GATT 협상과정에서 탄생한 문화적 예외라는 소극적 개념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보다 적극적 의미로 발전하였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강조는 암스테르담조약에서 재확인되었다.[138] 아울러 니스조약에서 채택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The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에서는 창조적 자유를 언급하고 유럽연합이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139] 이들 조약에 입각해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문

---

[136] 이은해, "문화적 시민권을 위한 유럽연합의 협력",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 편,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I』 (서울: 높이깊이, 2004), pp.424-425; John W. Meyer, *Weltkultur. Wie die westlichen Prinzipien die Welt durchdringen* (Frankfurt/M: Suhrkamp, 2005), pp. 163-165.

[137] 〈http://europa.eu.int/record/mt/top.html〉.

[138] 〈http://europa.eu.int/eur-lex/de/treaties/dat/amsterdam.html〉.

화를 유럽적 연대를 통해 보존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아래에서는 유럽연합을 이끄는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이들 두 국가가 어떻게 '단일성에 기반한 다양성'이라는 유럽을 틀 지우는 문화지형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게 한다.

1. 프랑스와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

세계화현상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지역블록화현상은 특정 문화권 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 유럽지역의 경우, 유럽연합의 창설과정에서부터 유럽각국이 자국의 문화를 유럽적 연대를 통해 보존하고자 했던 문화적 목표는 유럽통합의 주요한 동력들 중 하나였다. 유럽통합은 세계와 단일국가 사이에 문명적 공동체에 기초한 초국가적 실체를 만들어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를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고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역통합 역시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140] 이러한 지역통합의 성격은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과거 루이 14세가 "내가 곧 국가"(L'Etat, C'est Moi)라고 말했다면 오늘날의 프랑스는 "내가 곧 유럽"(L'Europe, C'est Moi)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연합을 통한 자국의 정책실현을 추구하고 있다.[141] 집권기간 중 미테랑도 여러 자리에서 "나는 프랑스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럽인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프랑스적 문화정체성을

[139] 〈http://europa-eu-int/eur-lex/de/treaties/dat/nice-treaty-de.pdf〉.

[140] Amitav Acharya and Ananda Rajah, "Introduction: Reconceptualizing Southeast Asia,"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7, No. 1 (1999), p. 4

[141] Sophie Meunier, "The French Exception," *Foreign Affairs*, No. 79 (Jul/Aug 2000), p. 114.

유럽적 문화정체성으로 승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미테랑의 문화부장관 작크 랑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에 작크 랑이 행한 일련의 연설들에서 유럽적 차원은 유난히 강조되었다. 1982년 나폴리에서 열린 유럽경제공동체 문화장관회의에서 작크 랑은 유럽이 18세기에 그토록 강력했던 유럽의식을 재확인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유럽 오디오 비주얼 공간'(espace audio-visuel européen)의 창설, '유럽문화재단'의 설치, 유럽적 차원의 공동작업 장려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주도적 역할은 이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되는 문화재 관련 라파엘사업, 예술 활동 관련 칼레이도스코프(만화경) 사업, 그리고 도서관련 아리안느 사업 등의 국제적 문화협력사업으로 이어졌다.[142]

미테랑 대통령 시기 유럽적 연대를 통해 미국문화의 독점을 견제하고 프랑스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정책들 중의 하나는 라디오와 TV 등의 방송매체에서 유럽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유럽적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었다. 프랑스는 1982년 외교부 내에 이례적으로 오디오비주얼국(Direction de l'audiovisuel)을 설립하였고, 1984년 오디오 비주얼 문화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인 문화정책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143] 1985년 미테랑 대통령은 EUREKA(Agence européenne pour la coordination de la recherche)사업을 제안하는 한편, 1987년에 출범한 MEDIA(Mesure d'encouragement au développement de l'industrie audiovisuelle européenne)의 틀 안에서 오디오비주얼 문화산업에 대한 유럽적 차원의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1986년 프랑스는 텔레비전방송에 대해 자국영화의 의무방영쿼타

---

142 〈http://europa.eu.int/comm/culture/eac/overview_en.html〉 검색일 2002. 12. 11.

143 Digne, *Présence artistique de la France à l'étranger*, p. 533.

를 부과했다. 프랑스가 추진했던 '국경 없는 TV'(TSF: Télévision Sans Frontière)제도는 오디오비주얼문화에 관한 유럽 내의 국경을 낮추고 대신 유럽과 그 이외 지역 간의 국경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프랑스는 보다 엄격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장편영화의 경우 60% 이상이 유럽산 작품일 것, 그리고 그 중 50%는 프랑스어 판(완전히 프랑스어로 제작되거나 시나리오의 원본과 대화의 텍스트가 프랑스어로 된 것)이어야 할 것 등을 규정했다.[144] 유럽연합을 통한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세계화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지역통합을 통해 개별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목표를 지닌 것이었다. 1986년 프랑스 국내방송 중 하나로 출범한 La SEPT(Société d'Edition de Programmes de Télévision)가 빈사상태에서 벗어나 1989년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맞아 유럽적 차원의 La SEPT(Société Européenne)로 발전하며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프랑스와 독일 간의 '강제결혼'이라고까지 불렸던 방송협약의 결과 범유럽적 TV채널인 ARTE (Association Relative à la Télévision européenne)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145]

2. 독일과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통합을 주도해나가는 국가인 독일은 유럽연

---

[144] 이병혁·최종철·김무경·송도영, "지구화와 프랑스 문화사업의 대응: 영상산업을 중심으로,"『문화정책논총』 제8집 (1996), pp. 19, 50; LEE Ho-Yeong, "La construction de l'identité culturelle européenne: Autour du débat sur l'exception culturelle," (Thèse pour le Docteur, Univ. Paris V-René Descartes., 2000), pp. 390-399.

[145] Susan Emanuel, "Culture in Space: The European Cultural Channel," *Media, Culture & Society*, No.14 (1992), pp. 281, 290; Yves Achille & Jacques Ibanez Bueno, Les télévision publiques en quête d'avenir (Grenoble: PUG, 1994), pp. 265-270; Inge Gräßle, 신창섭 옮김,『유럽의 문화채널 아르테TV』(서울: 한울, 1996), p. 122.

합의 공동의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인 '문화 2000'과 관련하여 독일 역시 연방정부 수준뿐만 아니라 주정부 수준에서 예술가들 간의 문화협력 조약의 체결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창작과 표현을 장려하는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슈뢰더(Gerhard Schröder)가 이끄는 적녹연정은 1998년 연방수상 직속으로 문화미디어국(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BKM)을 신설하고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문화관련 정책 업무를 통합한데 이어 2002년에는 내각 결정으로 연방문화재단을 창설하고 연방 차원에서 각종 예술과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3월 현재 연방문화재단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음악축제, 연극축제, 비엔날레, 문화교류, 뉴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53개에 달한다.

1985년에 제정된 '유럽 문화수도' 역시 그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유럽도시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풍부함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문화 2000'에서도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146] 독일에서 이는 전통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및 비유럽문화 들과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독일 도시 중에서는 이미 베를린(1988년)과 바이마르(1999년)가 선정되었고 뤼 과 카셀, 뮌스터, 칼스루에 등의 도시가 독일 순번인 2010년의 문화수도 유치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문화협력을 향한 통로(G2CC)' 프로젝트의 일환인 '피라미드 혹은 기둥들(Pyramid or Pillars)'과 '문화통로(Culture-Gates)' 에 부응하는 사업 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성평등을 달성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이들 사업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여성문화사무국(Frauen-Kulturbüro NRW)의 사례처럼 주정부 차원에서

146 〈http://europa.eu.int/scadplus/leg/de/lvb/129005.htm〉.

여성들을 위한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 편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뮨 수준에서는 수많은 여성문화시설들이 만들어져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본(Bonn)의 여성박물관이나 쾰른(Köln)의 여성영화제인 '페미날레(Feminale)'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연방수준에서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40세 이상의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에 가브리엘레-뮌터상(Gabrielle-Münter-Preis)을 수여하는 등의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련 분야에서 여성들의 고용비율, 특히 간부급 직위로의 진출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적은데서 이를 높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147]

최근 들어와 유럽연합이 문화정책에서 중시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정책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개인과 집단 간의 보다 확대된 대화와 교류를 행할 뿐 아니라 문화재와 문화서비스의 평등한 분배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플러스 프로그램이나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6차 기초 프로그램은 이를 위한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적녹연정 역시 이에 부응하여 정보통신정책을 경제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분야의 공동의 과제로 삼고 지역과 국가, 유럽연합 수준의 정책으로 통합시키는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시청각적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거나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과 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이 컴퓨터 관련 기업들과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구축한 '학교 네트워크(Schools to Net)'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내외에서 매스미디어 교

147 Annette Brinkmann, *Culture-Gates in Music and New Media Arts in Germany* (Bonn: ERICarts Institute, 2004).

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148]

유럽통합을 주도해 나가는 국가인 독일은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결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이해관계와 정책노선이 유럽연합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라는 구호에서 보여 지듯이 시민권의 하나로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 문화정책의 기조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또한 연방적으로 조직되고 지역적으로 분권화된 독일의 문화정책은 구조는 다양성을 존중한 위에서 회원국 문화활동을 보완하는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구조와 유사하다. 한편 각료이사회에 참여하는 독일 대표들은 공동결정절차 등을 통해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이나 문화와 연관성을 지닌 다른 공동정책들의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각료이사회 대표와 상주대표부(COREPER)는 문화적 다양성과 통일성의 심화라는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1980년대 중반에 독일은 당시 개방의 움직임이 싹트고 있던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다양성과 통일성이 유럽문화의 공동의 유산이며 이것이 상이한 정치체제와 모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이 문화국가를 표방하면서 상이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서의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공동의 문화 정체성에 기반해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있다. 문화산업의 육성이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도 독일이 대외적인 문화정책을 중시하는 또 다른 배경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의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독일의 정체성과 체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

[148] Norbert & Wagner, "Deutschland," p. 15.

독일의 문화정책은 공동의 정체성에 입각해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들 간의 협력을 권장하는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큰 틀에서 추진되지만 부분적으로는 두 차원에서 행해지는 문화정책 사이에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거나 표출되고 있다. 독일 내에서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문화정책의 노선 및 내용과 다른 견해는 크게 두 방향에서 나오고 있다. 첫째, 공동의 정체성을 갖는 사회집단은 흔히 이질적인 것, 혹은 '타자'를 부각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연대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 내에서 민족 중심주의에 토대를 둔 일부 극우파와 보수주의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149] 이들은 일정한 가치를 공유한 상상의 공동체라는 공간에서 타자를 분리시키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한다. 독일에서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문화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존재한다.[150] 그 결과 민주적 정치형태와 결합된 다문화주의의 독일과 특정한 정체성을 지닌 독일이라는 이중적인 상상의 공동체가 출현하면서 갈등과 경계구분이 초래되고 있다.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발칸 전쟁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이주민들의 유입은 일부 정치인들로 하여금 타자에 대항하는 독일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독일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인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문화적 노력은 회원국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유럽연합 외의 제3국들과 외국인들과의 관계에서 편협성과 배타성을 가져올 수 있다

149 최근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사회복지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성향은 일반 독일 국민들 사이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학력수준을 지닌 독일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극우성향이 최근 수년간에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조사대상자 4분의 1이 외국인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극우파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2005년 7월 24일.

150 김문환, "독일 문화정책과 세계 문화발전," 『계간 사상』, 봄호, p.115.

는 사실이[151] 독일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를 개방하고 통합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철폐하거나 축소할 것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 역시 문화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행위자이다. 이들은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주요 회원국들이 특정한 문화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특정 부문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자유경쟁과 효율성이라는 자본주의적인 가치가 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2] 중요한 점은 문화정책의 수립과 관련 재정의 집행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는 대다수의 문화정책이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적인 지출을 통해 집행될 뿐만 아니라 기업 등과 같은 민간영역에서도 그 수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데서 더욱 그러하다. 획일화된 형태의 문화정책보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은 더욱 많은 재원의 조달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내에서도 세금과 정부보조금과 같이 기업의 비용계산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경성 입지요소(harte Standortsfaktor)'가 단지 간접적인 고려 대상인 문화와 같은 '연성 입지요소(weicher Standortsfaktor)'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들 시장주의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재정적자를 겪는 연방 및 지방정부가 공적인 문화정책을 위해 '과도

---

[151] 이은해, "문화적 시민권을 위한 유럽연합의 협력," p. 436.

[152] 이들의 견해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제외된 문화 관련 사항인)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수입과 수출에 대한 제한은 없애고 이들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시장의 완성으로 국가경제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그들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 역시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문화정책에서 이른바 국가재산 문제가 지니는 딜레마에 대해서는 Alan Forrest, "Cultural Policy," in Desmond Dinan (ed.), *Encyclopedia of the European Union* (Boulder: Lynne Rienner, 2000), p. 112.

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문화정책은 우선적으로 긴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나 '시민권으로서의 문화(Bürgerrecht Kultur)'에 기반한 공적인 문화정책의 추진을 강조하는 주장과 대립하고 있다.[153]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정책은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된 정책은 통합정책과 분리정책으로 구분된다. 통합정책은 다민족, 혹은 다문화사회에서 흔히 존재하는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 상태를 극복하는 한편 이로 인한 갈등을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된다. 이 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생활양식을 습득함으로써 일종의 민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유럽연합 역시 다문화사회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서 문화정책은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지적된다.[154] 한편 이중기준의 대내외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분리정책은 대부분 자민족중심주의의 전통이 강하고 국제이주의 규모나 강도가 비교적 약한 국가에서 발견된다. 통합정책과 분리정책은 시기와 국가별로 다른 형태를 띠며, 한 국가 내에서도 혼합된 형태로 병존할 수 있다.[155] 1980년대에 들어와 정체성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이 '차이의 권리(right to be different)'에 기초한 정책으로 이어진 프랑스에 비해 독일은 국민에 대한 인종적 개념과 민주사회에의 요구 사이에서 주저하면서 이제껏 다문화사회의 이상에 대해 말로만 동의하고 있다

---

153 시장지향적인 문화정책을 강조하는 주장에 관해서는 Wirtschaftsforum der Senatsverwaltung für Wirtschaft, Arbeit und Frauen und der Investitionsbank Berlin(2002)에서 발표된 글들을, 문화 민주주의에 입각한 문화정책의 수립을 강조하는 주장은 Oliver Scheytt & Michael Zimmermann, "Kultur für alle bleibt die Leitidee," *Politik und Kultur* (Mai/Juni 2005); Herbert Hirschler "Kultur ist mehr als ein weicher Standortfaktor!" *Kulturpolitische Mitteilungen* Nr. 104, (2004) 참조.

154 Barthel, "Europäische Kulturpolitik ist Integrationspolitik: Europa auf dem Weg vom Wirtschaftsraum zum Kulturraum," p. 27.

155 홍익표, "배제로의 수렴? 유럽의 인권정책과 이주민문제," pp. 319-320.

고 지적된다.[156] 지구화와 경제통합의 추세는 노동의 이동을 더욱 확대시키면서 배제보다는 통합에 기초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은 회원국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주요 회원국 간에 정책의 차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유럽통합은 경제통합으로 시작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어 왔다. 다른 영역에 비해 경제통합의 수준이 가장 앞선 데서 정책결정자들에게 단일시장이라는 경제논리는 다른 논리보다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는 경제정책과 다양성에 근거한 문화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해 있으며 이로 인한 정책 갈등의 소지 역시 크다. 이는 유럽연합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 문화, 정체성 등에 대한 명확한 공동의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정책 갈등은 유럽의 지리적 경계는 어디까지이며, 공동의 유산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며,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최종 정체는 어떤 것이지 등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정체성 간에는 공존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일방적인 억제가 행해지는가, 정체성은 다문화주의에 기초하는가, 아니면 민족중심주의에 기초하는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물론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은 유럽이 기존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억제하지 않고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동유럽과 지중해 지역으로의 유럽연합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충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의 회원국 시민들을 결속시켰던 서유럽적인 문화유산과 가치규범이 동유럽 및 지중해 지역과 상당한 차이를 지니는 데에 그 까닭이 있다.

한편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횡적으로 분산되다보니

---

[156] Riva Kastoryano, *Negotiating Identities. States and Immigrants in France and Germa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 124.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의 강도는 자연히 약할 수 밖에 없다. 유럽연합 차원과 각 국민국가 차원의 정책 수행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자 도입한 보충성 원칙 역시 모호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보충성원칙이 유럽적 수준에서 집행되는 정책이 단지 기존 국가 정책을 보충한다고 할 때 그 경계가 어딘지가 불명확하며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유럽연합이 확대되어 갈수록 더욱 중대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이 갖는 내재적 한계에 더해 통일 이후 독일이 추진하는 국가전략 방향에 따라 주요한 정책 분야에서 유럽연합과 독일과의 갈등이 증폭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진다. 유럽연합의 지리적 확대 과정에서 독일의 중요성이 커짐으로 인해 주변국들 사이에는 전통적인 '중심유럽(Mitteleuropa)' 개념이 부활하면서 오랜 기간 유럽국들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민주적인 유럽공동체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 내에서 회원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독일 등 주요 회원국 간의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핵심지역에 위치한 경제대국 독일이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민주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앙집중적인 강력한 권력국가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수준에서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문화라 한다면 현재 대내외적으로 추진되는 독일의 문화정책은 유럽연합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Ⅳ

유럽 문화정책의 형성과 발전

유럽 문화정책은 문화 영역에서 '유럽의 유럽화(Europeanisation of Europe)'[157]를 통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유럽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유럽통합은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시민들이 교육과 선거를 통해 창출되는 곳에서 엘리트들이 적극적으로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앤더슨의 표현을 빌린다면[158] 유럽연합은 세계적 현안들에 대한 주요 회원국들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획득되어지고 있는 '상상의 공동체'이자 상상과 사회적 구성의 필요성을 지닌 프로젝트라 말할 수 있다.[159]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문화라 한다면 유럽의 정체성은 유럽이라는 공간의 안팎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공고화된다.[160] 유럽 역시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그들이 속한 국가적 차원을 벗어나 점차 유럽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상상하며 행동하는 것을 촉진시킴으로 다문화적인 사회 구성을 지닌 일종의 '상상의 공간(imagined space)'으로 재발견(rediscovery)되며 재발명(reinvention)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공간 내에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대중문화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선출된 국가와 유럽연합 정치인들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유럽연합 기구가 추진하는

---

[157] 다른 한편 문화의 유럽화는 외교·안보 및 경제영역에서 유럽연합의 유럽주의(Europeanism)를 뒷받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유럽연합이 미국과 일본 등의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158] Benedict Anderson,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2002), p. 27.

[159] Donald McNeill, *New Europe: Imagined Spaces* (London: Arnold, 2004), p. 9.

[160] 지리적 경계가 보다 넓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동의 문화적 유산과 가치규범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럽은 기존 국민국가나 국가하위정체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분절화된 정체성을 지닌다. 유럽 전체로 보면 다층적 수준에서 각기 경쟁하는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제도적 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사회구성이 요구되는 '상상의 공간'으로서의 유럽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이다. 아래에서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제도와 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다름 아닌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합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수단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되는[161] 유럽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재발명하기 위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또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1. 마스트리히트조약 이전의 유럽문화정책

유럽공동체 수준의 문화정책은 1993년에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 이후 시작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 유럽공동체가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성격이 강할 무렵에는 공동의 문화정책은 존재하지 않았고, 점차 유럽공동체가 정부간 기구의 성격을 넘어 초국가적 실체로 부상함에 따라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해졌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마스트리히트조약 이전까지 "유럽 통합을 위한 노력은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데 결집되었으며, 그 결과 문화, 복지 등 정신적, 비물질적인 부문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장기 발전 목표들은 부차적인 위치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이다.[162] 따라서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의 시점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의 128조(유럽

---

[161] 진시원, "유럽의 정체성: 내외적 동인과 사회 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유럽기초학문분과위원회 편, 『유럽 질서의 이해: 구조적 변화와 지속』,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3), p. 95.

[162] 이복남, "문화유럽 건설과 EU 문화정책: '문화2000'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U연구』, 제11호 (여름 2004), p. 79.

공동체 조약 151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조약의 128조를 통해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이 법제화된 것을 유럽문화정책의 시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행된 유럽문화정책이 이러한 법제화의 결실을 만들어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마스트리히트조약 이전 시기에 있어서 유럽통합이 주로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에 집중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경제적, 안보적 측면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냉전시대는 유럽적 차원의 문화를 논하기에는 군사안보적 측면의 논의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장 모네(Jean Monnet)의 자서전 역시 '우리는 국가들을 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합하려고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스트리히트조약 이전 시기에 유럽적 시민개념에 입각한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이 전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48년 5월 헤이그에서 있었던 유럽회의(Congress of Europe)의 결과 1949년에 수립되었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유럽 공동문화의 진작을 위해 이룩했던 업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럽평의회의 설립목적[163]을 보더라도, 이 시기에 유럽평의회가 이룩해낸 문화정책적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1949년 로잔에서 개최된 유럽평의회의 문화회의에서는 삶과 연계된 문화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적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이후 유럽문화정

[163] 유럽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1) 인권,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를 수호하고 (defend human rights, parliamentar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 회원국들의 사회적, 법률적 관행의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유럽] 대륙적 동의를 발전시키고(develop continent-wide agreements to standardise member countries' social and legal practices), (3) 상이한 문화들을 뛰어넘어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유럽적 정체성의 의식을 진작한다 (promote awareness of a European identity based on shared values and cutting across different cultures). 〈http://www.coe.int〉 (검색일: 2005 10. 4)

책의 발전에 주요한 모퉁이돌이 되었다. 열전이후의 냉전구도가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지만, 냉전 역시 문화적 측면을 포괄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서유럽문화정책은 이미 존재했었다.

1954년 12월 19일 파리에서는 유럽 14개국이 모여 유럽 최초의 공동문화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문화협정(La Convention culturelle europ'eenne)'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1955년 5월 11일에 발효되었는데, 협정의 전문은 협정체결국들과 유럽협의회 회원국들 사이에서 유럽협의회의 목적이 공동유산으로서의 이념과 원칙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긴밀한 단결(unity)을 이룩하는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1조를 통해 "체결국들이 유럽공동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2조에서는 "각각의 체결국들이 자국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른 체결국들의 언어, 역사, 문명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다른 체결국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연구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제2조 a항), 그리고 다른 체결국들 내에서 자국의 언어, 역사, 그리고 문명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국의 영토 내에서 그와 같은 연구들을 수행하는 다른 체결국들의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3조는 "체결국들은 유럽적 관심을 지닌 문화적 활동들을 진작시키기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유럽협의회의 틀 내에서 서로 상의한다"고 규정하였다.[164]

---

[164] 유럽문화협정 프랑스어 전문 〈http://conventions.coe.int/treaty/fr/Treaties/Html/018.htm〉 이 밖에도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제4조. 각각의 체결국들이 제 2 조와 제 3 조가 실행될 수 있도록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람과 물건의 교류 및 흐름을 가능한 촉진시킨다.
제5조. 각각의 체결국들은 유럽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물건들을 유럽 공동의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관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조문들을 적용시키기 위한 제안들과 해석상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유럽협의회의 문화전문가회의에서 다룬다 (중략).
제9조. 이 협정은 유럽협의회 회원국들에게 열려 있다. 이 협정은 비준

이후 유럽문화협정체결국은 1989년 4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냉전 체제의 종식이후 구 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여 2004년 협정비준국은 총 48개국으로 증가하였다.[165]

1974년 유럽은 이미 교육협력프로그램에 착수했다. 1975년 유럽평의회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미래'라는 주제 아래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소시민이나 청소년, 주변집단에 속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시청'과 더불어 '시민의 집'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1976년에 창립된 문화정책학회는 문화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쌓기 시작했다.[166] 1977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의 제안에 따라 '문화활동'계획에 착수했다. 1976년 오슬로에서 개최된 유럽평의회에서 유럽의 문화장관들은 '문화정책이 곧 사회정책'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과제들을 열거했다. 첫째, 문화정책은 '사회의 정치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둘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적인 문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장과 노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정책은 정치적인 개혁매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167]

1980년대에 들어서 경제통합의 심화와 정치통합으로의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공동의 문화유산과 정체성에 입각한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유로크래트들(Eurocrats)이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주도하는 협력이 다른 분야로

되어야 한며, 비준서는 유럽협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세 개의 체결국들이 그들의 비준서를 기탁하는 대로 이 협정은 그들 국가들 내에서 발효된다.

[165] 이복남, "문화유럽 건설과 EU 문화정책: '문화2000'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pp. 211-212.

[166] 김이섭, "유럽의 통합과 문화정책에 관한 고찰," 『유럽연구』, 제20호 (겨울 2004), p. 255.

[167] 위의 글, p. 257.

파급되어간다는 신기능주의에 기초한 유럽통합과정이 대다수의 유럽인들을 통합과정에 끌어들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경제통합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그 결과 '시민들의 유럽(Citizen's Europe)' 개념이 채택되고 공통 문화영역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168]

이런 맥락에서 룩셈부르크 보고서(1982)와 슈투트가르트 선언(1983)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82년 5월 다시 룩셈부르크에 모인 유럽의 문화장관들은 '유럽에서의 문화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룩셈부르크 보고서'는 문화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가능하며, 문화는 사회변화의 동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1982년 유럽평의회가 구상한 '스트라스부르 초안' 역시 문화영역 안에 교육, 의사소통, 학문, 노동, 여가, 생태에 관한 사회정책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문화가 단지 보존되어야 할 유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동의 삶의 형식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인된 것이다.[169] 이어서 1983년 6월 19일 슈투트가르트 선언을 통해 회원국 정상들은 '유럽정체성의 구성요소인 공동유산의 인식'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영역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1984년 6월 22일 문화 담당 장관회의가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었고, 1988년 문화위원회(Le Comit'e des Affaires culturelles)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유럽 문화도시, 유럽 음악의 해, MEDIA 프로그램 등이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 위에서 시작되었다.[170]

---

[168] 이은해, "문화적 시민권을 위한 유럽연합의 협력," pp. 424-425; Meyer, *Weltkultur. Wie die westlichen Prinzipien die Welt durchdringen*, pp. 163-165.

[169] 김이섭, "유럽의 통합과 문화정책에 관한 고찰," pp. 257-258.

[170] Louis Dubouis, *L'Union européenn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4), p. 184.

2.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의 유럽문화정책

1980년대에 들어서 경제통합의 심화와 정치통합으로의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공동의 문화유산과 정체성에 입각한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역통합이 '확신을 갖는 열망'에 의해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이란 예견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신기능주의에 기초한 유럽 통합 노력은 대다수의 유럽인들을 통합과정에 끌어들이지 못하는 데서 한계를 지닌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없이는 정치·경제통합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그 결과 '시민들의 유럽(Europe des citoyens)' 개념이 채택되고 공통 문화영역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171]

이와 같은 공동의 인식의 토대 위에서 유럽의 문화장관들은 1982년 5월 룩셈부르크에 모여 '유럽에서의 문화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룩셈부르크 보고서'는 문화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가능하며, 문화는 사회변화의 동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같은 해 유럽평의회가 구상한 '스트라스부르 초안' 역시 문화영역 안에 교육, 의사소통, 학문, 노동, 여가, 생태에 관한 사회정책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문화가 단지 보존되어야 할 유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동의 삶의 형식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172] 이어서 공동체의 회원국 정상들은 1983년 6월 슈투트가르트 선언을 통해 '유럽 정체성의 구성요소인 공동유산의 인식'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영역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1984년 6월에는 문

---

[171] 이은해, "문화적 시민권을 위한 유럽연합의 협력," pp. 424-425; Meyer, *Weltkultur. Wie die westlichen Prinzipien die Welt durchdringen*, pp. 163-165.

[172] 김이섭, "유럽의 통합과 문화정책에 관한 고찰," pp. 257-258.

화담당 장관회의가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었고, 이어서 1988년에는 문화위원회(Le Comité des Affaires culturelles)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유럽 문화도시, 유럽 음악의 해, MEDIA 프로그램 등의 문화 관련 정책은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 위에서 시작되었다.[173]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되어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은 유럽공동체 수준에서의 문화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문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책임을 지며 공동체 수준의 개입은 회원국 입법 및 행정명령 조처에 대한 조정을 제외한 장려활동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권고(recommendation)를 통해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구조기금 또는 특수 프로그램의 범주 안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도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문화전문가의 자유로운 이동, 저작권 관련 지침과 문화재 및 용역에 대한 부가세율을 낮추는 등 문화발전에 유익한 여러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174] 제도화된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준거가 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128조 (Article 128)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공동체는 민족적,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의 문화유산을 전면에 끌어냄으로써 회원국들의 문화를 꽃피우는 데 기여한다.
2. 공동체는 회원국들 사이의 협력을 권장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서 회원국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완한다.
   - 유럽인민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지식의 향상과 보급의 증대
   - 유럽적 중요성을 지닌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보호
   - 비상업적 문화 교류

---

[173] Dubouis. *L'Union européenne*, p. 184.

[174] 이복남, "문화유럽 건설과 EU 문화정책: '문화2000'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p. 89.

– 미디어 분야를 포함한 문예 창작

3. 공동체와 회원국들은 제 3 국들 및 문화 분야의 역량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의 협력을 권장한다.
4. 공동체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본 조약의 다른 조항들에 근거한 활동에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다.[175]

"다양성을 존중하며, 문화를 꽃피우는데 기여하며, 공동의 문화유산을 강조하고 보존하는" 것을 유럽연합의 임무로 한다는 이러한 조문의 내용은 유럽 문화정책이 다양성 속의 단일성(unity in the diversity)과 보충성원칙(subsidiarity principle)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이 중앙에서 새로운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기존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유럽인들 사이에 좀더 긴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추구한다"는 조항 역시 로마조약에서 처음 포함된 보충성원칙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로마조약을 이어 받아 보충성원칙에 입각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강조는 이후 암스테르담조약(151조)에서 특히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에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완되었다.[176] 아울러 니스조약에서 채택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The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에서는 창조적 자유를 언급하고 유럽연합이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177] 이들 조약에 입각해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문화를 유럽적 연대를 통해 보존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175] 〈http://europa.eu.int/record/mt/top.html〉.
[176] 〈http://europa.eu.int/eur-lex/de/treaties/dat/amsterdam.html〉.
[177] 〈http://europa-eu-int/eur-lex/de/treaties/dat/nice-treaty-de.pdf〉.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제도화되기 시작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1994년 7월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한 "문화를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문화정책의 목표, 영역, 적용방식 등을 포함한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노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과 문학창작 및 협력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는 칼레이도스코프(Kaleidoscope: 1996~1998), 도서 분야를 지원하는 아리안(Ariane: 1997~1998), 문화유산 분야를 지원하는 라파엘(Raphael: 1997~2000)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밖에 시청각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경 없는 TV'(Fernsehen ohne Grenzen: 이후 MEDIA I, MEDIA II, MEDIA Plus로 발전)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178] 이들 사업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초국가적 협력관계를 확장하고 강화했을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통합의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유럽의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 경제공간'과는 구분되는 '유럽 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79] 그러나 이들 사업은 방대한 수혜자 수에 비해 적은 예산이 집행된 까닭에 유럽인들에게 문화활동을 제대로 보급시키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

[178] 김명섭, "프랑스의 문화외교: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1981-1995)를 중심으로," pp. 354-355.

[179] Perret et Saez, *Institutions et vie culturelles*, p. 123; 이복남, "문화유럽 건설과 EU 문화정책: '문화2000'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에서 재인용.

V

최근 유럽문화정책의 주요 사례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문화라 한다면 유럽의 정체성은 유럽이라는 공간의 안팎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유럽 역시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그들이 속한 국가적 차원을 벗어나 점차 유럽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상상하며 행동하는 것을 촉진시킴으로 다원성에 기반한 일종의 '상상의 공간'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공간 내에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선출된 국가와 유럽연합 정치인들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유럽연합 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적 노력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은 새로운 사회구성이 요구되는 '상상의 공간'으로서의 유럽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이다.

아래에서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다름 아닌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합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수단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유럽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재발명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성과 공통성을 목표로 하는 '문화 2000(Culture 2000)' 프로젝트와 유럽의 횡국경적이고 초국가적인 문화협력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고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협력을 향한 통로(G2CC)' 프로젝트,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유럽도시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풍부함을 부각시키는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문화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유럽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유럽인들 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의욕적으로 추구하는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1. '문화 2000 (Culture 2000)' 프로그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추진된 칼레이도스코프, 아리안, 라파엘 등의 사업은 2000년부터 단일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인 '문화 2000'으로 통합되었다. '문화 2000'은 다양성과 공동의 유산으로 특징되는 유럽 문화공간의 형성과 문화 간 대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 문화의 초국가적 보급, 문화적 다양성, 예술적 창조작업, 문화유산의 진흥, 사회경제적 통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 결정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 내의 창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예술가, 문화정책 결정자, 문화기관 간의 초국가적 협력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의 역할을 경제적 요소와 사회통합 및 시민권의 요소로서 강조함으로써 유럽통합을 경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1) 적어도 셋 이상의 회원국 출신 문화정책 결정자들을 포함하는 특수하게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활동, 2) 구조적이고 다년간 지속되는 문화협력협정에 의해 추진되는 통합활동, 3) 특수한 문화 이벤트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은 주로 새로운 문화표현 양식의 출현과 확산을 격려하고 특히 은이들과 소외계층의 문화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며 정보화사회에서의 신기술을 사용한 방송의 문화이벤트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 활동 협정은 적어도 다섯 회원국 이상의 문화정책 결정가들 간에 이뤄진 것으로 3년 내의 기간에 이미 알려진 문화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구조화된 문화활동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정은 문화분야를 고양시키거나 몇 개의 문화영역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되어있다. 이에 비해 문화이벤트는 규모와 범위에서 실질적이어야 하며 공동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180]

2000년 1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 6년간 2억 3650만 유로의 예산이 소요될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에 최대 45%, 통합 활동에 35%, 문화 이벤트에 10%, 기타 비용에 10%가 할당되어 있다.[181] '문화 2000'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럽연합 기구는 유럽집행위원회로 한 자문위원회가 이를 보조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182]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문화접촉점(cultural contact points: CCPs)을 여는 것과 관련해 집행위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구할 수 있다. 이들 회원국들은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참여를 고무하며 또한 자국의 문화영역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준비하는데 있어 책임을 진다.

현재 정식 회원국 25개국과 유럽경제지역(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소속 3개국(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2개 후보국(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30개국의 문화정책 결정가들이 '문화 2000'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에는 집행위원회가 '문화 2000'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는 2004년에 발표되고 2007년부터 출범이 계획된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180 "Programm Kultur 2000," 〈http://europa.eu.int/scadplus/leg/de/lvb/129006.htm〉.

181 "Programm Kultur 2000," 〈http://europa.eu.int/scadplus/leg/de/lvb/129006.htm〉.

182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업별 우선순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Kyriakos Kouveliotis, "The Impact of EU's Cultural Activities on Establishing a European Identity", *Paper Outline for the Group Theme: Governance and Citixenship in the European Union: The Influence of Culture*, Athens, Greece, 2004.

2. '문화협력을 향한 통로(G2CC)' 프로젝트

'문화협력을 향한 통로(Gateway to Cultural Cooperation: G2CC)'는 유럽의 횡국경적이고 초국가적인 문화협력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분석하고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럽연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비교문화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Comparative Cultural Research), 유럽문화재단(The European Cultural Foundation), 피츠카랄도재단(Fondazionne Fitzcarraldo), 그리고 온더무브협회(On the Move Association) 등이 공동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진행하고 있다. 이들 파트너들은 유럽문화재단의 주도로 예술가와 문화경영자(OTM)들의 이동성을 증가시키는데 유효한 기존 자원들을 분석하고 유럽 문화협력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행하고 있다.

'문화협력을 향한 통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유럽비교문화연구소가 수행하는 주요 활동으로는 1) 유럽 문화협력의 개념 틀을 개발하고 이를 문화경영자와 기타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조작하고 접근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하며, 2) 유럽 문화협력의 연구 자료들을 확인하고 유행양식과 권고안들을 포함한 주요 연구결과들을 분석하며, 3) 유럽 문화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국가들의 문화정책들을 분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소는 성평등을 달성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피라미드 혹은 기둥들(Pyramid or Pillars)'과 '문화통로(Culture-Gates)'와 같은 연구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영화와 서적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문화비즈니스(Culture-Biz)' 프로젝트 역시 2005년 기간까지 추진되고 있다.[183]

특히 문화 분야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유럽연합

183 "Diversity through Equality in European Cultural Labour Markets," 〈http://www.culturegates.info/cg/s-cg.php〉.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새로운 유럽에 'gender mainstreaming' 개념에 기초한 정치적 담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동등한 기회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유럽연합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입각해 이사회는 초국가적 협력과 투명성을 촉진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성차별과 관련된 쟁점을 이해하는 것을 촉진하려는 성평등에 대한 FF새로운 프로그램(2001~2005)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개입은 노동시장에서의 성격차의 축소,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촉진,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에 대한 투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은 핵심적인 정책결정 지위를 보유한 조직 내의 이른바 'gate-keeper'[184] 이들 'gate-keeper'들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들은 상징적 가치와 의미의 생산과 배분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3.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

유럽문화수도는 1985년에 제정된 '유럽 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 프로그램을 계승한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

[184] Danielle Cliche & Andreas Wiesand, "xposing and Opening Gates··· Introduction and Recommendations" (Bonn: ERICarts Institute, 2004), pp. 20-24.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독일의 경우 남성 예술가들의 2004년 평균 수입이 12,447 유로인데 비해 여성 예술가들은 겨우 9,331 유로에 불과했다. 고위직을 맡고 있는 비율 역시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낮었는데 이는 특히 박물관, 극장, 오케스트라 분야에서 더욱 뚜렷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예술영역에서 명성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경력을 쌓는 데 성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nnegret Künzel, "eschlechtsspezifische Aspekte von Kunst-und Kulturförder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9/ 2004), pp. 34-38; Brinkmann, *Culture-Gates in Music and New Media Arts in Germany*, pp. 222-224.

를 통해 유럽 도시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풍부함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된다. 매년 번갈아 가며 선정되는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은 선정된 도시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고 각종 행사를 통해 유럽연합 시민들의 문화적 참여를 고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생활의 중심에 문화를 위치하게 함으로써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 사회통합에도 쇄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선정 도시가 유럽의 규모나 중요성에 걸 맞는 각종 행사와 활동을 개최하고 이에 모든 회원국들이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유럽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 및 유럽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특징들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의 문화협력을 촉진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185]

1999년의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결정(Decision 1419/1999)에 따라 2005년부터 유럽 문화수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고 있다. 행사가 시작되기 4년 전에 순번국은 추천서를 포함한 후보도시제안서[186]를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와 지역위원회(the Committee of the Regions)에 제출하면 집행위원회는 심사위원회를 결성한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후보도시 보고서를 받은 지 3개월 내에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유럽의회 제안서를 고려해 작성된 집행위원회의 권고안과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해 각료이사회는 해당 년도의 문화수도를 지명한다.[187]

2005년 유럽 문화수도로는 아일랜드에 있는 작은 항구도시인 코크(Cork)가 선정되어 현재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다.[188] 구체

---

185 "ulturhauptstadt Europas," 〈http://europa.eu.int/scadplus/leg/de/lvb/129005.htm〉.

186 후보도시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조약 151조(이전의 128조)의 목표와 활동에 부합하는 문화협력에 입각한 유럽 차원의 문화 프로젝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다른 유럽 도시들과 연합하여 조직될 수 있다. "Kulturhauptstadt Europas," 〈http://europa.eu.int/scadplus/leg/de/lvb/129005.htm〉.

187 *Ibid.*

188 2006년은 그리스의 파트라스(Patras), 2007년은 룩셈부르크(Luxembourg)

적으로 각종 음악제, 문학제, 영화제 및 스포츠 행사가 무려 4000여 개 이상이 개최됨으로써 유럽 문화의 다양성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에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한 중동부유럽과 지중해의 10개 회원국에서 시인들이 방문하여 각기 그들의 시를 낭독하는 등 문화수도 행사에 유럽연합 내의 다양한 국가에서 참석함으로써 역내 문화교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189]

4. 뉴미디어 분야에서의 문화정책

최근 들어와 유럽연합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개인과 집단 간의 보다 확대된 대화와 교류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 위에서 문화재와 문화서비스의 평등한 분배를 도모하는 것은 유럽연합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수준에서도 사회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플러스 프로그램(the Media Plus Programme: 2001~2006)이나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6차 기초 프로그램(the Six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2002~2006)은 그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190]

전문가들을 훈련시키고 생산프로젝트와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영화상품과 시청각 프로그램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들 사업들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낙후된 유럽의 정보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장기적 계획의 일환으로

와 루마니아의 시뷰(Sibiu), 2008년은 영국의 리버풀(Liverpool)과 노르웨이의 스타벤저(Stavanger)가 선정되었다.

189 〈http://www.cork2005.ie.home/default.asp〉.

190 유럽연합의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http://europa.eu.int/comm/avpolicy/media/index_en.html〉 참조.

추진되고 있다. 회원국 미디어산업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유럽 미디어 산업의 구조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은 기간별로 주안점을 달리하여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 I 프로그램은 유럽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균형과 유럽 미디어 지역의 창출을 목표로 했고, 미디어 II 프로그램은 미디어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프로젝트 개발 지원 등을 주로 행했다. 이에 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 플러스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관련 회사들에 대한 지원과 미디어제품의 유럽 내 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이용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2000년 3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연합 특별정상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유럽연합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역동적인 경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보화 사회의 건설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학교의 인터넷망 연결을 완료하고 정보기술 교육을 강화하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미디어 플러스 프로그램에 4억 5천 3백만 유로, 훈련 부문에 6천만 유로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결과 지식정보에 기반한 사회의 재구조화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된다.[191]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애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유럽연합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이해를 조율하고 개별 회원국들도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복잡한 유럽연합 내의 구조와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192]

---

[191] Media Consulting Group, "id-term Evaluation of the Media Plus and Media Training Programmes," 〈http://www.europa.eu.int/comm/avpolicy/media/results/mediaexe_en.pdf〉.

[192] 이는 지식정보에 기반한 기술혁신이 단지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인력을 육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경제 및 사회적 제도와 관행, 정책들을 이에 부합되게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금융제도와 조세제도 등을 개편하고 노사관계와 교육제도 등을 지식정보사회에 맞게 개편하는 일은 유럽 국가들, 특히 분배의

이러한 정보화의 촉진은 문화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문화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들의 다양해진 문화적 욕구를 공동의 문화정책 틀 속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과제를 출현시켰다.

형평성과 사회연대를 중시하고 정부가 사회정책을 주도하는 전통이 강한 일부 대륙 유럽 국가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 여겨진다.

VI

결 론

다양한 행위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전 지구적 규모에서 상호연결성을 확장·심화시키는 현상인 세계화는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계 및 습속의 다변화된 흐름을 형성하면서 다문화주의 혹은 문화적 세계주의를 부각시키는 한편 지역별 혹은 국가별로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공동체가 초지역적·지구적·국가내적 차원에서 이들 변동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접속 코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공동체는 문화적으로 동질적이고 단일한 구성원들만의 집단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에 기반하며, 그 구성원들을 하나의 체제 속에 통합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평가된다.

최근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바람직하며 적실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유럽 문화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유럽통합이 심화되고 확대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개별 국가들 사이에 공존하는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인식하고 하나의 문화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은 물론 유럽연합이라는 정치·경제적 지역공동체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들어와 문화정책의 목표와 영역, 방식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해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문화 관련 사업을 '문화 2000'과 '문화협력을 향한 통로', 유럽 문화수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문화적 교류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해서는 문화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연속성과 차별성, 그리고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살펴보았다. 전후에 문화권을 기본법에 명시하고 이에 근거해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서 '문화국가'라고도 불리는 독일에 대해서는 독일 사회의 변동의 맥락에서 문화정책의 단절과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본 연구가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문화정책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별 국가적 차원의 문화정책들이 유럽적 차원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가, 그 결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화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프랑스는 문화정책에 대해 시장적 요소를 강조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이나 혈통을 강조했던 독일 등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 왔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정책의 주요 특성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정책의 기본틀에 있어서 프랑스는 이전까지의 제국적 문화정책에서 국제적 문화정책으로의 변환을 모색해왔다. 둘째, 민관협력모델에 기초한 문화정책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1970년대부터 사회당에 의해 표방되었고, 미테랑의 측근을 형성했던 68세대의 문화 민주주의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셋째, 자국어의 보호와 보급을 위한 문화정책을 추진했다. 넷째,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자국의 통상이익에 철저히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적 문화정체성을 유럽적 문화정체성으로 승화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문화적 침투에 맞서서 유럽연합이라는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국제적 문화정책을 통해 이국적 문화요소들에 대해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프랑스 중심적으로 혼성해냄으로써 프랑스문화의 내부구성을 다양화하고 대외적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프랑스의 문화정체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이국적 문화요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두터운 자국 문화보호정책을 실시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통합을 주도해나가는 국가인 독일은 문화정책이 민주주의에 입각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독일의 문화정책이 광의의 문화 개념에 입각해 모든 사람이 자신

의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문화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독일의 문화정책이 기반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라면 '협력적 문화연방주의'는 독일의 문화정책 구조와 메커니즘을 틀 지우는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전통과 조화를 위해 연방은 명확히 정의되고 한정적인 권한만을 소지하고, 주정부 간에는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문화정책을 조정하며, 주정부는 분권화원칙에 따라 관련 업무 대부분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있다. 독일에서 국가가 자유로운 개인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되 그것이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한 것은 과거 나치독일 시절의 일원적인 문화통제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배분이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 문화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경제 및 입지요소로서의 문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질적 문화를 지닌 지역과 국가로부터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거주하게 되면서 서로 이질적인 문화 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독일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독일의 문화정책이 직면한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적 차원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경제통합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그 결과 '시민들의 유럽' 개념이 채택되고 공통 문화영역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에서 공동체에 문화 분야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공동체 수준에서의 문화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이 조문의 내용은 유럽 문화정책이 다양성 속의 단일성과 보충성원칙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정책의 제도화에 입각해 유럽연합은 '문화 2000'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문화정책은 문화 영역에

서 '유럽의 유럽화를 통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유럽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상상과 사회적 구성의 필요성을 지닌 프로젝트로서의 유럽통합은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이라는 공간의 안팎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유럽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유럽연합 역시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그들이 속한 국가적 차원을 벗어나 점차 유럽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상상하며 행동하는 것을 촉진시킴으로 다문화적인 사회 구성을 지닌 일종의 '상상의 공간'으로 재발견되며 재발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사회구성이 요구되는 '상상의 공간'으로서의 유럽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은 회원국들과의 갈등을 조절하는데 있어 일정한 한계가 표출되고 있다. 애초 유럽통합은 경제통합으로 시작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어 왔다. 다른 영역에 비해 경제통합의 수준이 가장 앞선 데서 정책결정자들에게 단일시장이라는 경제논리는 다른 논리보다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는 경제정책과 다양성에 근거한 문화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해 있으며 이로 인한 정책 갈등의 소지 역시 크다. 이는 유럽연합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 문화, 정체성 등에 대한 명확한 공동의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정체성 간에는 공존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일방적인 억제가 행해지는가, 정체성은 다문화주의에 기초하는가, 아니면 민족중심주의에 기초하는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동유럽과 지중해 지역으로의 유럽연합의 확대는 정체성의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정책을 포함해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은 횡적으로 분산되다보니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의 강도는

자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 차원과 각 국민국가 차원의 정책 수행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자 도입한 보충성 원칙 역시 모호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보충성원칙이 유럽적 수준에서 집행되는 정책이 단지 기존 국가 정책을 보충한다고 할 때 그 경계가 어딘지가 불명확하며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유럽연합이 확대되어 갈수록 더욱 중대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정책사례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첫째, 국제적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의미하는 스파게티모델과 국가 간 협력을 의미하는 샐러드모델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국가를 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합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장 모네의 말처럼 시민적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접촉의 증대에 따라 빈발하는 갈등과 증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국제적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는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를 구별하고 이러한 개념적 차이에 기초한 섬세한 전략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전자가 유산의 총량, 과거의 경험 등에 주목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유산의 활용, 미래의 약속에 주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산을 존중하되 제국적 질서에 함몰되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동북아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고병익 외.『문화전통과 사회발전』. 서울: 미원문화재단, 1991.

김명섭.『대서양문명사: 팽창, 침탈, 헤게모니』. 서울: 한길사, 2001.

_____·이연호·이동윤.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4.

김문환.『문화경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_____.『미래를 사는 문화정책』. 서울: 나남출판, 1996.

_____ 외.『19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물신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꾸르네, 베르나르, 홍순호 역.『프랑스의 행정』. 서울: 탐구당, 1984.

브르디외, 피에르, 최종철 역.『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1995.

블랑팽, 마르크·장 폴 쿠슈, 송재영 역.『프랑스: 문화와 예술』. 서울: 새길, 1994.

사이드, 에드워드, 김성곤·정정호 역.『문화와 제국주의』. 서울: 창, 1995.

세퍼, 폴.『各國의 文化政策: 캐나다』. 서울: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79.

예술행정연구회.『예술과 행정』. 제1호. 서울: 평민사, 1988.

윤재근.『문화전쟁』. 서울: 둥지, 1996.

지라르, 오귀스탱.『各國의 文化政策: 프랑스』. 서울: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79.

퍼어슨, 반.『문화의 전략』. 서울: 법문사, 1981.

포샤, 마리-프랑스, 허준 역.『크리스찬 디오르』. 서울: 명진출판, 199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정책』.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서울: 나남출판, 2000.
Achille, Yves & Jacques Ibanez Bueno. *Les télévision publiques en quête d'avenir*. Grenoble: PUG, 1994.
Adorno, Theordor. *Minama Moralia. Reflexionen aus dem Beschädigten Leben*. Frankfurt/M: Suhrkamp, 2003.
_____ & Horkheimer Max. *Dialektik der Aufklärung*. Frankfurt/M: Suhrkamp, 2003.
AFAA. *Mode d'emploi*. Paris: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2001.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2002.
Ardagh, John. *France Today*. London: Penguin Books, 1995.
Beurier, Pervenche. *Les Politiques Européennes De Soutien Au Cinéma– Vers La Création d'un Espace Cinématographique Européen?*. Paris: L'Harmattan, 2004.
Bloed, Arie. ed.. *From Helsinki to Vienna : Basic Documents of the Helsinki Process*. Utrecht : Norwell, 1990.
Bourdieu, Pierre. *La Noblesse d'Etat: Grandes écoles et esprit de corps*. Paris: FNSP, 1991.
_____.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역, 서울: 새물결, 1995.
Brebisson, Guy de.. *Données sur le Mécénat d'Entreprise en France en 1985*.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Service des Etudes et Recherches, 1986.
Breidenbach, Jonna & Zukrigl Ina. 인성기 역. 『춤추는 문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다원화』. 서울: 영림카디널, 1998.
Brinkmann, Annette. *Culture–Gates in Music and New Media*

Arts in Germany. Bonn: ERICarts Institute, 2004.

Buffet, Françoise. *Education et Culture en Europe – Le Role Du Partenariat*. Paris : L'Harmattan, 2003.

Burns, Rob. *German Cultural Stud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Bury, Pol. *L'Art* à *bicyclette et la révolution* à *cheval*. Paris: Gallimard, 1972.

Cabanne, Pierre. *Le pouvoir culturel sous la Ve République*. Paris: Olivier Orban, 1981.

Clément, Catherine. *Rêver Chacun pour l'Autre*. Paris: Fayard, 1982.

Cliche, Danielle & Andreas Wiesand. *Exposing and Opening Gates ··· Introduction and Recommendations*. Bonn: ERICarts Institute, 2004.

Counseil De L'Europe. *Patrimoine Culturel Européen(Volume I) – Coopération Intergouvernementale : Recueil De Textes*. France : Counseil De L'Europe, 2003.

Digne, Jean. *Présence artistique de la France* à *l'étranger*. Waresquiel, 2001.

DGRCST(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Ministère des relations extérieures. *Le Projet culturel extérieur de la Franc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84.

_____. *Une politique pour le françai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6.

Dubouis, Louis. *L'Union europ'eenne*. Paris: La Documentation francaise, 2004.

During, Simon(ed.). *The Cultural Studies Reader*. Routledge,

2003.

Elias, Norbert. 박미애 역. 『문명화과정 I』. 서울: 한길사, 1997.

European Commission. *A Community of Cultures. The European Union and the Arts*. Brussels: Directorate-General for Press and Communication Publications, 2001.

Fachard, Sabine · Board · Catherine · Lebbar Brigitte · Le Guay Beatrice. *Architectures capitales: Paris 1979-1989*. Paris: Moniteur, 1992.

François et Xavier Dupin Rouet, *Le Soutien aux Industries culturelles en Europe et au Canada*.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1.

Fumaroli, Marc. *L'Etat culturel: Essai sur une religion moderne*. Paris: Fallois, 1992.

Gilcher-Holtey, Ingrid. *Die 68er Bewegung. Deutschland· Westeuropa· USA*. München: Verlag C.H.Beck, 2001.

Girard, Augustin et Gentil, Genevive (eds.). *Les affaires culturelles au temps d'André Malraux, 1959-1969*.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6.

Giordan, Henri. *Démocratie culturelle et Droit* à *la Différence*. Paris: La Documentation franaise, 1982.

Glaeßner, Gert-Joachim. *Demokratie und Politik in Deutschland*. Opladen: Leske+Budrich, 1999.

Glaser, Hermann. *Die Kultur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nd III: Zwischen Protest und Anpassung* 1968-1989. Frankfurt/M: Suhrkamp, 1990.

Gräßle, Inge. 신창섭 역. 『유럽의 문화채널 아르테 TV』. 서울: 한울, 1996.

Haberer, Monika. *Die neuen Medien als Herausforderung für die*

auswärtige Kulturpolitik. Magisterarbeit im Fach Französische Kulturwissenschaft und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der Universität des Saarlandes, 2000.

Hacke, Christian. *Die Auss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eltmacht wider Willen?*. Frankfurt/M: Ullstein, 1997.

Harrison, Lawrence·Huntington, Samuel P..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2000.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Lien culturels et intégration, rapport au Premier minist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5.

Haut Conseil de la Francophonie. *Etat de la Francophonie dans le mond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7.

Heckel, Erna·Ulle, Dieter. *Kultur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von 1949 bis zur Gegenwart*. Köln: Pahl-Rugenstein, 1987.

Heinrichs, Werner. *Kulturpolitik und Kulturfinanzierung*. München: C.H.Beck, 1997.

Hudson, Valerie M. eds. *Culture & Foreign Policy*. London : Lynne Rienner Publishers, 1997.

Hunter, M. *Les jours les plus Lang*. Paris: Odile Jacob, 1990.

Inglehart, Ronald.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Jäger, Manfred. *Kultur und Politik in der DDR. 1945-1990.* Köln: dition Deutschland Archiv, 1994.

Joll, James. *Three Intellectuals in Politics*. New York: Harper Row, 1960.

Julliard, Jacques et Winock, Michel. *Dictionnaire des intellectuels*

français. Paris: Seuil, 1996.

Kaase, Max·Günther Schmid (Hg.). *Eine lernende Demokratie. 50 Jahr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Edition Sigma, 1999.

Kastoryano, Riva. *Negotiating Identities. States and Immigrants in France and Germa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Lacouture, Jean. *André Malraux: Une vie dans le siècle*. Paris: Seuil, 1973.

Langenbucher, Wolfgang R., Rytlewski, Ralf·Weyergraf, Bernd (Hg.). *Kulturpolitisches Wörterbuch: Bundesrepublik Deutschland/DDR im Vergleich*. Stuttgart: J. B. Metzler, 1983.

Lawn, Martin and Novoa, Antonio. *L'Europe Réinventée—Regards Critiques Sur L'espace Européen de L'education*. Paris : L'Harmattan. 2005.

L'Etat et les Galeries d'Art, *Canal*. 1984

Looseley, David L.. *The Politics of Fun: Cultural Policy and Debate in Contemporary France*. Oxford: Berg Publishers, 1995.

Marchetti, Pascal.. *La Production d'oeuvres audiovisuelles dans L'Union européenne*. Paris: Economica, 1997.

Massot, Jean. *Chef de l'Etat et chef du Gouvernement*.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3.

Mattelart, Amand. *Diversité Culturelle et Mondialisation*. France: La Découverte, 2005.

Mazrui, A.. *Cultural Forces in World Politics*. London: James Currey, 1990.

McNeill, Donald. *New Europe: Imagined Spaces*. London: Arnold, 2004.

Meyer, John W.. Weltkultur. *Wie die westlichen Prinzipien die Welt durchdringen*. Frankfurt/M: Suhrkamp, 2005.

Mitchell, J. M..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London: Allen & Unwin, 1986.

Mitterand, François. *Réflexions sur la politique extérieure de la France*. Paris: Fayard, 1986.

Moinot, P. ed.. *Pour une réforme de l'Audiovisuel*.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81.

Müller, Harald.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 Ein Gegenentwurf zu Huntington*. München: Fischer, 1999.

Naima, Prevolts. *Dance For Export – Cultural Diplomacy and the Cold War*. Connecticut :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1.

Niess, Frank. *Die europäische Idee: Aus dem Geist des Widerstands*. Frankfurt/M: Suhrkamp, 2001.

Orientations budgétaires du Ministres de la Culture pour 1982. *Supplément* à *la lettre mensuelle d'information*. Paris: Ministre de la Culture, 1982.

Ory, Pascal. *L'entre-deux mai*. Paris: Seuil, 1983.

Pascal, Blaise. *Pensée*, 1670.

Perret, Jacques et de Guy Saez.. *Institutions et vie culturelle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6.

Pieterse, Jan Nederveen. *Globalization and Culture*. Oxford: Rowman & Littlefield, 2004.

Poirrier, Philippe. *Les Politiques Culturelles en France*.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2.

Puaux, Paul. *Les Etablissements Culturel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82.
Regourd, Serge. *De L'exeception à la Diversité Culturelle*.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4.
Rieger, Elmar. *Kultur versus Globalisierung*. Frankfurt/M: Suhrkamp, 2004.
Rigaud, Jacques. *La culture pour vivre*. Paris: Gallimard, 1975.
_____. *L'Exception culturelle: Culture et pouvoirs sous la Ve Republque*. Paris: Grasset, 1995.
_____. *Politique Culturelle Extérieure*. Waresquiel, 2001.
Rittberger, Volker. *German Foreign Policy since Unification. Theories and Case Studi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Roche, François et Bernard Pigniau. *Histoire de diplomatie culturelle des origines à 1995*.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5.
Röhrich, Wilfried, *Die verspätete Demokratie. Zur politischen Kultu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öln & Zürich: Eugen Diederichs Verlag. 1983.
Rouet, François et Xavier Dupin. *Le Soutien aux Industries culturelles en Europe et au Canada*.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1.
Saussure. Ferdinand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86.
Said, Edward. 박홍규 역.『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1991.
_____. 김성곤·장정호 역.『문화와 제국주의』. 서울: 창, 1995.
Schulte, Karl-Sebastian. *Auswärtige Kulturpolitik im politischen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VWF Verlag für Wissenschaft und Forschung, 2002.

Seibt, Ferdinand. *Die Begründung Europas*. München: Fischer, 2004.

Sontheimer, Kurt. *Deutschlands politische Kultur*. München: Piper, 1990.

Swingewood, Alan. 박형신·김민규 역. 『문화사회학이론을 향하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Thurn, Hans Peter. *Kultur im Widerspruch: Analysen und Perspektiven*. Opladen: Leske+Budrich, 2001.

Tomlinson, John. 강대인 역. 『문화 제국주의』. 서울: 나남출판, 1994.

_____. 김승현·정영희 역. 『세계화와 문화』. 서울: 나남출판, 2004.

Toula-Breysse, Jean-Luc.. *Culture du monde en France*. Paris: Plume, 1999.

Tzvetan, Todorov. *La Conquete de l'amerique : la question de l'autre*. Paris : Seuil, 1982.

Vaniscotte, Francine · Houguenague, Aude · West Anne. *La Mobilité Etudiante en Europe, Mythe Ou Réalité? - Comparaison France -Royaume-Uni*. Paris: L'Harmattan, 2003.

Wachtel, David. *Cultural Policy and Socialist France*. New York: Greenwood Press, 1987.

Waresquiel, Emmanuel de. *Dictionna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Paris: Larousse, 2001.

Warnier, Jean-Pierre. *La Mondialisation De La Culture, 3rd.*. France : La Découverte, 2004.

Williams, Raymond. *The Sociology of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Zemans, Joyce and Kleingartner, Archie, eds. *Comparing Cultural*

Policy – A Study of Japan & The United States. Walnut Creek and Lonon : Altamira Press. 1999.

Znined-Brand, Victoria. *Deutsche und französische auswärtige Kulturpolitik: Eine vergleichende Analyse*. Berlin: Peter Lang, 1998.

2. 논 문

김경동 외. "집중기획 1: 한국의 문화경쟁력."『Win』. 10월. 1996.

김경욱.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문화경제연구』. 제6권 2호. 2003.

김명섭. "프랑스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문화정책논총』. 제11집 1999.

_____. "한국문화외교의 개선방안." 유재건 편.『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공저. 서울: 나남출판, 1999.

_____. "프랑스의 문화외교: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1981-1995)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37집 2호. 2002.

_____. "동아시아냉전질서의 탄생: '극동'의 부정과 '대동아'의 온존." 백영서 외.『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5.

김문환. "독일 문화정책과 세계 문화발전."『계간사상』. 제96호 봄호, 2002.

김이섭. "유럽의 통합과 문화정책에 관한 고찰" .『유럽연구』. Vol. 20, 2004.

김완순. "2000년 라운드(밀레니엄 라운드) 서비스협상과 스크린쿼터제." 원용진·유지나·심광현 편저.『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서울: 문화과학사, 1999.

김형길. "프랑스 플레이야드 학파의 국어운동."『불어학연구』. 11월,

호. 1997.
김형만.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김화영. “프랑스 도서출판 및 도서관 정책의 한국적 적용.” 『文化藝術論叢』. 제4집, 1992.
데코, 알랭. “프랑스어 문화권의 쟁점들.” 원윤수 편. 『프랑스어 문화권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박종수.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과 방송정책의 문제.” 『한국언론학회보』. Vol. 26, 1991.
백승길. “미술사와 문화재 : 유럽의 문화재정책.” 『미술사학』. Vol. 3, 1989.
서정철. “프랑스의 민족적 배경과 국민의 정신적 특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편. 『세계인의 의식구조I: 미주-서구-동구지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7.
송기형.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유럽연구』. Vol. 8, 1998.
양미을. “프랑스의 대외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주한 프랑스 문화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병혁·최종철·김무경·송도영. “지구화와 프랑스 문화사업의 대응: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8집, 1996.
이복남. “문화유럽 건설과 EU 문화정책: ‘문화2000’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U연구』. 제11호, 2004.
이은해. “문화적 시민권을 위한 유럽연합의 협력.”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 편.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I』. 서울: 높이깊이, 2004.
_____. “유럽통합 전후에 나타나는 스페인 카탈루냐(Cataluna) 지방의 언어문화정책.” 『유럽연구』. Vol. 20, 2004.
21세기 평화재단.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평화포럼21. 통권 제2호, 2005.

진시원. “유럽의 정체성: 내외적 동인과 사회 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유럽기초학문분과위원회 편. 『유럽 질서의 이해: 구조적 변화와 지속』.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3.

한상진. “외규장각 도서문제와 한불협상 보고.” 외규장각 도서문제 공개토론회(11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자료집, 2000.

허 권. “예술진흥을 위한 기업의 협력: 세계적 동향.” 예술행정연구회 편. 『예술과 행정』 제1호, 서울: 평민사. 1988.

홍익표. “배제로의 수렴? 유럽의 인권정책과 이주민문제.” 『국제지역연구』. 제9권 2호, 2005.

Acharya, Amitav · Rajah Ananda. “Introduction: Reconceptualizing Southeast Asia.”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7, No. 1, 1999.

Andrault, M. · Dressayre, P. “Government and the arts in France.” in Cummings et al.(ed.), *The Patron State: Government and the Arts in Europe, North America and Jap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Barthel, Eckhardt. “Europäische Kulturpolitik ist Integrationspolitik: Europa auf dem Weg vom Wirtschaftsraum zum Kulturraum.” *Berliner Stimme. Ausgabe* No. 11. 22, Mai 2004.

Clement, Jérome. “ARTE, enfin l'Europe.” *Le Monde*, Sep. 1992.

Danan, Martine. “French Cinema in the Era of Media Capitalism.” *Media, Culture & Society*. No.22, May 2000.

Decaux, Allain. “프랑스어 문화권의 쟁점들.” 원윤수 편. 『프랑스어 문화권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Demirok, Gürsel. “How Could the Relations Between Turkey and the European Union be Improved?”. *BASLERSCHRIFTEN*

zur europäischen Integration No.56. EUROPAINSTITUT der Universität Basel, 2001.

Deutscher Kulturrat. "Positionspapier: Kulturelle und kulturpolitische Herausforderung der europäischen Erweiterung." 〈http://www.kulturrat.de/aktuell/Stellung-nahmen/Erweiterung.htm〉

Deveze, Laurent. "Alliance française." Emmanuel de Waresquiel ed.. *Dictionna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de la France depuis 1959*. Paris: CNRS / Larousse, 2001.

Dickstein, Morris. "After the Cold War: Culture as Politics. Politics as Culture." *Social Research*. No.60, Fall 1993.

Dumur, Guy. "Un utopiste du possible." *Le Nouvel Observateur*. 4, Mar 1978.

Düwell, Kurt. "Deutschlands auswärtige Kulturpolitik 1918-1932." *Grundlinien und Dokumente*. Köln & Wien: Böhlau Verlag, 1976.

Elteren, Mel. van. "GATT and Beyond: World Trade, the Arts and American Popular Culture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American Culture*, 19, Fall 1996.

Emanuel, Susan. "Culture in Space: The European Cultural Channel." *Media, Culture & Society*, No.14, 1992.

Forbes, Jill. "Cultural Policy: The Soul of Man under Socialism." *Sonia Mazey and Michael Newman, eds. Mitterrand's France*. London: Croom Helm, 1987.

Forrest, Alan. "Cultural Policy." Desmond Dinan (ed.). *Encyclopedia of the European Union*. Boulder: Lynne Rienner, 2000.

Griese, Olivia. "Schwerpunkte auswärtiger Kulturpolitik von

Bundesrepublik und DDR." 〈http://www.lrz-muenchen.de/~oeihist/f_griese.htm〉

Guyaz, Jacques. "Innovations dans le secteur des services: du militant à l'entrepreneur." in *Français. Qui êtes-vou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81.

Heinrichs, Werner. "Instrumente der Kulturförderung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9/2004.

Hirschler, Herbert. "Kultur ist mehr als ein weicher Standortfaktor!" *Kulturpolitische Mitteilungen*, Nr. 104, 2004.

Jaurès, Jean. "Pour la Laïque." in Jean-Louis Ferrier (ed.). *L'Esprit du Socialisme*. Paris: Gauthier, 1964.

Kancel, Serge. "De l'exception à la diversité culturelle." *La Politique culturelle française*. Paris: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2001.

Kim, Myongsob and Horace Jeffery Hodges. "On Huntington's Civilizational Paradigm: A Reappraisal." *Issues & Studies.* vol. 41, No. 2, June 2005.

Knoblich, Tobias J.. "Kunst-und Kulturförderung im föderativen System."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9/2004.

Kouveliotis, Kyriakos. "The Impact of EU's Cultural Activities on Establishing a European Identity." *Paper Outline for the Group Theme: Governance and Citixenship in the European Union: The Influence of Culture*. Athens, Greece, 2004.

Künzel, Annegret. "Geschlechtsspezifische Aspekte von Kunst- und Kulturförder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9/2004.

Lee, Ho-Yeong. "La construction de l'identité culturelle européenne: Autour du débat sur l'exception culturelle." Thèse pour le Docteur. Univ. Paris V-René Descartes, 2000.

Messerlin. "France and trade policy: is the 'French exception' passé?" *International Affairs*. No. 72, 1996.

Meunier, Sophie. "The French Exception." *Foreign Affairs*. No.79, Jul/Aug 2000.

Mulcahy, Kevin V..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Sovereignty: U.S.-Canadian Cultural Relations."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No. 31 Winter 2002.

Norindr, Panivong. "La Plus Grande France: French Cultural Identity and Nation-Building under Mitterand." Steven Ungar and Tom Conley eds. *Identity Papers: Scenes of Contested Nationhood in 20th Century Fra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_____. "Popularizing French Culture: The Bibliothèque de France." *Journal of the Twentieth-Century/Contemporary French Studies*. No. 1, Spring 2001.

Nye, Jr. Joseph S.. "Soft Power." *Foreign Policy*. No. 80, Fall 1990.

Renan, Ernest. "Qu'est-ce qu'une nation?" *Oeuvres complètes*. vol. 1. Paris: Calman-Lévy, 1947.

Rigaud, Jacques. "Les Relations culturelles extérieures." *rapport a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79.

Scheytt, Oliver & Michael Zimmermann. "Kultur für alle bleibt die

Leitidee." *Politik und Kultur*. Mai–Juni 2005.
Schlesinger, Philip. "From Cultural Defence to Political Culture: Media, Politics and Collective Identity in the European Union." *Media, Culture & Society*. 19, July 1997.
Schwenke, Olaf. "Europa fördert Kultu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9/2004.
Sereni, Frank. "La 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1925–1950." *Relations Internationales*. hiver 1992.
Sievers, Norbert & Bernd Wagner. "Deutschland", *Council of Europe/ERICarts*. Cultural Policies in Europe: A Compendium of Basic Facts and Trends, 2002.
Shore, Cris. "Inventing the Peoples Europe Critical Approaches to European Community Cultural Policy." *Man, New Series*, Vol. 24, No. 4, Dec 2003.
Urfalino, Philippe. "Quelles missions pour le ministère de la Culture?" *Esprit*. Janvier 1997.
"What Future for European Cultural Policy? Summary of Debates." *Seminar Jointly Organised by Friend of Europe and Eurocinema*. Paris. Centre des Conférences Internationales Kléber. 12. February 2002.

3. 기타 자료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Auswärtiges Amt. "Auswärtige Kulturpolitik." 〈http://www.auswaertiges-amt.de/www/de/aussenpolitik/kulturpolitik.htm〉.

"Diversity through Equality in European Cultural Labour Markets." 〈http://www.culturegates.info/cg/s-cg.php〉.

"Decision No 792/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establishing a Community Action Programme to Promote Bodies Active at European Level in the Field of Culture." 〈http://europa.eu.int/eur_lex/pri/en/oj/dat/2004/l_13820040430en00400049.pdf〉.

Grand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Larousse 6. Paris: Larousse.

"Kulturhauptstadt Europas." 〈http://europa.eu.int/scadplus/leg/de/lvb/129005.htm〉.

Le Monde.

Media Consulting Group. "Mid-term Evaluation of the Media Plus and Media Training Programmes," 〈http://www.europa.eu.int/comm/avpolicy/media/results/mediaexe_en.pdf〉.

"Programm Kultur 2000." 〈http://europa.eu.int/scadplus/leg/de/lvb/129006.htm〉.

"Sonstige Programme mit Auswirkungen auf den kulturellen Bereich. 〈http://europa.eu.int/scadplus/leg/de/lvb/129008.htm〉.

"The Unseen Treaty: Treaty on European Union Maastricht 1992" 〈http://europa.eu.int〉.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http://europa.eu.int/constitution/download/part_1_EN.pdf〉.

"Vertrag von Amsterdam." 〈http://europa.eu.int/eur-lex/de/treaties/dat/ amsterdam.html〉.

"Vertrag von Nizza". 〈http://europa-eu-int/eur-lex/de/treaties/dat/nice-treaty- de.pdf〉.

Wagner, Bernd. "Kultur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ttp://themen.miz.org/musikfoerderung/wagner_print.php〉.
〈http://europa.eu.int〉.

부록 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프랑스어판 및 영어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번역판, 그리고 한국문화다양성포럼이 제공한 초안 번역판 등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전 문

2005년 10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함) 제33차 총회는

1.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하고,
2.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3. 문화다양성은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며, 그러므로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임을 인식하고,
4.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5.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적으로 승인된 다른 문서에서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기리고,
6. 특히, 빈곤퇴치에 역점을 둔 『유엔새천년선언(2000)』을 고려하여, 국가 및 국제 개발 정책 뿐 아니라 국제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전략적 요소로서 문화를 통합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7.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8. 무형 및 물질적인 풍요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

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 그리고 그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 특히, 소멸과 심각한 훼손 가능성으로 문화적 표현이 위협 받는 곳에서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10. 일반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 특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력을 강조하며,
11. 문화다양성이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강화되고 문화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육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12. 사회 안에서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매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를 재확인하고,
13. 전통적 문화의 표현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들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남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하고,
14.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임을 상기하고,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교육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며,
15. 발전을 위하여 전통적 문화 표현을 자유롭게 창조, 보급, 배포하고, 그 문화적 표현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가 갖는 힘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16. 문화적 표현을 육성하고 새롭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 진보를 목적으로 문화의 발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을 강화해 주는 문화적 상호작용 및 창의성이 지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7. 문화적 창조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18.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며, 그러므로 단순한 상업

적 가치로 취급되지 않아야 함을 확인하며,

19.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을 주목하며,

20.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언어와 이미지에 의한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특정의 위임사항을 인식하고,

21. 문화다양성 및 문화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채택한 국제 규범, 특히 2001년『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2005년 10월 25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I. 목적과 지도원칙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나.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

다. 문화간 존중과 평화의 문화 추구를 목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간 대화 장려

라. 민족간 유대 형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화상호성 강화

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식을 드높이고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증진

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와 발전간 연관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연관성이 지닌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활동 지원

사.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에 대한 인정

아.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유지, 채택,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재확인

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강화

제2조 지도원칙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 및 표현, 정보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2. 주권의 원칙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존중 원칙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보호와 증진은 소수자와 토착민의 문화를 포

함한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의 인정과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4. 국제적 연대와 협력 원칙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초기단계에 있거나 확립되어 있는 문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수단을 마련하고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5. 발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 보완성 원칙

문화는 발전의 원천이므로 발전의 문화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만큼 중요하며, 개인과 국민들은 이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6.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의 풍요한 자산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 유지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복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요건이다.

7. 형평한 접근의 원칙

전 세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형평한 접근과 그 표현과 보급 수단에 대한 문화의 접근은 문화다양성을 진흥하고 상호이해를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8. 개방성과 균형의 원칙

협약국들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세계의 다른 문화들에 대한 개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며, 그러한 지원조치들이 이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들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II.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정책과 조치에 적용된다.

III. 정의

제4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2.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3. 문화적 표현

"문화적 표현"은 문화 콘텐츠를 지닌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4.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그 상업적 가치와 상관없이 그 당시 문화적 표현을 사용하고 목적으로 하며, 또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한다.

5. 문화산업

"문화산업"은 위 4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문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배포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문화정책과 조치

"문화 정책과 조치"는, 문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등의 분야에서 개인, 집단, 사회 등의 문화적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 관련된 정책과 조치를 말한다.

7. 보호

"보호"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존, 보호,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조치들의 채택을 의미한다.

"보호하다"는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8. 간문화성(interculturalité)

"간문화성(interculturalité)"은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문화 간의 형평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공유 가능성을 말한다.

IV. 협약국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권리 및 의무의 일반규칙

1. 협약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 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조치를 채택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협약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동 정책과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

1. 각 협약국은 제4조 6항에서 정한 문화정책과 조치의 틀 안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그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
   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당사국 영토 내의 모든 문화 활동, 서비스 및 상품 가운데 자국의 것이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
   다.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자국의 독립적 문화산업과 활동이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보급 및 배포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라. 공공 재정지원을 위한 조치

마. 비영리 조직 및 공공, 민간 기관, 그리고 예술가와 문화전문가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의 활동에 창의적이고 기업가적 정신을 고무하도록 장려하는 조치

바. 공공 기관의 설립,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

사. 예술가 및 그 밖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아. 공공 방송의 활용 등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1.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이 다음의 사항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소수자나 토착민 등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보급 및 배포와 그 활용을 위한 기회 제공

   나. 자국 영토 내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당사국은 예술가 및 그 밖의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문화적 공동체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중요한 기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그들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

1. 이 협약 제5조와 제6조를 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위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특수한 상황으로 정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위 1항에서 정한

상황에 놓인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취한 모든 조치들을 정부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유와 투명성

당사국은

가. 자국 영토 안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한다.

나.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정보공유를 책임지는 연락 포인트를 지정해야 한다.

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해야 한다.

제10조 교육과 공공의식

당사국은

가. 교육프로그램,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해야 한다.

나. 동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타 당사국 및 국제적, 지역적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교육,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창의성을 높이고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생산의 전통적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11조 시민사회의 참여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8조와 제17조에서 정한 상황을 유념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양자간, 지역적,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당사국간 문화정책과 조치에 대한 대화 촉진

나. 전문적,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문화분야 공공 기관의 공공 부문 전략 및 경영 능력의 강화

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강화 및 증진에 있어 시민단체, 비정부 기구, 민간부문 간의 파트너십 강화

라. 정보공유 및 문화적 이해를 드높이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신기술의 활용 촉진 및 파트너십의 권장

마. 공동 제작 및 공동 배급에 관한 협정의 체결 장려

제13조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모든 차원에서 문화를 자국의 발전정책에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기틀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측면을 장려한다.

제14조 발전을 위한 협력

당사국은, 특히 역동적 문화분야의 출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축을 위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강화
   가. 개발도상국의 문화 생산 및 배급 역량 형성과 강화
   나. 개발도상국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시장 및 국제적 배급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
   다. 적합한 지방 및 지역 시장 형성
   라.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선진국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진국의 적절한 조치 채택
   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국 예술가의 창조 작업과 이동성 증진을 위한 지원 제공
   바. 특히, 음악 및 영화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적절한 협력 장려
2. 전략과 경영 역량, 정책 개발과 시행, 문화적 표현의 배포 증진, 중소 · 영세기업 발전, 기술 활용, 기능 개발과 이전 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류와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3. 특히, 문화산업과 기업 분야에서 적절한 장려 조치를 통한 기술과 지식의 이전
4. 재정지원
   가. 제18조에 따른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의 설치
   나.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공적개발원조의 제공
   다. 저리대출, 보조금 및 기타 기금조성기제 등 그 외 형태의 재정지원

제15조 협력관계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부문 및 비영리 기구간의 파트너십 개발을 장려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파트너십은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인적자원 및 정책 등의 발전에 역점을 둔다.

제16조 개발도상국 우대

선진국은 적절한 제도적, 합법적 틀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뿐 아니라 예술가, 문화 전문가, 활동가 등에게 우선적대우를 허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제17조 문화적 표현의 심각한 위협 상황과 국제협력

당사국은 서로, 특히 제8조에서 정한 상황에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제18조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1.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이하, “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유네스코 재정 규칙에 따라 신탁기금을 구성한다.
3. 기금의 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가. 당사국에 의한 자발적 분담금
   나.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된 동 목적에 적합한 기금
   다. 국가, 유엔체제 내의 기구와 프로그램, 여타 지역 및 국제기구, 공공 및 민간단체, 또는 개인들에 의한 기부금, 증여 또는 유증

라. 기금의 재원으로부터의 이자
마. 모금 및 기금을 위하여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바. 기금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의 재원

4. 동 기금의 활용은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정부간 위원회가 결정한다.
5. 정부간 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일 경우, 특정한 사업에 대한 일반적, 구체적 목적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6. 동 기금의 기부금에는 이 협약의 목적과 배치되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다른 조건이 따를 수 없다.
7.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기부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9조 정보의 교류, 분석 및 배포

1.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및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범사례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통계에 있어서 정보 교류와 전문성 공유에 동의한다.
2. 유네스코는 사무국 내 기존 기제를 활용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 통계 및 모범사례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원활하게 한다.
3. 또한,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영역과 관련된 정부, 민간 및 비영리 기구 등 여러 부문에 대한 데이터 뱅크를 설치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한다.
4. 데이터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는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특별히 유념한다.
5. 동 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을 보완한다.

V. 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

1.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모든 조약 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 시키지 않으면서,
   가.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 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나.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2. 이 협약 상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여타 조약 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1조 국제적 협의와 협력

당사국은 다른 국제무대에서 이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면서 협의에 응한다.

VI. 협약의 기구

제22조 당사국 총회

1. 당사국 총회가 설치된다. 당사국 총회는 이 협약의 전체회의이며 최고 기구이다.
2. 당사국 총회는 가능한 한 유네스코 총회 중에 2년마다 정기회의로 개최된다.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거나 정부간 위원회에 당사

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도 있다.

3. 당사국 총회는 자체 절차규정을 채택 한다.
4. 당사국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 선출
   나. 정부간 위원회가 제출한 협약 당사국 보고서의 수령과 검토
   다. 당사국 총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간 위원회가 마련한 운영 지침의 승인
   라.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방법의 조치 강구

제23조 정부간 위원회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이하 "정부간 위원회"라 함)는 유네스코 내에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이 협약 발효 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18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정부간 위원회는 매년 개최된다.
3. 정부간 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권한과 지시 아래 운영되며,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책무를 진다.
4.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개에 이르는 경우 정부간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개로 증가한다.
5. 정부간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형평한 지리적 대표성과 순환제 원칙에 근거한다.
6. 이 협약에 의해 부과된 다른 책임을 해함이 없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약의 목적 추구 및 그 이행의 촉진과 감시
   나.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 총회의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 규정의 이행과 적용을 위한 운영지침의 마련

과 제출

다. 당사국 총회에 의견 및 요약본과 함께 당사국 보고서 제출

라. 이 협약의 관련 규정, 특히 제8조가 정한 바에 따라 당사국이 유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권고

마. 다른 국제무대에서 이 협약의 목적 및 원칙 증진을 위한협의 절차와 기제의 마련

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는 기타 모든 과제의 수행

7. 정부간 위원회는 그 절차규정에 따라 특정 사항에 관한 협의를 목적으로 언제든지 공공 및 민간 기구 혹은 개인들에게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8. 정부간 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위하여 자체 절차규정을 제출한다.

제24조 유네스코 사무국

1. 이 협약의 기구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유네스코 사무국은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 위원회의 문서 및 의사 일정을 준비하고 그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 보고한다.

VII. 최종조항

제25조 분쟁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교섭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
2. 분쟁 당사국들이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중개를 요청할수 있다.
3. 주선이나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교섭이나 주선, 중

개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이 협약 부속서의 규정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지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위원회의 제안을 성실히 고려한다.

4. 각 당사국은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시 위의 조정절차를 수락하지 않음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표명을 행한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고서를 통해 언제든지 그 표명을 철회할수 있다.

제26조 회원국의 비준, 수락, 승인이나 가입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승인되거나 가입되어야 한다.
2.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제27조 가입

1. 이 협약은 유네스코의 비회원국이지만 유네스코 총회가 가입을 초청한 유엔이나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 모두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유엔 총회 결의안 1514(XV)에 따라,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지만 유엔에 의해 승인된 완전한 내적 자치권을 가지며 조약 체결 능력을 비롯하여 이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진 영토 역시 이 협약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다음 규정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가. 어떤 지역경제통합기구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국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속된다.
   나. 동 기구의 회원국 하나 이상이 협약 당사국이 되었을 경우, 해당 기구와 회원국 또는 국가는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을 정한다. 이러한 책임배분은 (다)항에서 정한 통

고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해당 기구와 회원국은 협약 상의 권리를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위임 범위 내에서 회원국 중 이 협약의 당사국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동 기구의 회원국 중 하나라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동 기구는 그 투표권을 가질 수 없고,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 (나)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책임배분에 동의한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회원국 또는 국가는 다음과 같이 제안된 책임배분을 해당 당사국에게 알린다.

(1) 해당 기구는 가입문서에 협약에 대한 책임배분을 구체적으로 표명한다.

(2) 차후 책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구는 각 각의 책임에 대한 변경사항을 기탁소에 알리고, 기탁소는 그 변경사항을 당사국에 통보한다.

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은 동 기구에 대한 권한의 이전이 구체적으로 기탁소에 표명되거나 통보되지 않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지역경제통합기구”는 해당 지역의 주권국가, 유엔이나 유엔 전문기구의 회원국들이 구성한 기구로서,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약이 관장하는 사안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고, 그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자격을 갖는다.

4.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제28조 연락 포인트

협약의 당사국이 되면, 각 당사국은 제9조에서 정한 “연락 포인트”를 지정해야 한다.

제29조 발효

1.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로부터 3개월 후 동 일자 또는 그 이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만 발효한다. 그 외의 당사국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한다.
2. 동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어떤 문서도 동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부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제30조 연방제 또는 비단일적 헌법체제

국제 협정이 당사국의 헌법체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다음의 규정은연방제 또는 비단일적 헌법체제를 가진 이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그 실시가 연방 또는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그 실시가 연방의 헌법제도에 의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개별 단위 즉, 국가, 지방 또는 군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동 구성 단위 즉, 국가, 지방 또는 군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동 규정의 채택을 위한 권고와 함께 동 규정을, 필요에 따라, 통보한다.

제31조 폐기 통고

1. 이 협약의 어떤 당사국도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며 동 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

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로부터 12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까지는 폐기를 행하는 국가의 재정상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2조 기탁소 기능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기탁소로서 동 기구의 회원국, 제27조에서 정한 동 기구 비회원국과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유엔에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의 기탁 그리고 제31조에 규정된 폐기를 통보한다.

제33조 개정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을 서면으로 사무총장에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공지한다. 공지문의 송부 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동 제안에 대해 당사국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사무총장은 토의 및 채택 여부를 위하여 차기 당사국 총회에 동 개정안을 제출한다.
2.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
3. 이 협약의 개정안이 일단 채택되면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출된다.
4. 이 협약의 개정안을 비준, 수락, 승인,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 이상이 동 조 3항에서 언급한 문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해 비준, 수락, 승인, 가입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 당해 개정안은 당해 당사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를 기탁한 지 3개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3항, 4항에서 정한 절차는 정부간 위원회의 위원국 수와 관련한 제23조의 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회원국이 채택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제27조에 언급된 바의, 동 조 4항에 따라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다른 의도를 지닌 표현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개정된 이 협약의 당사자
   나. 개정안의 기속을 받지 않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은 협약의 당사자

제34조 정본

이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들 6개 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제35조 등록

유엔 헌장 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유엔 사무국에 등록된다.

부 속 서

조 정 절 차

제1조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국들 가운데 한 쪽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당사국들 간의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이 지명한 각2명의 위원과 그 위원들에 의해 선정된 의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 – 위원회 위원

분쟁 당사국이 둘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가 동일한 당사국들은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위원을 지명한다.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국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국들은 위원을 각자 지명한다.

제3조 - 지명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당사국들에 의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당사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 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동 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어느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향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 - 결정

조정위원회는 위원 투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분쟁 당사국들간에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동 위원회는 스스로 절차를 정한다. 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을 행하고, 당사국들은 이를 성실히 고려한다.

제 6조 – 의견불일치

조정위원회가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부록 II

유럽연합(EU)의 부문별 예산 내역

유럽연합(EU)의 부문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 Euro)

부문/연도	2003	2004	2005
경제와 재정업무	456.45	476.37	454.91
기 업	294.65	308.72	339.98
경 쟁	76.14	84.69	89.96
고용과 사회업무	9,830.16	10,847.09	11,589.04
농업과 농촌개발	48,408.06	48,762.13	53,725.73
에너지와 운송	1,030.49	1,359.42	1,416.77
환 경	302.49	338.57	325.65
정보 사회	1,004.03	1,191.07	1,274.34
직접 연구	269.18	305.64	366.43
어 업	925.58	986.57	1,053.18
역내 시장	65.45	69.89	73.38
지역 정책	21,988.77	26,808.83	27,104.82
세금과 관세동맹	94.68	108.07	120.53
교육과 문화	**834.36**	**998.46**	**1,049.84**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147.21	173.07	185.21
보건과 소비자보호	381.43	472.81	515.79
자유·안보와 정의영역	146.73	535.04	588.22
대외 관계	3,317.43	3,670.52	3,682.15
무 역	69.57	75.38	76.85
개발과대ACP국가관계	1,153.63	1,203.07	1,235.68
확 대	1,972.27	1,321.85	1,473.96
인도주의적 지원	458.28	507.78	513.41
부정에 대한투쟁	45.47	54.95	61.90
집행위의 정책조정과 사법권고	183.68	201.78	207.32
행 정	615.88	672.50	650.51
예 산	66.20	1,477.88	1,385.46
회계 감사	9.22	9.65	10.31
통 계	118.66	128.74	132.39
연 금	741.12	836.68	914.97
예 비 비	222.05	221.00	223.00
총 계	**99,812.38**	**109,700.06**	**116,554.14**

출처: Directorate-General for the Budget,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04*,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January 2004, p.16. Directorate-General for the Budget,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05*,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January 2005, p.16.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헌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써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절

취

선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